

연구보고 2012-15

표준보육료 산출 연구

이미화 서문희 임양미 이진경

머 리 말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이 선별적 지원에서 보편적 지원으로 확대되면서 보육재정 규모가 증가해왔다. 정부의 보육재정은 보육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합리적 표준보육료 산정은 필수적이다. 현 시점에서는 보육료 지원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표준보육료에 현장의 실태와 요구를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보육료 지원의 재정 규모가 확대되는 것에 비해 어린이집의 구체적인 필요 및 요구도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였으므로 합리적인 수준의 표준보육료 단가를 산출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 보육료 지원정책 및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어린이집에 보육 투입비용을 설문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표준보육료를 산출하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민간, 가정, 법인, 국공립의 유형별 대표적인 어린이집을 포괄하고, 조사항목별 어린이집의 실제 연간 지출액의 규모를 파악한 것에 의의가 있다.

제시한 표준보육료 산출 결과는 보육실태조사를 토대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현실적인 운영비용과,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운영비용을 포함하여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였다. 본 보고서가 현장에서의 보육료 지원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합리적인 지원을 지속할 수 있게 기여하기를 바란다.

이 연구를 위해 조사에 참여해주신 어린이집 연합회 임원진과 원장님들께 감사드리며, 자문회의를 통해 최종 보육료 산출에 도움을 주신 전문가 분들과 어려운 가운데 조사를 진행한 연구진께도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2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이 영

차 례

차 례	1
I. 서론	7
1. 연구의 필요성	7
2. 연구 내용	8
3. 연구 방법	9
II. 연구의 배경	15
1. 국내 보육료 지원 정책	15
2. 국외 보육료 지원 정책	20
3. 선행연구	37
III. 어린이집 운영 실태조사	45
1. 어린이집 운영 현황	45
2. 어린이집 운영비 현황	63
3. 사례조사	81
IV. 표준보육료 산출	89
1. 보육료 산출 원칙	89
2. 표준인건비 산출	95
3. 표준사업운영비 산출	98
4. 표준관리운영비 산출	100
5. 표준재산조성비 산출	101
6. 표준업무추진비 산출	102
7. 표준보육료 산출 단가	102
V. 결론	106
1. 안정적인 인건비 지원방안 수립	106
2. 영유아의 보육료 격차 조정	107
3. 구간지원 방식 적용항목과 비적용 항목 구분	108
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적정 재원 마련에 대한 협의	108

5. 투명하고 합리적인 감독 및 관리 방안 수립	109
6. 보육료 산정 관련 제언	110
참고문헌	111
Abstract	112
부록	114
부록 1. 어린이집 보육 투입비용 조사표	117
부록 2. 어린이집 영유아급간식비 식단	127
부록 3. 어린이집 연령별 교재교구 목록	140

표 차례

〈표 I-3-1〉 설문 참여 어린이집 소재지	11
〈표 I-3-2〉 설문 참여 어린이집 유형	11
〈표 I-3-3〉 어린이집 운영비용 조사항목	12
〈표 II-1-1〉 2012년 중앙정부의 보육사업 예산	16
〈표 II-1-2〉 2012년 보육료 지원	17
〈표 II-1-3〉 지난 10년간 주요 보육료 정책 변화내용	19
〈표 II-2-1〉 영국 보육시설 공급 현황(2006-2011)	21
〈표 II-2-2〉 영국 보육 이용아동 현황(2007-2011)	22
〈표 II-2-3〉 영국 지역별 보육료 수준(2012)	24
〈표 II-2-4〉 일본의 보육시설 현황	26
〈표 II-2-5〉 일본 정부의 보육 관련 지원예산 규모(2012)	27
〈표 II-2-6〉 소득계층별 보육시설 수납 기준액(2010)	28
〈표 II-2-7〉 일본 영유아 1인당 표준보육료 산출 항목	28
〈표 II-2-8〉 일본의 아동 1인당 월 보육단가(2012)	29
〈표 II-2-9〉 일본의 최고 보육료 지원사례: 18/100지역	30
〈표 II-2-10〉 일본 최저 보육료 지원 사례: 기타 지역(2011)	31
〈표 II-2-11〉 뉴질랜드 보육시설 현황(2007-2011)	33
〈표 II-2-12〉 뉴질랜드 인가 보육시설 이용아동 현황(2007-2011)	33
〈표 II-2-13〉 뉴질랜드 주요시설 재정보조금 지원 수준	35
〈표 II-2-14〉 뉴질랜드 기타 시설 재정보조금 지원 수준	37
〈표 II-3-1〉 2009년도 시설규모별 아동 1인당 표준보육료	40
〈표 II-3-2〉 표준보육료 1인(운전기사 인건비 포함)	41
〈표 II-3-3〉 2009년도 연령별 1인당 표준보육료(97인 기준)	42
〈표 II-3-4〉 2009년도 영아 및 유아 표준보육료 및 정부지원 보육료 비교	42
〈표 II-3-5〉 2010년도 연령별 표준보육료 항목별 구성비율	43
〈표 III-1-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46
〈표 III-1-2〉 조사대상자의 자격증 소지 현황(중복응답)	47
〈표 III-1-3〉 조사대상자의 어린이집 원장 경력	47

〈표 III-1-4〉 어린이집 유형별 현원 분포	48
〈표 III-1-5〉 단일연령 반 운영현황(가정어린이집)	49
〈표 III-1-6〉 단일연령 반 운영현황(가정어린이집 제외)	49
〈표 III-1-7〉 혼합연령 반 운영현황(가정어린이집)	50
〈표 III-1-8〉 혼합연령 반 운영현황(가정어린이집 제외)	50
〈표 III-1-9〉 어린이집 유형별 교사 수 현황	51
〈표 III-1-10〉 기타 어린이집 종사자 수 현황	52
〈표 III-1-11〉 40인 이상 어린이집 취사원 채용 현황	53
〈표 III-1-12〉 어린이집 유형별 기타 보육종사자 현황(중복응답)	54
〈표 III-1-13〉 어린이집 건물형태	54
〈표 III-1-14〉 어린이집 임대현황	55
〈표 III-1-15〉 어린이집 월 평균 임대료	56
〈표 III-1-16〉 어린이집 유형별 임대여부	56
〈표 III-1-17〉 어린이집 유형별 실외놀이터 유무	57
〈표 III-1-18〉 주간 어린이집 운영요일	58
〈표 III-1-19〉 평일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운영시간	59
〈표 III-1-20〉 토요일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운영시간	60
〈표 III-1-21〉 어린이집 유형별 차량운영 현황	61
〈표 III-1-22〉 어린이집 평가인증 상태	62
〈표 III-2-1〉 어린이집 유형별 연령별 월 필요경비 수납 현황	63
〈표 III-2-2〉 어린이집 유형 및 연령별 특별활동비 수납현황	64
〈표 III-2-3〉 어린이집 직원 월 평균 기본급여	65
〈표 III-2-4〉 어린이집 직원 1일 평균 근무시간	65
〈표 III-2-5〉 전체 보육교사 호봉, 기본급여 및 일일근무시간	66
〈표 III-2-6〉 단일연령 영아반 교사 월 평균 급여	67
〈표 III-2-7〉 단일연령 영아반 교사 일일 평균 근무시간	67
〈표 III-2-8〉 단일연령 유아반 교사 월 평균 기본급여	68
〈표 III-2-9〉 단일연령 유아반 교사 일일 평균 근무시간	68
〈표 III-2-10〉 혼합연령 영아반 교사 월 평균 급여 및 일일 평균 근무시간	69
〈표 III-2-11〉 혼합연령 유아반 교사 월 평균 급여 및 일일 평균 근무시간	70
〈표 III-2-12〉 장애통합, 시간연장 및 야간반 교사 월 평균 급여 및 일일 평균	

근무시간	71
〈표 III-2-13〉 어린이집 교직원 월 평균 제수당	71
〈표 III-2-14〉 어린이집 월 평균 교직원 후생경비	72
〈표 III-2-15〉 어린이집 임시직 인력유형(중복응답)	72
〈표 III-2-16〉 어린이집 월 평균 일용잡급	73
〈표 III-2-17〉 어린이집 월 평균 사업운영비	74
〈표 III-2-18〉 어린이집 월 평균 관리운영비	76
〈표 III-2-19〉 어린이집 월 평균 재산조성비	77
〈표 III-2-20〉 어린이집 월 평균 업무추진비	78
〈표 III-2-21〉 어린이집 월 평균 과년도지출	78
〈표 III-2-22〉 어린이집 월 평균 잡지출	79
〈표 III-2-23〉 어린이집 유형별 시설운영비 총액	79
〈표 III-2-24〉 어린이집 규모별 월 평균 시설운영비 총액 비교	80
〈표 III-2-25〉 어린이집 규모별(50인 중심) 월 평균 시설운영비 총액 비교	80
〈표 III-3-1〉 어린이집 유형별 세입예산개선안	82
〈표 III-3-2〉 어린이집 유형별 세출예산개선안	84
〈표 III-3-3〉 직장어린이집 A의 교재교구비 및 급간식비 기준	88
〈표 IV-1-1〉 보육교사의 근무경력 및 호봉	89
〈표 IV-1-2〉 보육교사의 급여(월 평균 급여 및 연평균 수당)	90
〈표 IV-1-3〉 연령별 아동과 교사 비율	90
〈표 IV-1-4〉 2012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91
〈표 IV-1-5〉 영유아 필요 열량	92
〈표 IV-1-6〉 연령별 영역	93
〈표 IV-1-7〉 시설비 구성	94
〈표 IV-1-8〉 업무추진비 기준액	95
〈표 IV-2-1〉 어린이집 규모별 표준교직원수	96
〈표 IV-2-2〉 어린이집 교직원 1인당 표준인건비	97
〈표 IV-2-3〉 연령별 규모별 영유아 1인당 월 평균 표준인건비	98
〈표 IV-3-1〉 영아 1인당 표준급간식비	99
〈표 IV-3-2〉 영유아 1인당 표준교재교구비	99
〈표 IV-3-3〉 어린이집 규모별 만 0-5세아 1인당 월 평균 행사비	99

〈표 IV-3-4〉 규모별 영유아 표준사업운영비	100
〈표 IV-4-1〉 어린이집 규모별 만 0-5세아 1인당 월 평균 관리운영비	101
〈표 IV-5-1〉 규모별 영유아 1인당 표준재산조성비	101
〈표 IV-6-1〉 어린이집 규모별 만 0-5세아 1인당 월 평균 업무추진비	102
〈표 IV-7-1〉 어린이집 규모 및 연령별 보육료	102
〈표 IV-7-2〉 2012년 표준보육료(97인 어린이집 기준)	104
〈표 IV-7-3〉 선행연구 및 정부지원 단가와의 표준보육료 수준 비교	105

그림 차례

〈그림 II-2-1〉 영국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연령별 비중	23
--	----

부록 표 차례

〈부록 표 1〉 어린이집 영유아급간식비 식단 예시(3월)	127
〈부록 표 2〉 만 0세 영아반 교재교구비	140
〈부록 표 3〉 만 1세 영아반 교재교구비	141
〈부록 표 4〉 만 2세 영아반 교재교구비	142
〈부록 표 5〉 만 3세 유아반 교재교구비	144
〈부록 표 6〉 만 4·5세 유아반 교재교구비	146

요 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선별적 지원에서 보편적 지원으로 확대됨.
- 해마다 증가하는 보육재정 지원규모에 비해 어린이집에서의 실제 지출금액 및 지원요구에 대한 분석은 미흡함.
- 어린이집 보육재정에 대한 양적 지원 확대와 더불어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표준보육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나. 연구내용 및 방법

- 국내·외 보육료 지원 정책을 파악하고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였음.
-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011년 연간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한 비용을 항목별로 조사하였음.
-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하여 표준보육료를 산출함.
-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유형별 사례조사를 실시하였음.

2. 연구의 배경

가. 국내·외 보육정책

- 국내의 보육정책은 주로 보육서비스 이용가구를 대상으로 한 바우처 방식으로, 시설에 대한 직접 지원은 미흡하였음.
- 영국, 일본, 뉴질랜드 보육정책은 모두 중앙정부의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구성되며, 보육료 산출시 아동연령 및 시설유형별 차등 적용함.

나. 선행연구

- 선행연구에서는 표준보육료를 일정 수준 이상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시 필요한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음.
- 표준보육료 산출 기준은 시설규모별(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시설) 및 아동연령별(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5세)로 구분하여 산출함.
- 가장 최근의 보육료 산출 연구는 2009년으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현재 시점에서의 보육료 산출 연구가 필요함.

3. 어린이집 운영 실태조사

가. 어린이집 운영 현황

- 전국에 위치한 국공립, 법인, 민간,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세출결산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307부를 분석하였음.
 - 분석대상은 국공립 79부, 법인 54부, 민간 74부, 가정 100부임.
 - 어린이집 원장 응답대상자는 40대(58.0%), 4년제 대학졸업 이상(72.0%) 및 여성(95.4%)이 다수를 차지함.
- 어린이집 규모별 분포는 20인 이하의 소규모인 경우(35.5%)가 가장 많고, 규모가 커질수록 작은 비중을 차지함.
 - 국공립어린이집 및 법인어린이집은 50~76인 규모가 가장 많고(국공립 26.6%, 법인 46.3%), 민간어린이집은 21~49인 규모가 가장 많음(41.9%).
- 반 구성은 단일연령반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혼한연령 구성비율보다 높음.
- 어린이집 원장은 대부분(60.9%) 자가 소유의 건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함.
- 대부분 평가인증을 획득하였고(91.1%), 실외놀이터를 사용할 수 있음(86.3%)
- 어린이집 운영요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99.7%)이며, 토요일에 운영하는 경우(63.8%)도 다수를 차지함.
-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평일 12시간, 토요일 8-9시간 수준으로 장시간임.

- 차량은 운행하는 비율(58.6%)이 운행하지 않는 비율(41.4%)보다 다소 높음.

나. 어린이집 운영비 현황

- 월 필요경비 및 특별활동비는 연령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월 평균 필요경비는 만 0세 3,966원, 만 1세 13,705원, 만 2세 22,811원, 만 3세 28,967원, 만 4세 31,463원, 만 5세 31,926원을 수납함.
 - 월 평균 특별활동비는 만 0세 610원, 만 1세 6,228원, 만 2세 34,299원, 만 3세 43,202원, 만 4세 46,673원, 만 5세 47,259원을 수납함.
- 인건비는 대체로 국공립어린이집 및 법인어린이집의 수준이 민간어린이집 및 가정어린이집에서보다 더 높게 나타남.
 - 전체 조사대상 어린이집의 월 평균 원장 급여는 2,086,074원, 보육교사는 월 평균 1,443,677원 수준임.
 - 일용직으로는 취사부(30.0%), 보조교사(19.4%), 대체교사(11.0%)를 고용한 경우가 많으며, 월 평균 405,250원을 지불함.
- 사업운영비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타 유형보다 높게 나타남.
 - 월 평균 급간식비는 2,506,297원, 교재교구비는 503,013원 수준이었음.
 - 국공립어린이집 급간식비는 3,911,999원, 교재교구비는 813,124원이지만 가정어린이집 급간식비는 927,727원, 교재교구비는 195,747원에 불과함.
- 관리운영비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수용료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지출수준이 높고, 법인어린이집에서 차량운영비 및 연료비 지출수준이 높음. 가정어린이집에서는 모두 낮은 지출수준을 보임.
- 재산조성비는 가정어린이집에서 다른 유형보다 지출금액이 낮게 나타남.
- 업무추진비 역시 가정어린이집에서 최소치를 기록하였음.
- 과년도지출 및 잡지출은 유형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음.
- 이상의 항목별 지출액을 모두 합산한 어린이집 시설운영비 총액은 가정어린이집이 다른 유형에서와 다른 특성을 보이며, 이 같은 차이는 규모에 따른 차이(적은 시설에서 더 적은 금액을 지출하는 경향)가 반영된 결과임.

다. 사례조사

- 유형별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아 1인당 보육료보다 교직원 1인당 인건비를 지급해주는 것에 대한 수요가 높았음.
- 재정 운영이 가장 어려운 규모로는 40-50인 시설이 꼽힘.
- 시설 개보수비에 대한 지원요구도가 있었으며, 교재교구비 및 급간식비를 현실화 해줄 것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음.

4. 표준보육료 산출

가. 보육료 산출 원칙

- 인건비는 가정어린이집과 일반어린이집으로 구분하여 가정어린이집 원장 4호봉, 보육교사 3호봉 기준, 일반어린이집 원장 11호봉, 보육교사 5호봉 기준을 적용함.
- 사업운영비 중 급간식비, 교재교구비는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산출함.
- 관리운영비는 본 연구의 실태조사 및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산출함.

나. 표준인건비 산출

- 어린이집 규모별 및 아동연령별로 적정수준 유지를 위해 필요한 운영비용을 차등 산정하였음.
- 영유아 1인당 월 평균 교직원 인건비는 가정어린이집과 일반 어린이집으로 구분하여 산출함.
 - 가정어린이집 원장은 1,836,080원, 보육교사는 1,476,790원으로 산출되고, 일반어린이집 원장은 2,732,138원, 보육교사는 1,843,342원으로 산출됨.

다. 표준사업운영비 산출

- 표준사업운영비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표준급간식비는 영아(만 0-2세) 43,725원, 유아(만 3-5세) 62,250원 수준임.

- 표준교재교구비는 만 0세 76,363원, 만 1세 41,944원, 만 2세 35,996원, 만 3세 11,937원, 만 4·5세 11,879원 수준으로 나타남.

라. 표준관리운영비, 표준재산조성비, 표준업무추진비 산출

- 표준관리운영비, 표준재산조성비, 표준업무추진비는 연령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산출됨.
- 표준관리운영비는 월 평균 29,767원, 표준재산조성비는 4,776원, 표준업무추진비는 3,090원으로 산출됨(97인 시설 기준).

마. 표준보육료 산출 단가

- 본 연구에서 산출된 표준보육료 단가는 만 0세아 877,828원, 만 1세아 589,224원, 만 2세아 474,603원, 만 3세아 324,245원, 만 4세아 292,542원임.
- 또한 표준보육료 산출단가는 시설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5. 결론

가. 본 연구의 의의

- 전국을 대상으로 대표적인 어린이집 유형(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을 모두 포괄하여 조사하였음.
- 세출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항목별 어린이집 연간 지출규모를 파악하였음.

나. 본 연구의 결론

- 어린이집 인건비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함.
 - 시간외 근무에 대한 수당,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 일용·임시직 인건비 등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영아와 유아간 보육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이 필요함.
- 구간지원 방식을 적용할 항목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
 - 급간식비와 다르게 인건비 및 시설비는 원아 1인이 줄어든다고 임의로

빼거나 조정하기 힘든 항목으로, 기본 규모가 소요되는 항목임. 따라서 구간지원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표준보육료를 재산정해야 함.
- 어린이집 보육재정 사용에 대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함.
- 표준보육료 산정 항목에 차량운영비 및 취사원 채용이 고려되어야 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보육 사업의 시초는 1962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사업 내용은 주로 전쟁고아 등을 위한 탁아사업으로, 오늘날과 같은 보육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1년 영유아 보육법 제정 이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초기 보육정책은 주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만 정부가 부담하는 선별주의 원칙을 적용하였고, 이로 인해 개별 가정의 비용부담 및 보육 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혼인율 감소, 이혼율 증가, 저출산 기조가 장기화됨에 따라 인구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영유아보육 및 교육서비스에 대한 질적 향상이 요구되었고, 이에 2004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때부터 국가는 기존의 선별주의 지원 방식을 벗어나 부모와 함께 책임을 지고 모든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패러다임을 지향하게 되었다.

정부의 보육재정은 보육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보육예산은 주로 부모의 보육료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대한 예산 및 감독기능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2012년 보육예산을 살펴보면 3조 28억원 중 약 80%에 해당하는 2조 391억원이 영유아 보육료로 지원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인건비 지원 423억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아동만을 대상으로 개별보조하거나, 국공립시설이나 일부 법인 단체의 시설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다.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의 재정 수입은 거의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와 정부지원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간·가정보육시설은 보육료에 의존하고 있다. 보육료 확보 수준에 따라 보육의 질이 좌우됨을 생각해볼 때, 보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표준보육료의 산정이 필요하다.

표준보육료는 '표준보육단가'와 동일한 의미로 혼용되어 왔다(서문희, 2012; 김혜금, 2010). 강경석(2003)의 연구에서는 표준보육료를 최소한의 운영비 개념으로 정의하고, 한국조세연구원(2005)에서는 어린이집에서 만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였을 때 소요되는 제반

비용으로 정의하였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표준보육료 산정 선행연구(김현숙, 서병선, 2009, 김혜금, 2010)에서는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사용한 표준보육료 정의를 준용하였다.

표준보육료 산정과 관련해 정부는 1990년대 이래로 현재까지 정부예산 편성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정부지원 보육시설 지원액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그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운영협회의회의 심의를 거쳐 상한가를 고시하였다. 최근 들어 표준보육료에 포함되는 항목들이 세분화, 다양화되어 향상된 것처럼 보이나, 2008년 표준보육료는 2005년 기준에 비해 70% 수준에 불과하고 보육시설 실제 운영시간인 12시간 운영비용과 통학 차량 운행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어서 표준보육료는 적정부담 수준의 60%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표준보육료는 정부지원단가로만 가능할 뿐 그 실효성이 희박해지고 있어서 보다 현실적인 표준보육료 산정에 대한 요구가 높다. 즉, 시설유형에 상관없이 일정한 수준의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표준보육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김혜금, 2010). 정부는 2012년도부터 만 5세아에 대한 누리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도부터는 만 3-4세아에게 누리과정을 확대하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의 보육료 지원 정책이 광범위하게 확대되면서 그 지원단가의 기준액이 되는 표준보육료의 산정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육료용 산출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표준보육료 산출 방식(조세연구원, 2005; 김현숙·서병선, 2008, 김혜금, 2010)을 살펴보고, 2012년 현재 시점에서 표준보육료를 산출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전 연구와 차별화된 부분으로 어린이집 원장 대상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이 기대하는 표준보육료 지원 수준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의 정부지원단가의 기초가 되는 표준보육료를 산출하여 보육정책에 실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 내용

앞서 언급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보고서에서 다룰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보육료 정책을 알아본다. 구체적으로 국내 보육예산 구조, 보육료 정책현황, 보육료 지원 정책 변화 및 국외 보육료 정책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표준보육료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표준보육료 산출유형을 비교·분석한 후, 표준보육료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한다.

셋째, 표준보육료 단가(2012년도 기준)를 산출하기 위해 전국의 어린이집을 유형별로 표집하여 어린이집 운영비 및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항목별 표준보육료 단가를 제안하고자 한다.

넷째, 사례조사를 통해 어린이집 현장에서 현행 표준보육료 지원 체계 하의 재정운영 상황을 파악하고, 유형별 규모별 표준보육료 기대 수준을 수집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가. 문헌 연구

본 연구에서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국내외 보육료 관련 정부지원 현황 자료 및 표준보육료 산출 선행연구를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나. 설문지 구성

문헌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가장 최근의 표준보육료 관련 연구를 참고하여 어린이집 보육 투입비용 조사지를 구성하였다.

다. 예비조사 실시

어린이집 보육 투입비용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을 임의 표집 후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본 연구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자료인 세출결산서는 현장에서 가장 공개

하기 기피하는 정보이다. 신뢰성 있는 단체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조사에 수월하다는 판단 하에 어린이집 연합회 임원진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2회 실시하여 설문지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마. 본조사 실시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보육 투입비용 설문조사 대상은 설립유형별, 지역별 어린이집 약 300개소이다. 설문응답은 작년 세출자료를 비롯하여 표준보육료 산출 모형에 필요한 어린이집 보육 투입비용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어린이집 원장이 직접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에 8월 22일부터 9월 4일까지 서울 및 전국 지역을 대상으로 유형별 어린이집 연합회를 통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148부를 수거하였다.

바. 추가조사 실시

본 연구에서 보육료 산출을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하다고 설정한 어린이집 설문부수는 300부로, 본 조사의 협조 결과가 목표량을 채우지 못함에 따라 9월 5일부터 9월 28일까지 추가조사를 실시하였다. 추가조사는 연구진이 개별적으로 각 지역의 보육정보센터 및 지역 내 신뢰할만한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한 협조 요청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 결과 159부를 수거하였다.

사. 설문조사 분석

공동연구진 회의를 거쳐 본 조사 및 추가조사를 통해 수거된 설문지 315부 중 부실응답을 제외하고 총 237부를 어린이집 보육 투입비용을 위한 분석에 활용하였다.

1) 조사분석 대상

분석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조사 분석 대상 어린이집의 소재지 분포는 <표 I-3-1>과 같다. 전국 총 9개 지역(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중 서울지역(37.1%), 경기지역(24.8%), 경남지역(11.7%), 경북지역(7.2%)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표 1-3-1> 설문 참여 어린이집 소재지

단위: %(명)

구분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계
비율	37.1	24.8	2.0	3.9	5.9	3.3	4.2	7.2	11.7	100.0
(빈도)	(114)	(76)	(6)	(12)	(18)	(10)	(13)	(22)	(36)	(307)

본 조사에 참여해 준 원장이 소속된 어린이집 유형을 살펴보면 <표 1-3-2>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유형별로는 가정어린이집(32.6%)이 가장 많았으며, 민간 어린이집(24.1%),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이 각각 25.7%와 17.6% 순이었다.

어린이집 중 영아전담 어린이집 비율을 살펴본 결과, 영아전담 어린이집은 38개(12.4%)였으며,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은 4개(1.3%)에 불과하였다. 또한, 전체 조사대상 어린이집 중 서울형 어린이집은 74개(24.1%), 공공형 어린이집은 10개(3.3%)로 나타났다.

<표 1-3-2> 설문 참여 어린이집 유형

단위: %(명)

구분	가정		일반			계
	영아전담	영유아혼합	민간	법인	국공립	
비율	12.4	20.2	24.1	17.6	25.7	100.0
(빈도)	(38)	(62)	(74)	(54)	(79)	(307)

2) 조사 내용

본 연구에서 사용한 원장용 설문지는 <표 1-3-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소속 어린이집의 운영현황 및 운영투입비용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대상자의 연령, 성별, 최종학력, 소지한 자격증, 원장 고용지위(고용 원장 또는 원장·운영자 동일), 원장으로서의 경력을 살펴보았다. 어린이집의 운영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어린이집 소재지 및 유형, 규모(영유아 정원 및 현원), 반 현황, 보육교사 및 기타 교직원 수, 어린이집 건물형태, 어린이집 임대여부(임대 시, 임대형태 및 월 평균 임대료, 전세금액 및 계약기간), 실외놀이터 유무, 운영시간, 차량운행 여부, 평가인증 현황, 영유아 연령별 특별활동비 및 필요경비 수납액을 질문하였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연간 투입비용을 알아보기 위

〈표 1-3-3〉 어린이집 운영비용 조사항목

항목	세부항목	세부내용
인건비	기본급여	- 교직원에 대한 기본봉급
	제수당	- 교직원 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 및 시간외·야간·휴일 근무수당, 연구수당, 급식비 및 기타수당
	기타후생경비	- 교직원의 건강진단비·급량비·연구연수비·교직원의 상용과복비 등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일용잡급	-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직책급	- 원장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회의비	- 운영위원회, 부모회의 등 각종회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관리운영비	여비	- 교직원의 국내·출장비
	수용비 및 수수료	- 사무용품비·인쇄비·집기구입비·도서구입비·공고료·수수료·등기료·운송비·통행료 및 주차료·소규모수선비·포장비·의료비·약품구입비 등
	공공요금	- 우편료, 전신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및 오물수거료, 도시가스
	제세공과금	- 법령에 의해 어린이집에서 지급하는 제세(자동차세 등), 협회비, 화재·자동차 보험료
	차량비	- 차량유류대·차량정비유지비·차량소모품
	연료비	- 보일러 및 난방시설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
	기타운영비	- 기타 운영경비로서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시설임대료, 감가상각비, 건물용자금의 이자, 차량구입비 등)
사업운영비	교재교구비	- 교재교구의 구입 및 제작비
	급간식비	- 보육아동 및 교직원을 위한 쌀, 보리 등의 주식과 부식 구입비 및 간식비 등
	행사비	- 보육과정에서 아동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행사경비
재산조성비	자산취득비	-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그 밖의 자산의 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 건물·건축설비, 공구·기구, 비품수선비, 그 밖의 시설물 유지관리비
과년도지출		- 과년도 미불금 및 과년도 사업비의 지출
잡지출		- 어린이집이 지출하는 보상금·사례금·소송경비 및 원단위 절사금 등

자료: 보건복지부(2011). 2011년도 보육사업 안내.

해 보건복지부(2011)에서 선정한 세출결산서 항목을 토대로 하여 연간 운영비 지출 현황¹⁾을 파악하였다.

어린이집 연간 운영비의 경우 구체적으로는, 교직원 인건비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보육교사 및 기능직·사무직 직원의 기본급여, 제수당 및 기타후생경비를 조사하였으며, 일용직으로 채용한 인력의 고용유형 및 월 지급액 또한 추가로 질문하였다. 시설운영비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 관리운영비(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연료비, 기타운영비), 사업운영비(교재교구비, 급간식비, 행사비), 재산조성비(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과년도지출 및 잡지출 항목별지출금액을 기입하도록 하였다(부록 1 참조).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의 자체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최종 분석 전 어린이집 운영비용 데이터에 대한 검증 작업을 실시하여, 설문지에 기입한 내용이 부정확할 경우 세출결산서와 함께 비교하고 응답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설문지에 기입된 내용이 SPSS 및 엑셀 데이터자료에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추가 점검작업을 수행하여 신뢰도 수준을 높이고자 하였다.

어린이집 보육 투입비용에 관한 현황 분석은 SPSS 1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통해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고, T-test 및 ANOVA 를 사용하여 규모별 연령별로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아. 전문가 자문회의

분석된 어린이집 보육 투입비용 현황 결과를 토대로, 급간식비 및 교재교구비 산출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급간식비의 경우 2011년 어린이집에서 실제로 운영된 식단표를 바탕으로 서울보육정보센터 영양사의 자문을 받아 유아 및 영아의 적정 섭취 열량과 영양을 토대로 일별 식단표를 구성하고, 일일 소요비용을 산출하였다.

교재교구비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표준보육과정에 의거한 평가인증 기준에 부합

1) 본 설문조사가 실시된 시기가 8~9월로 2012년 세출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2011년 운영비 지출을 기준으로 함.

하는 연령별 활동영역 놀이감을 위한 월 평균 소요비용으로 정의하고, 관련 선행연구인 김혜금(2010)의 연구 및 임양미, 전경숙, 김혜금, 고주희(2010)의 연구를 토대로 만 0-5세 연령별 품목을 구성하였다. 외부 전문가로는 보육업체를 통하여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최저가와 최고가를 모두 조사하고, 이 중 최저구입가격을 바탕으로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연간 및 월간 소요비용을 계산하였다.

자. 표준보육료 산출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공동연구진 회의를 통해 항목별 지출비용 및 2012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규모별 및 영유아 연령별 표준보육료안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표준보육료안은 크게 두 가지로, 1안의 경우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저한도의 금액이며, 2안의 경우 적정 수준의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금액이다.

차. 사례조사

제시된 표준보육료 산출안을 근거로 두 차례에 걸쳐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어린이집 현장에서 바라는 표준보육료 기대 수준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현행 표준보육료 체계 하에서의 난제 및 개선점을 함께 조사하여 후속 연구에서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II. 연구의 배경

1. 국내 보육료 지원 정책

가. 국내 보육사업 구조

국내 보육지원 정책의 특성은 크게 수요자 측면에서의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지원 및 시설별 지원,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보육료 지원은 90년대 후반 이래로 지원 대상 및 그 지원액의 폭이 급격히 확대되었다. 2012년 현재 정부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거하여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미취학 만 0-5세 영유아에게 어린이집 보육료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보육료 지원은 기본적으로 가구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을 원칙으로 하나, 최근 들어 급격히 늘어난 보육수요 확대에 따라 만 0-2세 및 취학전 만 5세 유아에게는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한다.

둘째, 양육수당 지원은 시설이용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보육료 지원으로 인해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2009년부터 도입된 것이다. 이에 따라 소득수준이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 0-1세 영아 가구에서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시설 대상 지원은 정부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및 시설비 지원이 대표적이다. 2012년 현재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시설 지원사업으로는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신축비 및 인건비 지원, 영아전담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방과후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기본보육료 지원,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 및 정부 지원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평가인증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농어촌 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 및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 등이 있다(보건복지부, 2012).

2012년 현재 정부의 총 보육예산은 3조 28억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전체 예산의 80%인 2,391,191백만원을 배정하고, 어린이집 인건비지원에 423,153백

만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102,645백만원을, 어린이집 지원에 78,207백만원을, 보육인프라 구축에 16,250백만원을,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11,867백만원을, 평가인증에 6,026백만원을 배당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2).

〈표 II-1-1〉 2012년 중앙정부의 보육사업 예산

구분	예산	내역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지원	423,153	- 국공립,법인: 42,212명 - 영아 시간연장 등: 23,960명 - 대체교사: 526명
영유아 보육료 지원	2,391,191	- 만 0~2세 소득무관 전액지원 - 만 3~4세 소득학위 70% 전액지원 - 장애아무상보육 15천명 - 맞벌이가구보육 27천명 - 다문화보육료 추가지원 6천명 - 농어업인 보육료 지원 11천명
어린이집 기능보강	11,867	- 신축 국공립10, 장애전담 2개소 - 공동주택리모델링 19개소 - 기자개구입 30개소 - 환경개선비지원 800개소 - 장애아보육환경개선 92개소 등
보육인프라 구축	16,250	
보육사업관리	2,187	- 보육사업 행정지원 및 홍보 - 금융조회 우편통보
중앙보육정보센터 운영	1,200	- 중앙보육정보센터(1개소)
지방보육정보센터 운영	5,840	- 지방보육정보센터(17개소) -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어린이집 교원 자격관리	590	- 한국보육진흥원 운영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보수교육	1,248	- 교직원 보수교육지원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225	- 보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한국어린이집 연합회	60	- 어린이집 운영우수사례 발굴, 보급
보육전자바우처 운영	6,762	- 전자바우처운영 및 시스템기능개선
농어촌 소규모 보육서비스	-	- 농림부로 사업 이관(910백만원)
어린이집 평가인증	6,026	- 어린이집 평가인증 진행 13,120개소
어린이집 운영지원	78,207	
어린이집 지원	61,265	- 교재교구비 지원 - 차량운영비 지원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월 5만원 - 교사겸직원장 지원 월 5만원
공공형어린이집	16,942	- 시설유형, 규모에 따라 운영비 지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양육지원	102,646	- 차상위 36개월 미만(20~10만원) -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별 정부지원단가의 45% - 장애아동 양육수당(10~20만원)

자료: 보건복지부(2012).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pp 425-426.

나. 국내 보육료 지원 정책

2012년 기준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육료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만 0-4세 보육료, 만 5세 무상보육(종일보육을 기준으로 월 20만원 지원). 맞벌이가구 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방과후 보육료, 시간연장형 보육료 등이 있다.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의 경우, 보육료 지원 정책의 확대에 따라 무상보육에 해당되지 않는 만 3~4세아를 기준으로 부모소득합산금액의 25%를 감액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시 소득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표 II-1-2〉 2012년 보육료 지원

구분	지원대상	연령	지원단가		
			종일	야간	24시
만 0-4세 보육료	만 0-2세: 모든 가구, 만 3-4세: 소득 하위 70% 이하	만 0세	394,000원	394,000원	591,000원
		만 1세	347,000원	347,000원	520,500원
		만 2세	286,000원	286,000원	429,000원
		만 3세	197,000원	197,000원	295,500원
		만 4세	177,000원	177,000원	265,500원
누리과정 지원	만 5세		200,000원(종일반기준)		
장애아 무상보육료	-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장애아 - 지원수준: 소득수준과 무관, 정부지원 기준단가 100% - 지원단가: 장애아반 아동 394,000원, 방과후 장애아동: 197,000원, 일반아동반 아동: 반별 보육료 상한액				
맞벌이가구 보육료	- 아동의 부모 각각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가구 - 소득산정방식: 소득산정시 부부합산소득의 25%를 차감하여 산정				
다문화 보육료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자녀 중 취학전 만 5세 이하				
방과후 보육료	- 차상위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 시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사용 · 일반아동: 만 4세아 정부지원단가의 50%(88,500원) · 장애아동: 197,000원 - 지방정부예산 포함				
시간연장형 보육료 등	- 시간연장 보육료(19:30-24:00) · 일반아동: 2,700원 · 장애아동: 3,700원 - 야간 보육료(19:30-익일 07:30) · 지원액은 만 0-4세 월 보육료 지원단가와 동일 - 24시간 보육료 · 24시간 지정 어린이집 이용 아동 · 지원액은 월 보육료 지원단가와 동일 - 휴일 보육료 · 정부지원 일 보육료 x 150% - 시간제 보육료 · 법정저소득층: 3,000원 · 장애아동: 3,900원				

자료: 보건복지부(2012). 2012년도 보육사업 안내.

한편, 2002년부터 2012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난 10년간 보육료 지원 정책의 주요 변화내용을 요약해보면 <표 II-1-3>과 같다.

우선 2000년까지만 하더라도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나 2001년 및 2002년도부터 취학아동 방과후 보육, 장애아 보육, 야간 보육 등 특수 보육유형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기 시작하였다. 2004년도에는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지원의 경우 소득층을 1,2,3층으로 분류하여 계층별로 1층 100%, 2층 60%, 3층 40%로 지원액을 다르게 적용하였다. 또한 소득계층별로 차등화하여 시간제 및 기준시간 초과 보육료 지원 정책을 실시하였다.

역대 최저 출산율을 기록했던 2005년도에는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지원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계층을 기존 3층에서 4개 층으로 하고 가구원수별로 계층별 소득기준액을 고시하였다. 또한 두자녀 보육료를 도입하여 둘째아 보육료에 대한 지원을 별도로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시간제 및 기준시간 초과 보육료 지원 금액은 전년도 2,500원(시간당)에서 1,500원(시간당)으로 낮추어 부모-자녀간 함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것을 권장하였다. 이듬해인 2006년도에는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을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세-2세까지로 대상을 확장하였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기준을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두자녀 보육료 지원에서 영아 분류 기준 연령을 세분화하였다. 2007년도에는 기존의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지원을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보육 지원으로 바꾸고 소득계층을 기존 4개에서 5개로 변경하여 1,2층은 100%, 3층 80%, 4층 50%, 5층 20%를 지원하였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에서 지역 구분이 없어졌으며 두자녀 보육료 지원금액이 대폭 증가한 반면 지원 대상은 기존 만 5세에서 만 3세로 낮추었다. 2008년도에는 차등보육료가 4층 60%, 5층 30%로 지원비율이 더 높아졌으며 두자녀 보육료의 지원 대상은 만 4세로 확대되었다. 2009년에 들어서면서 차등보육료 지급은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삼아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 대해 차등 지원하였으며, 만 5세아 무상보육료 또한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2010년도의 경우, 차등보육료 지급 기준은 전년도와 동일한 반면 지원 단가를 종일/야간/24시로 분류하여 제시하였으며,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을 신설하였다. 2011년도에는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100%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이에 따라 두자녀 보육료 지원은 더 이상 실효성이 없게 되었다.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은 기존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를 감액하는 것에서 부부합산 소득의 25%를

감액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변경 후의 소득인정액이 소득 하위 70% 이하에 속하면 연령별 지원단가의 100%를 지원하였다. 또한 다문화 보육료를 신설하여 다문화 가족 자녀 중 만 0-5세아에게 연령별 보육료 단가대로 지원하였다.

〈표 II-1-3〉 지난 10년간 주요 보육료 정책 변화내용

주요 변화			
연도	항목	변동내용	비고
2002	만 5세아 무상보육	- 대상지역 확대(농어촌→전국 저소득층)	도시지역 추가
2003	미취학저소득층 자녀 지원	- 미취학저소득층 자녀 지원 신설	취학유예아동 지원근거 마련
	보육연령 기준 신설		
	기타저소득층 자녀 지원	- 선정기준 변경: 기존의 소득+재산→소득인정액 기준 - 보육료 지원단가 전년대비 5% 인상	
	만 5세아 무상보육	- 선정기준 변경: 기존의 소득+재산→소득인정액 기준 - 보육료 지원단가 전년대비 5% 인상	취학유예만6세아 지원근거 마련
	장애아 무상보육	- 장애아 무상보육 신설 - 장애유형에 따라 지원대상 세분화	기존 특수보육 내용을 별도 항목으로 독립
2004	저소득층 자녀보육료	- 4세까지 연령 확대 - 기존 법정저소득층 + 기타저소득층을 법정저소득층으로 일원화하여 계층별 차등지원	
2005	저소득층 자녀보육료	- 기존 3계층에서 4계층으로 차등지원 확대	
	만 5세아 무상보육	- 소득인정액의 기준이 도시근로자 가구평균소득의 80%이하로 균일하여 가구수별 소득인정액 산출	
	두자녀 보육료	- 자녀 둘 이상 이용시 둘째보육료 지원	신설
2006	저소득층 자녀보육료	- 민간시설 질 제고를 위해 기본보조금 도입	
	만 5세아 무상보육	- 지원대상 기준을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 소득 90% 이하 (도시) 또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 소득 100% 이하(농어촌)	도시/농어촌지역 분리 변용찬(2002)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
	두자녀 보육료	- 지원대상 분류 상세: 만 2세 미만 → 만 0세/만 1세/만 2세	
2007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보육	- 기존 4계층에서 5계층으로 세분화 - 각 계층별 지원 비율 확대: 3층(70%→80%), 4층(40%→50%), 5층(20%)	
	만 5세아 무상보육	- 지역구분 없음	
	두자녀 보육료	- 지원 연령 세분화: 만 3~5세→만 3세, 만 4세 (5세는 제외)	
2008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보육	- 계층별 지원비율 확대: 4층(50%→60%), 5층(20%→30%)	

(표 II-1-3 계속)

연도	항목	주요 변화	
		변동내용	비고
2009	차등 보육료	- 소득분위별로 3개층 분리 후 차등 지원: 하위 50%이하시 100%지원, 하위 60%이하시 60%지원, 하위 70%이하시 30%지원	-민간시설에 지급된 기본보조금이 시설지원금으로 분리되어 흡수
	만 5세아 무상보육료	- 소득하위 70%까지 일괄 지원	
	두자녀 보육료	-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 둘째이상 시설이용아동 모두 지원	
2010	차등 보육료	- 지원단가를 연령별, 시간별 (종일, 반일, 24시)로 구분하여 제시	신설
	두자녀 보육료	- 소득분위별 차등지원: 소득하위 50%~70%이하 가구 차등지원	
	맞벌이가구 보육료지원	- 맞벌이가구 중 일정요건 해당 가구 지원	
2011	차등 보육료	- 소득하위 70%이하 가구 대상 100% 지원	
	두자녀 보육료	- 차등보육료 확대 지원 및 중복으로 중단	
	맞벌이가구 보육료지원	- 맞벌이 부부의 소득 합산 방법 변경 - 일정 요건에 따른 소득 합산 후 계산하여 하위 70% 가구에 속하는 경우 지원	

2. 국외 보육료 지원 정책

가. 영국

1) 영국 보육시설 현황

영국 보육정책의 책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유한다. 중앙정부의 경우 2010년까지 아동학교가족부(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가 보육정책을 담당하고 있었으나 폐지되고, 2011년부터는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에서 담당업무를 이관하여 시행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보육 및 유아교육 공급 실태조사(Childcare and Early Years Providers Survey)를 1998년 도입, 2006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연간 1회씩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실태조사에서 시설 유형은 크게 9가지로 구분되는데, 종일제 어린이집(full day care), 시간제 어린이집(sessional care), 방과후 보육(after school care), 주말 보육(Holiday care), 아이돌보미(childminders), 아동센터(children's centres)의 6가지 보육시설 유형과 만 2-3세 유아반 및 유치원 1학년반이 있는 초등학교, 유치원

1학년반만 있는 초등학교, 만 2-5세 유치원의 3가지 유아교육시설로 구성된다.

2012년도 9월에 발표된 2011년도 보육 및 유아교육 공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육 및 유아교육 시설은 총 107,900개소로, 2010년과 비교해볼 때 105,100개소였던 것에서 다소 증가한 수치였다. 이 중 어린이집이 92,200개소로, 2010년 89,500개소였던 것보다 증가한 데에서 전체 시설 수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2011년 조사 당시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 보육교사는 48,800명으로, 2010년 47,400명에서 3% 증가하였다. 2011년 아이돌보미 수의 증가는 2008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던 경향을 바꾸어놓았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한데, 내년에도 아이돌보미를 증가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 16%임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유망한 보육공급자로 자리할 것이 예상된다.

〈표 II-2-1〉 영국 보육시설 공급 현황(2006-2011)

	단위: 개소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종일제 어린이집	17,600	16,700	14,100	13,800	13,600	12,700
시간제 어린이집	7,900	8,300	7,800	8,500	8,700	9,700
방과후 보육	10,000	9,500	7,900	8,800	8,500	7,700
주말 보육	7,900	7,700	6,400	6,500	5,800	6,400
아이돌보미(현재 활동 중)	48,800	47,400	51,000	56,100	59,800	57,900
보육시설	92,200	89,500	87,200	93,800	96,400	94,400
만 2-5세 유치원	400	400	450	450	450	450
유아 및 유치원1학년반 운영	6,700	6,700	6,700	6,700	6,800	6,500
유치원 1학년반만 운영	8,600	8,600	8,600	8,700	8,900	9,200
공립학교 부설 유치원	15,700	15,700	15,700	15,900	16,200	16,200
총 계	107,900	105,100	103,000	109,700	112,600	110,600

자료: 영국 교육부, 2011 보육 및 유아교육 공급 실태조사.

<http://www.education.gov.uk/rsgateway/DB/STR/d001088/index.shtml>

전체 보육시설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전일제 어린이집으로, 2001년 이후 해마다 증가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오고 있다. 2011년 조사된 전일제 어린이집 시설 수는 2010년 16,700개소에서 5% 증가하여 2011년 17,600개소를 기록하였다. 시간제 어린이집 시설 수는 2010년 8,300개소에서 5% 떨어져 2011년 7,900개소로 조사되었다. 시간제 어린이집 2006년과 비교하면 5년 사이에 19%가 감소하여,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제 어린이집 감소 경향은 시간제 어린이집이 해당 지역을 떠났다는 것을 뜻하기보다 학부모들의 보육시간 연장 요구에 힘입어 시간제 어린이집을

전일제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였던 것과 관련된다. 방과후 보육 및 주말 보육은 2010년도 17,200개소에서 2011년도 17,900개소로 증가하여, 2011년에도 전년도보다 시설 수가 증가하였던 경향을 유지하였다.

〈표 II-2-2〉 영국 보육 이용아동 현황(2007-2011)

	단위: 명				
	2011	2010	2009	2008	2007
종일제 어린이집	948,200	957,700	873,900	872,800	820,100
시간제 어린이집	282,900	311,800	326,200	361,500	356,800
방과후 보육	508,400	509,000	412,600	426,400	414,300
주말 보육	389,400	398,400	328,200	347,600	297,700
아이돌보미(현재 활동 중)	266,100	259,000	276,600	294,200	278,500
보육시설	2,395,000	2,435,900	2,217,500	2,302,500	2,167,400
만 2-5세 유치원	33,900	33,800	39,800	40,500	38,300
유아 및 유치원1학년반 운영	528,200	519,100	494,200	526,500	517,800
유치원 1학년반만 운영	265,200	273,900	241,400	245,300	263,200
공립학교 부설 유치원	827,300	826,800	775,400	812,300	819,300
계	3,222,300	3,262,700	2,992,900	3,114,800	2,986,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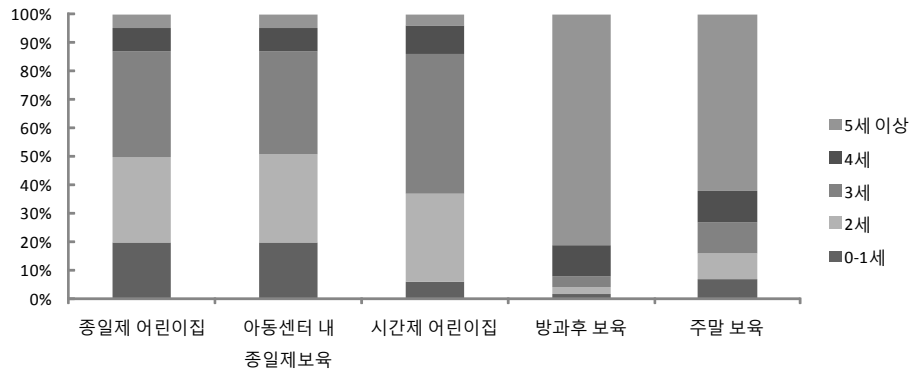
자료: 영국 교육부, 2011 보육 및 유아교육 공급 실태조사.

<http://www.education.gov.uk/rsgateway/DB/STR/d001088/index.shtml>

2) 영국 보육 지원 정책

영국의 보육지원정책은 2006년 보육법 6항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부모의 근로 및 직무교육, 훈련을 위하여 0-14세 아동에게 충분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한 데에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서비스 충분도 평가'를 실시하여 실제로 보육 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졌는지 평가하고 추후 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2008년 4월 1일부터는 본래 권고사항이던 이것을 의무조항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영국에서는 2006년부터 모든 3-4세 아동에게 주당 최소 12.5시간, 연간 최대 38주간 교육 및 보육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그에 따라 2008년에는 전체 95%의 아동이 이 혜택을 받았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영국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금액은 6억 4천 파운드, 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맞춤형 양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 영국 교육부, 2011 보육 및 유아교육 공급 실태조사.
<http://www.education.gov.uk/rsgateway/DB/STR/d001088/index.shtml>

[그림 11-2-1] 영국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연령별 비중

2012년 현재 3~4세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무상보육·교육 사업은 2010년 9월부터 시행된 체계로, 영국교육행정청(Ofsted)에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이 면제된 시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아래 우리나라의 누리과정과 같이 ‘유아교육 기본단계(Early Years Foundation Stage-EYFS)’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주당 기본 15시간의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빈곤가정 아동에게는 2세부터 무상보육·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2세 무상보육·교육 수급인원은 10-15% 정도이다. 현재 영국에서는 무상보육·교육을 확대하여 2013년 9월에는 2세 무상교육 수급비율을 2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2-13년 영국 정부에서는 5백만 파운드를 투자하여 시설 인프라, 시범운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였으며, 2014-15년 7억 6천 파운드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2011)에는 보육료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 본래 ‘16시간 이상 노동’을 해야 했던 기준을 폐지하였다. 그에 따라 2013년부터 근로시간이 16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영국 정부는 이 조치로 인하여 80,000 이상 가구가 신규 보육료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원대상의 대폭 확대로 인하여 기존 대상(영유아를 양육하는 16시간 이상 근로가구)이 받는 지원금 액수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영국에서는 부모가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으며 자녀를 위해 보육서비스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면, 고용회사로부터 보육료를 받을 수 있다. 고용회사가

근로자에게 지출하는 아동보육용 바우처 비용, 직접 보육시설에 지불하는 보육료 비용, 직장보육시설 운영비용은 영국 국세청으로부터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육바우처는 가입일시를 기준으로 2011년 4월 6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 주당 55파운드나 월간 243파운드까지 세금 공제가 가능하고, 2011년 4월 6일 이후에 가입한 경우 근로소득에 따라 고소득 기준 이하 소득의 경우 55파운드까지, 고소득 이상 소득일 경우 주당 28파운드 또는 월간 124파운드까지, 초고소득 기준 이상일 경우 주당 22파운드 또는 월간 97파운드까지 가능하다. 보육시설 실이용금액을 지원받는 경우에도 보육 바우처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비록 고용주로부터의 보육료 지원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나 보육료 지원이 정부 재원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3) 영국의 표준보육료 산출

영국에서 전반적인 보육료 가이드라인은 중앙정부가 지정하지만 세부내용 및 금액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다. 그에 따라 보육료가 이용아동 연령 및 이용서비스 유형 뿐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게 적용된다. 주로 물가가 비싼 도시 지역에서 교외 지역보다 높은 편이다. 2012년 현재 적용되고 있는 표준보육료 수준은 <표 II-2-3>과 같다.

<표 II-2-3> 영국 지역별 보육료 수준(2012)

단위: 파운드(£)

구분	어린이집 2세 미만	어린이집 2세 이상	아이돌보미 2세 미만	아이돌보미 2세 이상	방과후보육
동부 내륙지방	97.59	96.24	79.61	79.73	36.71
잉글랜드 동부	103.73	97.77	90.69	87.63	43.96
런던	126.80	112.24	129.59	129.02	47.48
북동부	95.96	94.61	88.93	87.72	55.50
북서부	91.85	90.58	80.81	80.33	47.08
남동부	119.21	110.88	103.10	101.76	47.89
남서부	106.95	105.78	93.26	93.26	46.02
서부 내륙지방	91.04	86.32	84.12	83.67	42.99
요크, 험버지역	95.54	94.38	83.35	83.35	44.61
잉글랜드 평균	103.19	98.75	92.61	91.83	45.81
스코틀랜드 평균	101.49	94.52	93.10	92.04	48.55
웨일즈 평균	92.35	89.33	92.96	92.06	40.05
전체 평균	102.05	97.51	92.68	91.87	45.53

주: 어린이집 및 아이돌보미는 25시간, 방과후보육은 15시간 기준임.

자료: Daycare Trust. 2012. 「Childcare Survey 2012」. p.3

참고로 보육료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어린이집 교직원 1인당 인건비 평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1 보육 및 유아교육 공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종일제 어린이집의 전체 교직원 시간당 임금 평균은 7.80파운드로, 고위간부급은 시간당 평균 10.60파운드, 관리/감독직은 시간당 평균 8.10파운드, 기타 유급교직원은 시간당 평균 6.60파운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일제 어린이집의 하위영역으로 포함되고 있으나 좀 더 고급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센터 내 종일제 보육프로그램의 경우 전체 교직원 임금은 시간당 평균 11.30파운드로 종일제 어린이집보다 1.5배 정도 높은 수준이었으며, 시간제 어린이집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종일제 어린이집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방과후보육과 주말보육의 경우 근무가 불리한 시간대에 운영하기 때문에 평균 시간당 임금은 8.20파운드로 종일제 및 시간제 어린이집보다 높은 편이다. 방과후보육과 주말보육의 전체 시간당 임금 평균은 동일하나 직급별 임금 격차는 주말보육이 더 적은 편이다.

나. 일본

1) 일본 보육시설 현황

일본의 보육시설은 국가가 인가하는 보육원과 인가를 받지 않은 보육시설로 구분된다. 인가 보육시설은 2010년 총 23,068개소에서 2011년 총 23,385개소로, 시설 정원은 2010년 2,157,890명에서 2011년 2,204,393명으로 증가하였다. 그에 따라 이용 아동 수는 2010년 2,080,114명에서 2011년 2,122,951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정원 충족률은 2010년 96.4%, 2011년 96.3%로 평균 95% 이상의 높은 충족률을 보인다. 비인가 보육시설은 부모 및 보호자가 자녀를 대동할 수 없을 경우 임시로 보육을 맡기는 베이비호텔과 기타 비인가 보육시설로 구분된다. 2011년을 기준으로 베이비호텔은 1,709개소, 기타 비인가 보육시설은 5,870개소로, 2010년 베이비호텔 1,695개소, 기타 시설 5,705개소에서 다소 증가하였다. 입소 아동 수는 2010년 베이비호텔에 30,712명, 기타 비인가 보육시설에 148,964명이며, 2011년 베이비호텔에 30,768명, 기타 비인가 보육시설에 155,339명인 것으로 나타난다(표 II-2-4 참조).

일본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 중심으로, 인가 보육원에서는 취업모나 기타 가정 사정으로 보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우선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선별적 보육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입소순위는 보호자와 가정환경

의 다양한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지수화하고,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이용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또한 지방정부의 법규를 통해 낮은 기준을 적용하여 기타 시설이나 가정보육 등을 인정하는 등 비인가 보육시설을 제도화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대기아동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정부에서 인정하는 보육시설 등이 확대되는 추세이다(서문희, 2009).

〈표 II-2-4〉 일본의 보육시설 현황

단위: 개소, 명

	인가보육원			인가 외 보육시설)	
	시설 수	시설정원	이용현원	시설 수	입소아동 수
2010	23,068	2,157,890	2,080,114	7,400	179,676
2011	23,385	2,204,393	2,122,951	7,579	186,107

주: 1) 인가 외 보육시설은 베이비호텔과 그외 인가 외 보육시설로 구성.

2010년 베이비호텔 1,695개소(30,712명 입소), 기타 5,705개소(148,964명 입소)에서

2011년 베이비호텔 1,709개소(30,768명 입소), 기타 5,870개소(155,339명 입소)로 증가

자료: 일본후생노동성, 2011.10.4, 「보육원 관련 상황 정리」, 고용균등·아동가족국 보육과 조사 (인가보육원)

일본후생노동성, 2012.3.30, 「2010년도 인가 외 보육시설의 현황 정리」, 고용균등·아동가족국 보육과 조사 (인가 외 보육시설)

2) 일본 보육료 지원 정책

일본후생노동성 고용균등·아동가족국 보육과에서 발표한 2012년도(평성 24년도) 보육대책관련 예산안 개요에 따르면, 보육관련 총 예산규모는 430,410백만엔으로, 2011년도 총 예산인 408,222백만엔보다 증액된 것을 볼 수 있다. 특별히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대기 아동 해소 부분으로, 즉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아동이 자리가 없어 대기 아동으로 기다리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집의 수용 규모를 확대하고자 지원하는 것이다. 전반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민간 보육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396,225백만엔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대기 아동 해소 촉진을 위한 사업비로 2,700백만엔, 보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업비로 137백만엔을 할당하고 있다.

또한 일본정부의 보육예산은 대기 아동 해소 측면 이외에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사용되는데, 사업별 세부내용을 보면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를 추진하는 데에 21,369백만엔, 가정보육 사업을 지원하는 데에 2,546백만엔, 환아가 있는 가족 및 환아 사후의 유가족이 보육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데에

4,065백만엔을 분배하였으며, 휴일 야간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로 780백만엔, 그 외 보육서비스 추진비로 5,134백만엔을 할당하였다(표 II-2-5 참조).

<표 II-2-5> 일본 정부의 보육 관련 지원예산 규모(2012)

단위: 백만엔(¥)

내용	보육시설 수용규모 증대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계
	민간 보육소 운영비	대기 아동 해소 촉진	보육 환경 개선 등	연장 보육 촉진	가정 보육 지원	환아 가정 보육	휴일 야간 보육 지원	기타	
규모	396,225	2,700	137	21,369	2,546	4,065	780	5,134	430,410

자료: 일본후생노동성, 「2012년도(평성 24년도) 보육대책관련 예산안 개요」, 고용균등·아동 가족국 보육과

일본의 보육료 지원방식은 어린이집 이용료 및 유치원 교육비용을 각각 일정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여기에 야간보육 등 이용시간이 연장되면 비용이 추가되는 형태이다. 2006년 기준으로 문부과학성에서 사립유치원교육비 지원 단가를 4개 등급으로 나누어 수업료를 지원하며 출산율 장려 및 다가구 가정 지원을 위해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 어린이집의 보육료 지원은 입소 아동의 보호수준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를 아동보호자로부터 수납하는 방식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호자 부담금액은 차등 적용되고 그 차액을 정부가 지원한다(서문희·박수연, 2008).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보육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소득계층별 차등단계는 보다 더 세분화되며, 지역마다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득계층별 차등단계는 중앙정부 기준을 적용하여 8단계로 구분하는 곳도 있지만 30단계까지 구분하는 곳도 있다. 따라서 대다수의 지역에서 부모가 실제로 납부하는 보육료는 중앙정부 기준보다 더 낮은 편이다.

<표 II-2-6>은 현재 일본에서 적용되는 소득계층별 보육시설 수납 기준액을 제시한 표이다. 생활보호법 보호대상 여부 및 시정촌민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소득세 과세액을 기준으로 보육시설 수납 기준액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아동의 연령 구분은 만 0세부터 만 5세에 이르기까지 1세를 기준으로 다른 금액을 적용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3세 미만과 3세 이상의 2가지 유형으로 단순한 편이다. 영아 보육을 이용하는 경우 유아 보육을 이용하는 때보다 보육시설 월 부담액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난다.

〈표 II-2-6〉 소득계층별 보육시설 수납 기준액(2010)

단위: 엔(¥)

계층구분	정의		월 지불액	
	구분	세액기준	3세 미만	3세 이상
제1계층	생활보호법 피보호세대		0	0
제2계층	제1계층, 제4~7계층 제외 전년도 시정촌 과세기준	시정촌민세 비과세대상	9,000	6,000
제3계층		시정촌민세 과세대상	19,500	16,500
제4계층	제 1계층 제외 소득세 과세세대 중 과세액에 따라 구분	40,000미만	30,000	27,000*
제5계층		40,000~103,000미만	44,500	41,500*
제6계층		103,000~413,000미만	61,000	58,000*
제7계층		413,000~734,000미만	80,000*	77,000*
제8계층		734,000이상	104,000*	101,000*

주: *표시는 보육료 한도액임.

자료: 일본후생노동성, 2010.1.18, 고용균등 아동가족국 보육과 조사.

3) 일본 표준보육료 산출

일본 정부에서는 매년 표준보육단가를 산출하여 고시한다. 산출방식은 어린이집 규모별로 총인건비와 관리비를 합산하고 이를 영유아 정원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산출한다. 표준보육단가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는 크게 인건비, 관리비 및 사업비가 있으며, 항목별 세부항목은 <표 II-2-7>과 같다.

〈표 II-2-7〉 일본 영유아 1인당 표준보육료 산출 항목

구분		내용
보육시설 운영비	사무비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근인력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급, 특별급여개선비, 특수업무수당 · 제수당(부양비, 조정비, 기말·초과근무, 주거, 통근, 관리비 등) · 사회보험비용사업주부담금(건강보험, 후생연금, 고용보험 등) - 비상근무인력 고상비(雇上費)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탁의(囑託醫)수당 · 사무직원고상비 · 비상근무직원고상비 · 연휴대체인력지원비
		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비, 청사 관리비, 피복수당, 건강관리비, 업무추진비, 근무조건개선비, 직원연수비, 보건위생비, 보수비, 특별관리비
	사업비	- 일반생활비(급식비, 교구교재비), 아동용 채난비(採暖費)

- 주: 1. 보육단가 = 보육원 운영경비/정원수
 2. 보육단가에는 민간시설인건비개선비용, 한냉지(寒冷地), 제설비(除雪費) 등이 가산됨.
 3. 보육단가는 지역구분별, 정원규모별, 연령구분별, 시설장유무별에 따라 설정.
 4. 위 내용은 일본 후생성의 1994년도 보육문제검토회보고서를 기초로 하였음.

자료: 子どもと保育総合研究所 편(2009). 最新保育資料集.

다음 <표 II-2-8>은 2012년도 현재 아동 1인당 지역별로 적용되는 기본보육 단가표이다. 정원 81인부터 90인까지를 기준으로 할 때, 전체 지역을 100으로 나눈다면 18/100지역, 15/100지역, 12/100지역, 10/100지역, 8/100지역, 6/100지역, 3/100지역,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18/100지역은 일반직 직원 급여에 관한 법률 제 11조 3규정에 기초하여 지역수당이 1급으로 적용되는 지역이며, 가장 높은 보육단가가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I-2-8> 일본의 아동 1인당 월 보육단가(2012)

	단위: 엔(¥)			
	0세아	1-2세아	3세아	4세 이상
18/100지역	171,060	100,410	47,860	40,800
15/100지역	167,410	98,360	46,940	40,040
12/100지역	163,750	96,300	46,010	39,270
10/100지역	161,310	94,940	45,390	38,760
8/100지역	158,870	93,570	44,780	38,250
6/100지역	156,430	92,200	44,160	37,740
3/100지역	152,770	90,150	43,230	36,970
그 외 지역	149,120	88,100	42,310	36,210

주: 정원 81-90인 기준

자료: 일본보육협회 <http://www.nippo.or.jp/howto/index3.html>(2012.11.23 접속기준)

<표 II-2-9> 및 <표 II-2-10>은 기본보육단가 최고치인 지역(18/100지역)과 최저치인 지역(그 외 지역)에서 어린이집 규모별 및 영유아 연령별 적용되는 표준보육료 사례를 보여주는 표이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정부가 지정한 유아 1인당 월 기본보육단가에 민간시설인건비 지원 등 어린이집 개선비용을 차등별로 가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지원한다.

일본의 표준보육단가는 만 4세 아동을 기준으로 아동 연령별, 지역별, 시설 규모별 및 민간시설 가산금별 차등 적용하는데, 인건비 중 각종 수당은 지역별로 1~13%의 가산금 차이를 두고 13등급으로 적용하며, 영유아 연령별로 만 0세, 만 1~2세, 만 3세, 만 4세 이상으로 구분한다. 지역별로는 특별구, 특감지역, 지급할합개정지역, 갑지역, 을지역, 병지역의 6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부터 31-45인, 46-60인, 61-90인, 91-120인, 121-150인, 151인 이상 시설의 7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교사 대 아동비율은 만 0세아의 경우 1:3, 만 1~2세아의 경우 1:6, 만 3세아의 경우 1:20, 만 4세 및 그 이상 아동의 경우 1:30이다.

이상의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일본의 보육료 지원정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함의로는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부의 보육지원 예산이 필요하며,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위해서 아동연령별 및 시설규모별 조건을 차등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보육시설 수용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본보육단가 이외에도 교직원 인건비 지원과 같은 민간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을 통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표 II-2-9〉 일본의 최고 보육료 지원사례: 18/100지역

단위: 엔(¥)

해당 지역	어린이집 정원	연령	기본 보육단가	민간시설인건비지원 등 어린이집 개선비용 추가금액			
				12.0% 가산분	10.0% 가산분	8.0% 가산분	4.0% 가산분
18 /100 지역	31-40명	만 0세아	188,790	21,500	17,910	14,330	7,160
		만 1-2세아	118,400	13,050	10,880	8,700	4,350
		만 3세아	66,050	7,140	5,950	4,760	2,380
		만 4세이상	59,020	6,300	5,250	4,200	2,100
	41-50명	만 0세아	186,550	21,230	17,690	14,150	7,070
		만 1-2세아	116,160	12,780	10,660	8,520	4,260
		만 3세아	63,810	6,870	5,730	4,580	2,290
		만 4세이상	56,780	6,030	5,030	4,020	2,010
	51-60명	만 0세아	180,430	20,500	17,070	13,660	6,820
		만 1-2세아	110,040	12,050	10,040	8,030	4,010
		만 3세아	57,690	6,140	5,110	4,090	2,040
		만 4세이상	50,660	5,300	4,410	3,530	1,760
	151-160명	만 0세아	160,670	18,130	15,100	12,080	6,030
		만 1-2세아	90,280	9,680	8,070	6,450	3,220
		만 3세아	37,930	3,770	3,140	2,510	1,250
		만 4세이상	30,900	2,930	2,440	1,950	850
	161-170명	만 0세아	160,090	18,060	15,040	12,030	6,010
		만 1-2세아	89,700	9,610	8,010	6,400	3,200
		만 3세아	37,350	3,700	3,080	2,460	1,230
		만 4세이상	30,320	2,860	2,380	1,700	950
	171명이상	만 0세아	159,550	17,990	14,740	11,800	5,990
		만 1-2세아	89,160	9,540	7,710	6,170	3,180
		만 3세아	36,810	3,630	2,780	2,230	1,210
		만 4세이상	29,780	2,790	2,080	1,670	930

자료: 일본후생노동성, 2011.2.10, 전국아동복지주관과장회의 보충자료, 고용균등·아동가족국 보육과 조사

〈표 II-2-10〉 일본 최저 보육료 지원 사례: 기타 지역(2011)

단위: 엔(¥)

해당 지역	어린이집 정원	연령	기본 보육단가	민간시설인건비지원 등 어린이집 개선비용 추가금액			
				12.0% 가산분	10.0% 가산분	8.0% 가산분	4.0% 가산분
그 외 지역	31-40명	만 0세아	164,490	18,580	15,480	12,390	6,190
		만 1-2세아	103,710	11,290	9,410	7,520	3,760
		만 3세아	58,080	6,180	5,150	4,120	2,060
		만 4세이상	52,010	5,460	4,550	3,640	1,820
	41-50명	만 0세아	162,550	18,350	15,290	12,230	6,110
		만 1-2세아	101,770	11,060	9,220	7,360	3,680
		만 3세아	56,140	5,950	4,960	3,960	1,980
		만 4세이상	50,070	5,230	4,360	3,480	1,740
	51-60명	만 0세아	157,230	17,710	14,750	11,810	5,900
		만 1-2세아	96,450	10,420	8,680	6,940	3,470
		만 3세아	50,820	5,310	4,420	3,540	1,770
		만 4세이상	44,750	4,590	3,820	3,060	1,530
	151-160명	만 0세아	140,330	15,680	13,060	10,460	5,220
		만 1-2세아	79,550	8,390	6,990	5,590	2,790
		만 3세아	33,920	3,280	2,730	2,190	1,090
		만 4세이상	27,850	2,560	2,130	1,710	850
	161-170명	만 0세아	139,810	15,620	13,010	10,410	5,200
		만 1-2세아	79,030	8,330	6,940	5,540	2,770
		만 3세아	33,400	3,220	2,680	2,140	1,070
		만 4세이상	27,330	2,500	2,080	1,660	830
	171명이상	만 0세아	139,330	15,560	12,960	10,380	5,180
		만 1-2세아	78,550	8,270	6,890	5,510	2,750
		만 3세아	32,920	3,160	2,630	2,110	1,050
		만 4세이상	26,850	2,440	2,030	1,630	810

자료: 일본후생노동성, 2011.2.10, 전국아동복지주관과장회의 보충자료, 고용균등·아동가족국 보육과 조사

다. 뉴질랜드

1) 뉴질랜드 보육시설 현황

뉴질랜드의 보육정책은 본래 복지부(Department of Social Welfare)에서 어린이집을 관할하고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에서 유치원을 관할하는 것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1986년 어린이집에 대한 책임을 모두 교육부로 이관하면서 체계가 일원화되었다. 영문명은 Early Childhood Education(ECE)이지만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ECEC)로 불리기도 하며, 지원기관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놀이방, 가정보육서비스를 통틀어 0-5세 영유아 대상 보육·교육 시설이 포함된다. 또한 뉴질랜드에서는 1989년 'Before Five' 개혁을 통해 5세 이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교육 및 보육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를 통합하여 같은 체제 안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래 영유아 시설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것은 유치원이었으나, 부모들은 의료와 교육이 통합된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는 어린이집을 선호하기 시작하였다. 그에 따라 1994년 이후 의료 및 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지게 되었다.

뉴질랜드 보육시설의 유형은 매우 다양한데, 운영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제3자가 이용아동을 돌보는 교사 주도형 시설로, 유치원(kindergartens), 어린이집(education and care centers), 가정보육시설(home-based service 또는 family day care)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경우 교육부 허가가 반드시 필요한데, 해당 시설 교사의 50% 이상이 ECE 교사자격증 소지자여야 한다는 허가 조건이 있다. 둘째는 부모 주도형 시설로, 이용아동의 부모들이 주도적으로 협력하여 운영하는 놀이방(playgroup) 및 원거리 통신학교(correspondence school), 원주민 마오리족 놀이방(ngā puna kōhungahunga)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경우 교육부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하다.

뉴질랜드 정부의 2011년 영유아 보육·교육통계 요약보고서에 따르면, 영유아 보육시설 수는 총 5,258개소이다. 전년도 같은 시기와 비교해볼 때 106개소(2.0%) 이상 증가하였다. 이 중 정부 인가를 받은 보육시설이 4,439개소, 받지 않은 시설(놀이방)이 819개소로, 인가 보육시설 수는 118개소(2.7%) 더 증가한 데 비해 비인가 놀이방은 12개소(1.4%) 감소하였다. 전반적인 경향을 보면, 최근 5년간 보육시설 수가 해마다 2%~5% 증가하고 있다(표 II-2-9 참조).

비인가 놀이방은 논외로 하고, 인가 보육시설에 등록된 전체 아동 수는 2011년 194,101명으로 2010년보다 2.7%(5,177명), 2007년보다 13%(22,963명) 증가하였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2007년 대비 유치원 이용아동 수는 15% 감소한 반면 가정보육시설 이용아동 수는 62% 증가하였으며 어린이집은 24%, 놀이방은 3.1%, 원주민 보육센터는 4.3%의 증가추세를 보였다(표 II-2-10 참조). 인가를 받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하지만 정부 인가를 획득한 원거리 통신학교와 임시위탁 어린이집의 주당 평균 이용시간은 2011년 현재 20.4시간으로 전년 대비 1.5%(또는 0.3시간), 2007년 대비 16%(또는 2.8시간) 증가하였다.

〈표 II-2-11〉 뉴질랜드 보육시설 현황(2007-2011)

단위: 개소(%)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E-D		E-A		
	(A)	(B)	(C)	(D)	(E)	수	비중(%)	수	비중(%)	
인가 보육 시설	어린이집	1,932	2,047	2,236	2,419	2,529	110	(4.5)	597	(30.9)
	유치원	618	622	626	632	633	1	(0.2)	15	(2.4)
	가정보육	227	244	297	307	314	7	(2.3)	87	(38.3)
	놀이센터	466	464	461	461	459	-2	(-0.4)	-7	(-1.5)
	원주민어린이집	470	467	464	463	463	0	(0.0)	-7	(-1.5)
	통신학교	1	1	1	1	1	0	(0.0)	0	(0.0)
	임시위탁	36	36	38	29	29	0	(0.0)	-7	(-19.4)
	병원보육	-	-	-	9	11	2	(22.2)	-	-
소계	3,750	3,881	4,123	4,321	4,439	118	(2.7)	689	(18.4)	
비인가 시설	놀이방-전반	608	656	672	726	720	-6	(-0.8)	112	(18.4)
	태평양섬	62	53	44	51	48	-3	(-5.9)	-14	(-22.6)
	유아교육	30	32	27	29	26	-3	(-10.3)	-4	(-13.3)
	원주민놀이방	22	24	24	25	25	0	(0.0)	3	(13.6)
	인가면제	7	3	-	-	-	-	-	-	-
	놀이센터	7	3	-	-	-	-	-	-	-
	인가면제	7	3	-	-	-	-	-	-	-
	원주민어린이집	7	3	-	-	-	-	-	-	-
소계	729	768	767	831	819	-12	(-1.4)	90	(12.3)	
계	4,479	4,649	4,890	5,152	5,258	106	(2.1)	779	(17.4)	

자료: 뉴질랜드 교육부, 연간 유아교육·보육 통계 요약 보고서 2011.

<http://www.educationcounts.govt.nz/statistics/ece2/annual-ece-summary-reports>

〈표 II-2-12〉 뉴질랜드 인가 보육시설 이용아동 현황(2007-2011)

단위: 명(%)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E-D		E-A		
	(A)	(B)	(C)	(D)	(E)	수	비중(%)	수	비중(%)	
인가 보육 시설	어린이집	91,733	97,756	101,424	109,204	113,876	4,672	(4.3)	22,143	(24.1)
	유치원	43,695	41,487	39,346	37,600	36,967	-633	(-1.7)	-6,728	(-15.4)
	가정보육	11,073	13,065	15,054	17,084	17,955	871	(5.1)	6,882	(62.2)
	놀이센터	14,664	14,929	15,171	15,049	15,112	63	(0.4)	448	(3.1)
	원주민어린이집	9,236	9,165	9,288	9,370	9,631	261	(2.8)	395	(4.3)
	통신학교	737	591	627	617	560	-57	(-9.2)	-177	(-24.0)
	계	171,138	176,993	180,910	188,924	194,101	5,177	(2.7)	22,963	(13.4)
	연간 변동 (%)		5,855 (3.4)	3,917 (2.2)	8,014 (4.4)	5,177 (2.7)				

자료: 뉴질랜드 교육부, 연간 유아교육·보육 통계 요약 보고서 2011.

<http://www.educationcounts.govt.nz/statistics/ece2/annual-ece-summary-reports>

2) 뉴질랜드 보육료 지원 정책

뉴질랜드의 유아서비스는 130년 이상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대부분 비정부 기관에 의해 자원봉사 및 기금 모금 등을 통하여 운영되어 왔다. 유일하게 원거리 통신학교만 정부가 소유하여 1993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소규모 보육 시설들의 경우 개인 및 기업에서 이윤을 추구하며 운영되고 있다. 1947년 뉴질랜드 정부의 유아보육·교육 위원회에서는 미취학 영유아 시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육 및 교육시설을 국유화하려 하였으나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국가의 개입 및 관리를 거부하였다. 그에 따라 뉴질랜드 정부의 보육지원은 정책 초기부터 비영리 단체에 의해 운영되어 온 보육시설들의 운영비 및 교사 연수 기금을 연간 단위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부 당국의 허가를 받거나 1992년 제정된 가정보육법에 의거하여 인증을 획득해야만 한다. 가정보육법에서 인증 필요대상에 놀이방은 제외하고 있는데, 이것은 놀이방의 경우 이용시간이 1일 통상 4시간을 넘지 않는 짧은 시간인데다 이용 아동의 절반 이상이 부모나 보호자를 대동하여 오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놀이방을 이용할 경우에는 다른 인가 보육시설이 받는 보육료 수준을 받을 수 없다. 여타 다른 인가 보육시설에서는 유형에 상관없이 동일한 수준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 비용은 아동 1인당 하루 1시간 이용할 때를 기준하여 책정된 금액으로, 보육시설에 등록된 아동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또한 아동 연령에 따라서도 2세 이하인 경우와 2세 이상인 경우로 나뉘어 보조금이 다르게 적용된다.

뉴질랜드 정부에서는 2010년 7월 이후 '20시간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3-5세 유아들이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교육시설에서 20시간 무상 교육(하루 최대 6시간 이용 가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부모 주도형 시설이 아닌 교사 주도형 시설에서만 적용되며, 20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이용시간의 비용은 기부, 선택 청구, 추가 지불 등의 방식으로 충당된다.

3) 뉴질랜드 표준보육료 산출

영유아 시설에 지원하는 정부보조금은 유아교육 재정보조금(ECE Funding Subsidy), 20시간 유아교육 보조금(20 Hours ECE), 평등 지원금(Equity Funding), 고립지역 보육서비스를 위한 연간 추가지원금(Annual Top-up for

Isolated Services: ATIS), 임시 등록교사를 위한 보조금(Support Grant for Provisionally Registered Teachers)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 중 유아교육 재정보조금(ECE Funding Subsidy)이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유아교육 재정지원을 받는 시설은 교사 주도형 시설과 부모 주도형 시설로 크게 구분해볼 수 있는데, 각각의 유형마다 아동 연령에 따라 2세 미만, 2세 이상으로 지원금이 구분되어 지급된다(표 II-2-13 참조).

〈표 II-2-13〉 뉴질랜드 주요시설 재정보조금 지원 수준

단위: \$/1시간

인가교사비율 \ 유형	유형	2세 미만	2세 이상	20시간 지원금
종일제 교사주도형 보육시설	0-24%	7.45	3.77	8.22
	25-49%	8.72	4.54	9.01
	50-79%	10.80	5.69	10.25
	80% 이상	11.93	6.60	11.25
시간제 교사주도형 보육시설	0-24%	6.84	3.33	4.60
	25-49%	7.86	3.70	4.98
	50-79%	9.65	4.30	5.63
	80% 이상	10.61	4.81	6.20
종일제 및 시간제 유치원	0-24%	7.47	3.79	8.24
	25-49%	8.79	4.60	9.08
	50-79%	10.93	5.79	10.38
	80% 이상	12.09	6.73	11.40
	시간제-100%	12.81	6.43	7.70

주: 2011년 7월 이후 적용 기준
 자료: 네덜란드 교육부, 재정지원 핸드북(Funding Handbook).
<http://www.lead.ece.govt.nz/ManagementInformation/Funding/FundingHandbook.aspx>
 x (2012년 11월 28일 접속기준).

유아교육 재정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미충족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된다. 유아교육 재정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시설이어야 한다. 둘째, 주당 2.5시간 이상 연속하여 진행되는 보육활동시간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 반드시 현재 시설에 이용아동으로 등록된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만 지급한다. 지원 자격은 또한 1989 교육법 및 2008 교육(유아교육서비스) 규제법, 내륙지방 세입 규제 및 법령들, 보건 안전 법령들에 의거하여 규제된다.

뉴질랜드에서는 보조금이 일 년에 세 번(3월, 7월, 11월) 지급된다. 한 번 지

급될 때마다 추후 4개월간 운영예산분과 이전 4개월간 정산금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구조이다. 부모 및 보호자는 반드시 본인의 자녀가 두 개 이상의 보육시설에 동시에 이중 등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단지 원거리 통학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만 예외로, 이 경우 주당 8시간까지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유아교육 재정보조금은 보육시설 이용시간당 지원된다. 보육시설 1개소 기준 아동 1인당 하루 최대 6시간까지, 주당 최대 3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시간 유아교육 보조금(20 Hours ECE)은 3, 4, 5세 유아를 대상으로 1일 최대 6시간, 주당 최대 20시간까지 유아교육 재정보조금(ECE Funding Subsidy)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20시간 유아교육 보조금에 유아교육 10시간 추가지원금(Plus 10 ECE)을 받을 수 있다. 유아교육 10시간 추가지원금은 새로이 추가된 항목으로, 20시간 유아교육 보조금을 지원받는 아동들이 그 대상이 된다. 지원규모는 30시간 기준 유아교육 재정보조금 수준과 20시간 유아교육 보조금 수준 사이의 차액만큼 받을 수 있다.

평등 지원금(Equity Funding)은 유아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상 지역에 교재교구를 추가 제공하기 위한 보조금이다. 정부가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한 인가 보육시설이라면 어디서나 받을 수 있으며, 유아교육 재정보조금과 같이 1년에 3회 제공된다.

고립지역 보육서비스를 위한 연간 추가지원금(Annual Top-up for Isolated Services: ATIS)은 소외된 지역의 소규모 인가 보육시설을 위한 세입추가지원금이다. 이것은 본래 평등 지원금(Equity Funding)의 소외지역 지원항목이었으나 분리되었다.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사립 및 공립(지역사회 기반) 시설 중 유아교육 재정보조금을 연간 20,000달러 미만으로 받는 시설인 동시에 고립지수가 1.65 이상으로 나타난 경우, 고립지역 보육서비스를 위한 연간 추가지원금은 20시간 유아교육 보조금 및 평등 지원금을 받을 때 같이 받을 수 있다. 고립지역을 위한 연간 추가지원금은 1년 단위로 계산되며, 매해 7월 유아교육 재정보조금 입금시 같이 지급된다.

임시 등록교사를 위한 보조금(Support Grant for Provisionally Registered Teachers)은 교사 등록 요구조건의 영향을 받는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2011년 7월부터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보육시설 중 정부로부터 허가증을 받은 교사의 비율이 전체 채용교사의 80%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으며, 80% 이상인 경우 임시 등록교사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된다.

이상의 뉴질랜드 사례에서 살펴볼 때, 보육료 지원체계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사점으로는 해당 국가의 경우 양질의 시설과 그렇지 못한 시설간의 구분기준이 적용되어 보육료 지원이 보육서비스의 질적 측면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한다는 점이 특기할만하다. 뉴질랜드에서는 이것이 인가 교사비율이라는 기준으로 적용되었으나, 우리나라 보육료 연구의 경우 평가인증 항목을 조사하여 보육료 산출시 반영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반영한 부분은 아니었으나 추후 연구와 관련하여서는 아동의 연령구분을 2세 기준으로 만 0-1세 영아와 만 2-5세 유아로 이분화하여 단순화한 점이 참고할만하다. 또한 다음번 보육료 지원시 이전 보육료에서 지원했던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과 과도했던 부분을 정산하고 관리하는 작업이 한 번 더 이루어지는 점 또한 참고할 가치가 있다.

〈표 II-2-14〉 뉴질랜드 기타 시설 재정보조금 지원 수준

단위: \$/1시간

시설 구분	유형	2세 미만	2세 이상	20시간 지원금
종일제 교사중심형 가정보육	기본	7.20	3.90	8.66
	우수	8.22	4.40	9.17
원주민 보육시설	기본	7.62	3.83	7.70
	우수	8.70	4.37	8.17
놀이센터	기본	7.62	3.83	4.88
	우수	8.70	4.37	5.43
놀이집단	공통	1.44	1.44	-

주: 2011년 7월 이후 적용 기준
 자료: 네덜란드 교육부, 재정지원 핸드북(Funding Handbook).
<http://www.lead.ece.govt.nz/ManagementInformation/Funding/FundingHandbook.aspx>
 x (2012년 11월 28일 접속기준).

3. 선행연구

가. 표준보육료 개념 및 흐름

1) 표준보육료 개념

표준보육료이라는 개념은 다양한 용어로 불리고 있으며, 어떤 하나의 일원화된 명칭으로 지칭되지 않는다. 관련 선행연구들에서는 표준보육료 뿐만 아니라

표준보육단가, 표준보육비용 등으로 혼재하여 사용하였는데, 기본적인 개념은 같은 것으로(김혜금, 2010),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변용찬과 임유경(2002)의 연구에서는 표준보육료를 일정한 기준 하에 아동을 실제로 보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산한 금액으로 정의하였다. 박기백(2005)은 보육시설 표준보육료를 공식적인 보육시설을 통해 만 0~5세의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에 필요한 투입비용을 추산하는 것으로 영유아를 일정 기준으로 보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김혜금(2010)은 표준보육료란 보육시설이 평가인증 기준에 부합하면서 표준보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제로 투입하는 제반 비용에 기초하여 추산한 금액으로 정의하였다. 김현숙과 서병선(2008)은 표준보육료에서 '표준'을 다음 세 가지로 정의하였는데 첫 번째는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된 현실적 비용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였으며, 두 번째는 영유아 보육법령 및 시행령 등 법적, 사회적 기준을 충족하는 비용, 세 번째는 사회가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일정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정의하여 활용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서의 정의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표준보육료를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정의하고, 이를 최소치(1안)와 이상치(2안)으로 구분하여 산출해내고자 한다.

2) 표준보육료 연구의 흐름

표준보육료 연구는 1990년을 시초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당시 표준보육단가 항목으로는 종사자인건비, 종사자수당, 아동급식비, 운영비, 교육자료 구입비 등이 포함되었다. 1992년에는 종사자인건비(원장, 취사부, 관리인, 보육교사, 간호사), 가계보조비, 보육교사수당, 종사자급식비, 복지수당, 보육아동급식비 및 간식비, 시설운영비(난방연료비, 차량유지비, 공공요금, 수용경비, 건물유지비) 교재교구비 등 8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1994년에는 세부 항목으로 11개 항목이 선정되었는데,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항목으로는 인건비, 퇴직적립금, 가계보조금, 보육교사수당, 종사자 급식비, 복지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등이 포함되었으며, 시설 관련 항목으로는 시설관리운영비, 즉 보육아동에 대한 급식비와 교재교구비 등이 포함되었다. 1996년에는 인건비, 퇴직적립금, 가계보조비, 보육교사수당, 종사자급식비,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보육아동급식비, 시설관리운영비, 교재교구비 등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가 이것이 1998년에는 종사자

인건비, 보육아동급식비, 교재교구비, 시설관리운영비, 차량운영비 등 5개 항목으로 축소되었다. 2005년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표한 표준보육단가에서는 종사자인건비, 아동급간식비, 교재교구비(보통교실설비비, 교육재료비 및 소모품),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수용경비), 시설설치비 5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김혜금, 2010).

나. 표준보육료 산출 기준

1) 시설규모별 산출

사실 어느 하나의 연구를 통해서 보육시설의 다양한 규모를 모두 반영하여 규모별 비용을 일일이 산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에 따라 아동의 연령별 반 편성 기준을 활용하여 만 0-2세 영아전담시설 규모 기준인 20인부터 만 0-5세 영·유아 복합시설 규모 기준인 50인(실제규모 21~65명 포괄), 77인(66~91명 규모반영), 97인(92~117명 규모반영), 124인(118~144명 규모반영), 142인(118~144명 반영), 169인(145명 이상 반영)으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김현숙, 서병선(2008)의 연구에 따르면 이는 2005년 1월 31일 시행령에 따른 새로운 교사 대 아동비율을 반영한 것으로, 현재 모든 보육시설이 위와 같은 기준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표준보육료를 시설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산출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보건복지가족부 의뢰를 받아 수행한 김현숙과 서병선(2008)의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방안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2005년 여성가족부 의뢰를 받아 수행된 한국조세연구원(2005)의 표준보육료 연구를 보완한 것으로, 물가상승분 반영 및 표준보육료 구성항목의 산정방법 개선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필요비용을 재산정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 다섯 가지 항목을 토대로, 시설규모별로 아동연령을 혼합한 평균적인 표준보육료를 산출해 낸 바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종사자 인건비는 시설 규모에 따른 종사자 배치 편차로 인해, 급간식비의 경우 규모가 클수록 재료비가 많이 드는 구조로 인해, 교재교구비의 경우 연령별 혼합구성으로 인해, 규모의 경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관리운영비와 시설설치비도 예상했던 만큼 규모의 경제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3-1〉 2009년도 시설규모별 아동 1인당 표준보육료

단위: 원/월

	인건비	교재 교구비	급간식비	관리 운영비	시설 설치비	표준 보육료	
20인	1안	316,000	40,000	44,400	37,000	14,000	451,400
	2안	567,100	40,000	52,500	50,000	20,000	729,600
50인	1안	227,000	52,300	51,900	37,000	15,700	383,900
	2안	394,000	53,000	61,300	48,000	22,700	579,000
77인	1안	189,000	51,000	54,000	37,000	14,700	345,700
	2안	329,000	52,500	63,900	43,000	21,700	510,100
97인	1안	194,000	51,400	52,500	37,000	14,700	349,600
	2안	332,000	52,900	62,000	41,000	21,700	509,600
124인	1안	183,000	50,200	53,700	37,000	14,700	338,600
	2안	315,000	52,400	63,500	40,000	20,700	491,600
142인	1안	190,000	49,500	52,500	37,000	14,700	343,700
	2안	323,000	52,300	62,000	39,000	20,700	497,000
169인	1안	178,000	48,300	53,300	37,000	14,700	331,300
	2안	305,000	52,000	63,100	38,000	20,700	478,800

주: 1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수준, 2안은 국공립 유치원 수준임.

자료: 김현숙·서병선(2008).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방안 연구. 여성부.

김현숙과 서병선(2008)의 연구에 이어 김혜금(2010)의 연구에서도 시설규모별 표준보육료를 산출하였다. 그러나 김혜금(2010)은 김현숙과 서병선(2008)과 달리 국공립시설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고, 현재의 보육시설 투입비용에 근거하여 산출하였다. 산출기준으로는 평가인증 기준에 부합하면서 표준보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정의하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산정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출단가는 김현숙과 서병선(2008)에서보다 더 높았다. 이는 어린이집 운영상 어려움을 보여주는 결과로,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적자는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나 자체 경비 절감을 통해 개별적으로 해결해왔던 경향이 반영된 것이다.

김현숙, 서병선(2008)과 김혜금(2010)의 연구에서 모두 시설 1곳당 채용한 시설장, 보육교사, 영양사의 수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의 종사자 배치기준에 일치한다. 그러나 간호사와 취사부 채용인원 수는 약간 차이를 보이는데, 이를테면 김현숙과 서병선의 연구(2008)에서는 보다 유치원에 적합한 기준을 적용하여 5개 기관당 간호사 1인을 채용하고, 영유아 수가 142인이거나 169인인 시설에서는 취사부 3인을 채용하는 것으로 한다. 반면 김혜금(2010)의 연구에서 설정한 간호사 수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의 종사자 배치기준에 미달하고, 취사부 수는

종사자 배치기준을 초과한다. 참고로, 현행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은 영유아 100인 이상 시설에서 간호사 1인을 영유아 40인 이상 80인 이하 시설에 취사부 1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 II-3-2〉 표준보육료 1안(운전기사 인건비 포함)

단위: 원/월

구분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만 0세	1안 A	974,791	1,047,193	1,012,244	1,012,325	1,004,063	1,006,131	996,340
	1안 B	1,044,431	1,075,049	1,030,332	1,026,683	1,015,295	1,015,939	1,004,581
	2안 A	1,113,463	1,193,364	1,155,785	1,156,151	1,147,170	1,149,556	1,139,005
	2안 B	1,189,353	1,223,720	1,175,497	1,171,798	1,159,410	1,160,244	1,147,986
만 1세	1안 A	657,680	730,082	695,133	695,214	686,952	689,020	679,229
	1안 B	727,320	757,938	713,221	709,572	698,184	698,828	687,470
	2안 A	786,768	866,670	829,091	829,456	820,475	822,861	812,311
	2안 B	862,658	897,026	848,803	845,104	832,716	833,550	821,292
만 2세	1안 A	513,353	585,755	550,806	550,886	542,625	544,692	534,902
	1안 B	582,993	613,611	568,894	565,245	553,857	554,501	543,143
	2안 A	628,155	708,057	670,478	670,843	661,863	664,248	653,698
	2안 B	704,045	738,413	690,190	686,491	674,103	674,937	662,679
만 3세	1안 A	-	420,515	385,566	385,646	377,385	379,452	369,662
	1안 B	-	448,371	403,654	400,005	388,617	389,261	377,903
	2안 A	-	536,270	498,690	499,056	490,075	492,461	481,911
	2안 B	-	566,625	518,402	514,703	502,315	503,149	490,892
만 4~5세	1안 A	-	379,154	344,205	344,285	336,024	338,091	328,301
	1안 B	-	407,010	362,293	358,644	347,256	347,900	336,542
	2안 A	-	490,742	453,163	453,528	444,547	446,933	436,383
	2안 B	-	521,098	472,874	469,175	456,788	457,622	445,364

주: A는 운전기사 인건비 미포함, B는 운전기사 인건비 포함 산출단가임.
 자료: 김혜금(2010). 보육료 현실화를 위한 표준보육료 산정 연구. 한국보육시설연합회.

2) 아동연령별 산출

표준보육료 산출에 있어 아동의 연령별 차이를 반영하는 것은 매우 기본적인 접근 방법 중 하나이다. 종사자 인건비의 경우 아동의 연령에 따라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다르므로, 보육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종사자 인건비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급간식비의 경우 아동의 연령에 따라 소비하는 열량이 다르기 때문에, 연령이 높아질수록 급간식비는 상승한다. 교재교구비 또한 아동 연령별로 활용할 수 있는 교재교구의 종류 및 교재교구를 다루는 기술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아동연령별 산출단가에 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종사자

인건비와 급간식비에 연령별 차등을 두어 표준보육료를 산출한 김현숙과 서병선(2008)의 연구결과는 <표 II-3-3>과 같다. 종사자 인건비의 경우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5세로 구분하여 산출하였는데, 만 4세와 5세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유는 이 연령대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이 같기 때문이다. 급간식비의 경우 크게 영아반(만 1-3세)과 유아반(만 4·5세)으로 구분하였으며, 아동 1인당 필요면적이 연령별로 제한되어 있지 않은 관리운영비와 시설설치비의 경우 모든 아동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표 II-3-3> 2009년도 연령별 1인당 표준보육료(97인 기준)

단위: 원/월

구분	만 1세아		만 2세아		만 3세아		만 4세아		만 5세아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인건비	364,000	636,000	274,000	474,000	153,000	258,000	127,000	211,000	127,000	211,000
교재교구비	57,400	57,400	43,800	43,800	52,000	52,000	51,800	51,800	52,600	52,600
급간식비	39,700	55,000	39,700	55,000	39,700	55,000	52,900	73,300	52,900	73,300
관리운영비	37,000	41,000	37,000	41,000	37,000	41,000	37,000	41,000	37,000	41,000
시설설치비	14,700	21,700	14,700	21,700	14,700	21,700	14,700	21,700	14,700	21,700
표준보육료	512,800	811,100	409,200	635,500	296,400	427,700	283,400	398,800	284,200	399,600

주: 1안 -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

2안 - 국공립 유치원 수준

자료: 김현숙·서병선(2008).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방안 연구. 여성부.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김현숙·서병선, 2008)를 토대로 하여 산출된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의 정부지원시설(국공립어린이집) 보육료 수준을 살펴보면, 영아 및 유아 대상 보육료는 모두 97인 어린이집 기준이다(표 II-3-4 참고).

<표 II-3-4> 2009년도 영아 및 유아 표준보육료 및 정부지원 보육료 비교
(97인 어린이집, 1인 기준)

단위: 원/월

구분	2005년 표준보육료 (한국조세연구원, 2005)	2009년 정부지원 시설 보육료 (기본보육료 포함)	2009년 표준보육료 (김현숙·서병선, 2008)
영아	만 0세	788,973	711,300
	만 1세	524,038	512,800
	만 2세	403,333	409,200
유아	만 3세	267,143	296,400
	만 4세	247,529	283,400
	만 5세	249,503	284,200

주: 2009년도 만 0세아 표준보육료(711,300원)는 아동마다 분유에 대한 선호도가 다르므로 일률적 제공이 곤란하기에 분유값을 제외하여 산정하였음.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도 표준보육료 연구결과 발표, 2009년 7월 14일자 보도자료.

2005년도와 비교할 때, 표준보육료 산출 단가는 만 0-2세 영아의 경우 더 낮아졌으나 만 3-5세 유아의 경우 더 높다. 항목별 구성을 보면 영아 표준보육료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영아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유아보다 높기 때문이다. 유아의 경우 영아에 비해 신체 발달 및 인지 능력 발달로 인해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고 보다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유아 표준보육료에서는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관리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다.

아동 연령별 편차를 반영하여 표준보육료를 산정한 김혜금의 연구(2010)에서도 영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표준보육료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드는 반면, 교재교구비, 아동급간식비, 관리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영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커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표준시설비의 경우는 불규칙적인 증감 양상을 보인다(표 II-3-5 참조).

〈표 II-3-5〉 2010년도 연령별 표준보육료 항목별 구성비율
(97인 어린이집, 1인 기준)

단위: %(원/월)

구분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5세
인건비	68.5 (693,083)	63.1 (438,803)	59.9 (329,825)	47.8 (184,522)	44.4 (152,737)
업무추진비	0.5 (5,670)	0.8 (5,670)	1.0 (5,670)	1.5 (5,670)	1.6 (5,670)
관리운영비	4.7 (47,123)	6.8 (47,123)	8.6 (47,123)	12.2 (47,123)	13.7 (47,123)
사업운영비	11.3 (114,420)	15.2 (105,747)	16.0 (88,266)	21.1 (81,515)	24.2 (83,448)
시설비	15.0 (152,029)	14.1 (97,871)	14.5 (80,002)	17.3 (66,816)	16.1 (55,307)
표준보육료	100.0 (1,012,325)	100.0 (695,214)	100.0 (550,886)	100.0 (385,646)	100.0 (344,285)

자료: 김혜금(2010). 보육료 현실화를 위한 표준보육료 산정 연구.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다. 관련 선행연구 시사점

지금까지 표준보육료 관련 선행연구의 항목 구성 및 산출기준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표준보육료 산출 연구에 있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아동 연령별 및 규모별 보육료 산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보육교사의 제수당 및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수의 보육교사들은

10~12시간/일 근무를 하고 있지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는 드물다. 이에 대해 김현숙과 서병선(2008)의 연구에서도 보육료 산정에 있어 보육교사의 초과수당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현재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가 보수교육에 참여하거나 평가인증 준비, 혹은 보육활동 외의 다른 업무로 인하여 보육활동에 공백이 생길 경우 대체교사의 채용이 필요한 현실이다. 따라서 표준보육료 산출시 보육교사들이 안심하고 육아휴직, 보수교육 참여, 기타 업무수행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인건비를 최저 수준에서뿐 아니라 적정 수준에서 산정할 필요가 있다.

Ⅲ. 어린이집 운영 실태조사

본 장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현황 및 운영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및 현행 표준보육료 관련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 사례조사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어린이집 운영 현황

가. 일반적 특성

본 연구를 위해 우리나라 전국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유형별 할당표집을 통하여 국공립어린이집 50부, 법인어린이집 50부, 민간어린이집 100부, 가정어린이집 100부의 총 300부 세출결산 자료 수거를 목표로 450부를 배포하였다. 그 결과 325부를 수거할 수 있었으며, 데이터클리닝 및 2차 확인 작업을 통해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307부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설문조사에 응한 어린이집 원장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III-1-1>과 같다.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이 95.4%로, 남성은 4.6%에 불과하였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은 여성 원장이 100.0%로 여성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법인어린이집의 경우 여성 79.6%, 남성 20.4%로 남성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46.04세로, 40세~49세가 전체 응답자의 58.0%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50~59세가 22.5%, 30~39세가 15.9%, 60세 이상이 3.6% 순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국공립어린이집과 법인어린이집은 40대, 50대, 30대 순으로 많았으나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의 경우에는 40대 다음으로 30대가 50대보다 다소 많은 경향을 보였다.

응답자의 학력은 대학원졸업자가 32.6%로 가장 많고, 대학교졸업자가 29.0%, 전문대학졸업자가 17.3%로 고학력이었다. 현재 대학원에 재학중인 경우도 10.4%로 많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들의 학문적인 관심도가 높은 편임을 볼 수 있었다. 유형별로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인 경우 대학원졸업자가 54.4%에 이르러 가장 높은 학력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법인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이집 순이었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에만 다른 유형과 달리 대학원졸업자보다 4년제 대학교 졸업자가 더 많이 나타났다. 이는 어린이집 원장 연령대에서 상대적으로 가정어린이집에 30대 젊은 원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과는 관련이 있어 보인다.

어린이집 원장의 고용지위를 살펴보면, 전체 307명 조사대상자 중 본인이 어린이집 운영자인 동시에 원장인 경우가 74.9%(230명)로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고용된 원장으로 월급을 받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25.1%, 77명)보다 4배 가까이 많았다. 유형별로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법인어린이집의 경우 고용된 원장인 비율이 각각 41.8%, 49.1%로 본인이 운영자인 경우(국공립 58.2%, 법인 50.9%)와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운영자인 동시에 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로, 피고용자인 경우는 각각 16.2%, 6.0%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III-1-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단위: %(명)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전체
전 체		25.7 (79)	17.6 (54)	24.1 (74)	32.6(100)	100 (307)
성별	남	0.0 (0)	20.4 (11)	1.4 (1)	2.0 (2)	4.6 (14)
	여	100 (79)	79.6 (43)	98.6 (73)	98.0 (98)	95.4 (293)
연령	30~39세	11.4 (9)	11.1 (6)	19.4 (14)	20.0 (20)	15.9 (49)
	40~49세	62.0 (49)	46.3 (25)	59.7 (43)	61.0 (61)	58.0 (178)
	50~59세	25.3 (20)	29.6 (16)	18.1 (13)	18.0 (18)	22.5 (69)
	60세이상	1.3 (1)	13.0 (7)	2.8 (2)	1.0 (1)	3.6 (11)
학력	고졸	1.3 (1)	9.3 (5)	4.1 (3)	6.0 (6)	4.9 (15)
	전문대졸	7.6 (6)	14.8 (8)	21.6 (16)	23.0 (23)	17.3 (53)
	대재	3.8 (3)	0.0 (0)	5.4 (4)	11.0 (11)	5.9 (18)
	대졸	22.8 (18)	37.0 (20)	21.6 (16)	35.0 (35)	29.0 (89)
	대학원재	10.1 (8)	1.9 (1)	14.9 (11)	12.0 (12)	10.4 (32)
대학원졸	54.4 (43)	37.0 (20)	32.4 (24)	13.0 (13)	32.6 (100)	
원장 지위	피고용자	41.8 (33)	49.1 (26)	16.2 (12)	6.0 (6)	25.1 (77)
	운영자	58.2 (46)	50.9 (27)	83.8 (62)	94.0 (94)	74.9 (230)

본 연구 조사대상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증 소지 현황을 보면, 전체 응답자의 99.3%(305명)가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체의 81.4%(250명)이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였으며, 45.9%(141명)가 유치원교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13.7%(42명)는 유치원교사 1급 자격증

을 소지하고 있었고, 11.4%(35명)는 보육교사 2급 자격증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을 볼 때,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원장들의 보육 및 유아교육 분야 이해도 및 준비도는 높은 편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분야의 자격증 소지현황을 보면, 전체의 36.8%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었으며, 전체의 8.1%가 간호사 및 조무사 자격증을 갖고 있었고, 전체의 7.8%가 조리사 자격증을, 전체의 1.9%가 중등교사 자격증을, 전체의 1.0%가 영양사 자격증을 갖고 있었다. 전체의 6.5%는 초등학교 교사나 요양보호사, 평생교육사 등의 기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표 III-1-2〉 조사대상자의 자격증 소지 현황(중복응답)

구분	단위: %(명)					
	원장 (시설장)	보육교사 1급	보육교사 2급	유치원 원감	유치원 교사1급	유치원 교사2급
소지	99.3(305)	81.4(250)	11.4(35)	2.6(8)	13.7(42)	45.9(141)
미소지	0.7(2)	18.6(57)	88.6(272)	97.4(299)	86.3(265)	54.1(166)
구분	간호사 조무사	사회 복지사	영양사	조리사	중등교사	기타
소지	8.1(25)	36.8(113)	1.0(3)	7.8(24)	1.9(6)	6.5(20)
미소지	91.9(282)	63.2(194)	99.0(304)	92.2(283)	98.1(301)	93.5(287)

조사대상자의 현재 어린이집에서 원장 경력은 10년 이상인 경우가 33.6%로 가장 많고, 4~6년이 22.5%, 7-9년이 18.2%로, 4년 이상의 장기근속인 경우가 전체의 74.3%를 차지하였다. 흥미롭게도 현재 어린이집에 근무하기 전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원장으로 일한 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가 60.3%로 가장 높았다.

〈표 III-1-3〉 조사대상자의 어린이집 원장 경력

	단위: %(명)					
	1년 미만	1-3년	4-6년	7-9년	10년 이상	계
이전어린이집	60.3(185)	13.7(42)	9.8(30)	5.5(17)	10.7 (33)	100 (307)
현재어린이집	2.6 (8)	23.1(71)	22.5(69)	18.2(56)	33.6(103)	100 (307)

나. 규모

조사대상 어린이집 영유아 정원 및 현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표 III-1-4>와 같다. 영유아 현원을 토대로 범주화한 결과, 49인 이하 어린이집이 55.4%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표 III-1-4〉 어린이집 유형별 현원 분포

단위: %(개소)

구분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계
20인 이하	5.0 (4)	-	6.7 (5)	100.0 (100)	35.5 (109)
21~49인	21.5 (17)	24.1 (13)	41.9 (31)	-	19.9 (61)
50~76인	26.6 (21)	46.3 (25)	16.2 (12)	-	18.9 (58)
77~97인	30.4 (24)	16.6 (9)	14.9 (11)	-	14.3 (44)
98인 이상	16.5 (13)	13.0 (7)	20.3 (15)	-	11.4 (35)
합계	100.0 (79)	100.0 (51)	100.0 (74)	100.0 (100)	100.0 (307)

유형별 어린이집 현원 분포를 살펴보면,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100%가 20인 이하이었다.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49인 이하인 소규모 어린이집이 48.6%였으며, 50인 이상의 중규모 및 대규모 어린이집이 51.4%이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77인 이상의 대규모인 경우(46.9%)가 과반이상이었으며, 다음으로 50~76인 중규모가 26.6%, 49인 이하의 소규모가 26.5%이었다. 법인어린이집의 경우 50인~76인의 중규모가 46.3%로 가장 많고, 77인 이상의 대규모가 29.6%, 20~49인 이하의 중소규모가 24.1%이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조사대상 어린이집 중 국공립과 법인은 상대적으로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규모가 큰 편이었다.

다. 반 현황

다음으로 반 현황을 살펴보았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대상연령대가 0-2세 영아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어린이집과 다른 구성을 보인다. 이에 따라 아동의 연령별 분포의 특성에 따른 반 현황의 경우, 가정어린이집과 일반어린이집의 차이가 클 것이라 보고 가정어린이집의 반 현황과 가정어린이집을 제외한 국공립, 법인, 민간 어린이집 전체의 반 현황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가정어린이집의 단일 연령반 구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III-1-5>와 같다. 분석 결과 만 0세반의 경우 2학급을 운영하는 시설이 42.0%로 가장 많고, 1학급으로 운영하는 시설이 38.0%이었다. 0세반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는 13.0%이었다. 만 1세반의 경우 1학급으로만 운영하는 경우가 53.0%로 가장 높고, 2학급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33.0%이었다. 아예 1세반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는 10%이었다. 만 2세반의 경우 1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65%이었으며, 27%가 2세반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았고, 8%는 2학급을 운영하고 있었다.

〈표 III-1-5〉 단일연령 반 운영현황(가정어린이집)

단위: %(개소)

	반없음	1개	2개	3개	4개	5개이상	계
0세반	13.0(13)	38.0(38)	42.0(42)	5.0(5)	0.0(0)	2.0(2)	100.0(100)
1세반	10.0(10)	53.0(53)	33.0(33)	4.0(4)	0.0(0)	0.0(0)	100.0(100)
2세반	27.0(27)	65.0(65)	8.0 (8)	0.0(0)	0.0(0)	0.0(0)	100.0(100)

가정어린이집을 제외한 일반어린이집의 단일연령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표 III-1-6>과 같다. 0세반의 경우 전체의 66.2%가 운영하지 않았으며, 18.4%가 1개반을, 11.1%가 2개반을 운영하고 있었다. 0세 영아는 아직 부모의 손길을 많이 요구하기에 아무래도 영아 전담의 가정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어린이집 운영에서 단일연령으로 구성하기 힘든 특성이 여기에서도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1세반의 경우 전체의 34.3%가 1개반을 운영하였으며 32.9%가 2개반을 운영하여 1~2개반을 운영하는 경우가 전체의 67.2%를 차지하였다. 2세반의 경우에는 단일연령 2개반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전체 어린이집의 48.8%이었고, 1개반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24.2%, 3개반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12.1%를 차지하였다. 3세반은 1개반을 운영하는 경우가 57.0%이었고, 단일연령반으로 편성하지 않는 경우도 20.3%로 높았으며, 2개반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17.4% 이었다. 반 편성에서 다른 연령대보다 만 3세를 단일연령반으로 구성하는 비율이 낮은 이유는 만 0-2세 영아기 때와 달리 만 3세부터는 아동이 활발한 상호작용을 보이며 교사들이 다루기 어려워지기 때문인 것과 관련이 있다. 4세반과 5세반의 경우 단일연령반으로 운영하지 않는 어린이집이 각각 48.8%, 49.8%로 가장 많았고, 1학급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각각 36.7%, 39.1%로 많고, 2학급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각각 13.0%, 10.6% 순이었다.

〈표 III-1-6〉 단일연령 반 운영현황(가정어린이집 제외)

단위: %(개소)

	반없음	1개	2개	3개	4개	5개이상	계
0세반	66.2(137)	18.4 (38)	11.1 (23)	2.4 (5)	1.0(2)	1.0(2)	100.0(207)
1세반	16.9 (35)	34.3 (71)	32.9 (68)	13.0(27)	1.9(4)	1.0(2)	100.0(207)
2세반	9.7 (20)	24.2 (50)	48.8(101)	12.1(25)	4.3(9)	1.0(2)	100.0(207)
3세반	20.3 (42)	57.0(118)	17.4 (36)	3.4 (7)	1.4(3)	0.5(1)	100.0(207)
4세반	48.8(101)	36.7 (76)	13.0 (27)	0.5 (1)	1.0(2)	0.0(0)	100.0(207)
5세반	49.8(103)	39.1 (81)	10.6 (22)	0.0 (0)	0.5(1)	0.0(0)	100.0(207)

어린이집의 특성 중 하나는 유치원과 달리 혼합연령반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먼저 가정어린이집의 혼합연령반 구성을 살펴보면, 20인 이하 소규모의 특성을 보이는 가정어린이집에서는 혼합연령 반 구성보다 단일연령 반 구성을 선호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0-1세 혼합반을 1개 이상 운영하는 경우가 28%였으며, 1-2세 혼합반을 1개 이상 운영하는 경우도 25%를 차지하였다. 2-3세 반이나 3~4세반이 운영되는 비율이 각각 2%, 1%로 낮은 이유는 영아 전담의 가정어린이집 특성상 대부분의 아동이 0-2세 영아로, 3세 이상 아동을 돌보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혼합연령반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해당 3-4세 아동은 0-2세 동생을 따라온 형제일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표 III-1-7〉 혼합연령 반 운영현황(가정어린이집)

단위: %(개소)

	반없음	1개	2개	계
0-1세반	72.0 (72)	24.0 (24)	4.0 (4)	100.0 (100)
1-2세반	75.0 (75)	20.0 (20)	5.0 (5)	100.0 (100)
2-3세반	98.0 (98)	2.0 (2)	0.0 (0)	100.0 (100)
3-4세반	99.0 (99)	1.0 (1)	0.0 (0)	100.0 (100)

가정어린이집을 제외한 일반어린이집에서의 혼합연령 반 구성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동일연령대 반에서 혼합연령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1개반을 운영하는 경우도 3~15%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연령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0-1세반을 1개 이상 운영하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9.7%이었으며, 1-2세반을 1개 이상 운영하는 경우가 15.0%, 2-3세반을 1개 이상 운영하는 경우가 4.4%, 3-4세반을 1개 이상 운영하는 경우가 18.8%, 4-5세반을 1개 이상 운영하는 경우가 14.0%로, 혼합연령반을 편성하는 경우 1-2세 영아반을 운영하거나 3-4세 유아반 또는 4-5세 유아반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 III-1-8〉 혼합연령 반 운영현황(가정어린이집 제외)

단위: %(개소)

	반없음	1개	2개	3개	계
0-1세반	90.3 (187)	7.7 (16)	1.0 (2)	1.0 (2)	100.0 (207)
1-2세반	85.0 (176)	13.0 (27)	1.0 (2)	1.0 (2)	100.0 (207)
2-3세반	95.7 (198)	3.4 (7)	0.0 (0)	1.0 (2)	100.0 (207)
3-4세반	81.2 (168)	14.5 (30)	4.3 (9)	0.0 (0)	100.0 (207)
4-5세반	86.0 (178)	14.0 (29)	0.0 (0)	0.0 (0)	100.0 (207)

라. 종사자 현황

조사대상 어린이집 교사 수를 살펴본 결과는 <표 III-1-9>와 같다. 5명 이상~10명 미만(53.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5명 미만(28.3%), 10명 이상~15명 미만(16.0%)의 순이었다.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교사 수를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53.2%가 5명 이상~ 10명 미만의 보육교사를 채용하고 있었으며, 10명 이상~15명 미만인 경우도 34.2%, 15명 이상인 경우도 6.3%로, 시설당 보육교사 수가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 법인 어린이집의 경우도 고용한 보육교사 수의 급간별 분포가 국공립어린이집과 비슷하나 보육교사가 15명 이상으로 많은 경우는 없었다. 보육교사가 5명 이상~10명 미만인 경우가 62.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10명 이상~15명 미만인 경우가 27.8%로, 전체의 90.7%가 5명 이상~15명 미만의 보육교사를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사가 5명 이상~10명 미만인 경우가 63.5%로 가장 많은 것은 국공립 및 법인어린이집과 비슷하였으나 보육교사가 5명 미만인 경우도 22.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전반적으로 교사 인건비를 보조받는 국공립어린이집 및 법인어린이집에 비해 민간어린이집 및 가정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수가 적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아동 정원 20명 이하의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전체의 60%가 보육교사 5명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이었으나, 5명 이상인 경우도 40%에 이르렀다.

<표 III-1-9> 어린이집 유형별 교사 수 현황

단위: %(개소)

	5명 미만	5명이상 ~10명미만	10명이상 ~15명미만	15명 이상	계
전체	28.3 (87)	53.1 (163)	16.0 (49)	2.6 (8)	100.0 (307)
국공립	6.3 (5)	53.2 (42)	34.2 (27)	6.3 (5)	100.0 (79)
법인	9.3 (5)	63.0 (34)	27.8 (15)	0.0 (0)	100.0 (54)
민간	23.0 (17)	63.5 (47)	9.5 (7)	4.1 (3)	100.0 (74)
가정	60.0 (60)	40.0 (40)	-	-	100.0 (100)
$X^2(df)$					110.18(9)***

*p<.05, **p<.01, ***p<.001

정규반 보육교사 외 어린이집 시간연장교사 및 보조교사, 기타 교직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표 III-1-10>과 같다. 시간연장형 보육교사를 채용한 어린이

집은 전체의 31.3%로, 1명을 고용한 경우가 23.1%로 가장 많았고, 2명을 고용한 경우가 4.6%, 3명 이상 고용한 경우도 3.6%였다. 보조교사의 경우 전체의 35.8%가 1명 이상 고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연장교사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68.7%)나 보조교사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64.2%)가 과반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기본 10시간 이상의 어린이집 운영시 기본 8시간 근로시간이 요구되는 보육교사에게 장시간 근로의 부담이 가중되기 쉬운 구조임을 볼 수 있다.

〈표 III-1-10〉 기타 어린이집 종사자 수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전체		100.0	(307)	전체		100.0	(307)
보조 교사	없음	64.2	(197)	시간 연장형 교사	없음	68.7	(211)
	1명	32.9	(101)		1명	23.1	(71)
	2명	2.0	(6)		2명	4.6	(14)
	3명 이상	1.0	(3)		3명	2.0	(6)
운전사	없음	72.0	(221)	관리인 및 사무원	4명 이상	1.6	(5)
	1명	21.8	(67)		없음	89.2	(274)
	2명	4.6	(14)		1명	9.8	(30)
	3명	1.6	(5)		2명	1.0	(3)
취사원	없음	22.5	(69)	영양사	없음	89.3	(274)
	1명	57.7	(177)		1명	10.7	(33)
	2명	19.2	(59)	간호사 ·조무사	없음	91.5	(281)
	3명	0.7	(2)		1명	8.5	(26)

어린이집 직원 현황의 경우 취사원은 고용하지 않은 어린이집이 22.5%, 1명 이상 고용한 경우가 77.5%이었다. 1명을 고용한 경우가 57.7%로 가장 많고, 2명 고용한 경우가 19.2%, 3명을 고용한 경우도 0.7% 있었다. 운전사의 경우 고용하지 않은 어린이집이 72.0%, 1명 이상 고용한 경우가 28.0%이었다. 전체의 21.8%가 운전사 1명을 고용하고 있었고, 전체의 4.6%가 2명, 전체의 1.6%가 3명을 고용하고 있었다. 간호사 및 조무사는 고용하지 않은 경우가 91.5%로 대부분이었으며,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도 89.3%로 대다수의 어린이집에서 영양사 및 간호사를 별도로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에서 안전사고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경우 관리할 인력이 원장 및 보육교사 외에는 부재하는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사의 경우에도 별도의 영양사를 고용하기보다 원장 및 취사원이 영유아 식단 구성을 담당하는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인 및 사무원을 채용한 어린이집은 10.8%로, 대다수의 어린이집

(89.2%)은 별도의 사무원 및 관리인을 정규인력으로 편성하지 않았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40인 이상 어린이집의 경우 취사원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어린이집 규모별 채용인원 또한 달라져 40~80인 어린이집의 경우 1명, 81~160인 어린이집의 경우 2명, 161~240인 어린이집의 경우 3명, 241~320인 어린이집의 경우 4명, 320인 초과 어린이집의 경우 5명을 채용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40인 이상 어린이집 취사원 채용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표 III-1-11>과 같다. 40인 이상 80인 미만 어린이집 중에서 1명 이상의 취사원을 채용한 어린이집 비율은 92%(80개소)였으며, 1명인 경우가 83.9%(73개소)로 가장 높고, 2명인 경우가 8.0%(7개소), 0명인 경우가 8.0%(7개소) 순이었다. 80인 이상 어린이집 중에서 취사원이 2명 이상인 어린이집은 69.4%(52개소)이었으며, 2명인 경우가 66.7%(50개소)로 가장 높고, 1명인 경우가 24.0%(18개소)이었다.

<표 III-1-11> 40인 이상 어린이집 취사원 채용 현황

구분	단위: %(개소)				
	없음	1명	2명	3명	계
40인 이상 ~80인 미만	8.0 (7)	83.9 (73)	8.0 (7)	0.0 (0)	100.0 (87)
80인 이상	6.7 (5)	24.0 (18)	66.7 (50)	2.7 (2)	100.0 (75)

어린이집 유형별 기타 보육종사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사 외에 보육활동을 보조할 수 있는 보조 인력을 정규인력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다른 유형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 국공립어린이집 중에서 시간연장교사를 고용한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중은 54.4%이었고, 보조교사를 채용한 국공립어린이집은 57.0%, 취사원을 채용한 비중은 94.9%이었다. 주로 도시지역이 아닌 농어촌 지역에 많이 분포하는 법인어린이집의 경우 시간연장교사 채용비율(16.7%) 및 보조교사 채용비율(22.2%)은 낮은 반면에 취사원 채용비율(92.6%) 및 운전사 채용비율(64.8%), 관리인 및 사무원 채용비율(24.1%)은 높게 나타났으며, 이것은 다른 유형에서의 해당인력 채용비율과 비교해보아도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보조교사를 채용하는 비중은 적은 반면(민간어린이집 중 시간연장교사 채용비율은 23.0%, 보조교사는 25.7%), 운전사를 채용하는 비중(민간어린이집 중 운전사 채용비율은 54.1%)은 국공립어린이집에서의 운전사 채용비율(10.1%) 및 가정어린이집에서의 운전사 채용비율(3.0%)보다 훨씬 높았다. 가정어린이집

의 경우 원장이 반드시 보육교사를 겸직해야 하며 24시간 눈을 떼기 힘든 영아를 보육해야 하는 특성상, 보조교사 채용비율(34.0%) 및 시간연장교사 채용비율(27.0%)이 높았다. 가정어린이집은 현원 40인 미만의 규모로 법적으로 취사원을 의무적으로 채용하지 않아도 되에도 불구하고 전체 가정어린이집 중 51.0%는 별도의 취사원을 채용하고 있었다.

〈표 III-1-12〉 어린이집 유형별 기타 보육종사자 현황(중복응답)

단위: %(개소)

구분	시간연장 교사	보조 교사	취사원	영양사	운전사	관리인 ·사무원	간호사 ·조무사
국공립	54.4 (43)	57.0 (45)	94.9 (75)	11.4 (9)	10.1 (8)	11.4 (9)	11.4 (9)
법인	16.7 (9)	22.2 (12)	92.6 (50)	14.8 (8)	64.8 (35)	24.1 (13)	7.4 (4)
민간	23.0 (17)	25.7 (19)	83.8 (62)	18.9 (14)	54.1 (40)	14.9 (11)	13.5 (10)
가정	27.0 (27)	34.0 (34)	51.0 (51)	2.0 (2)	3.0 (3)	0.0 (0)	3.0 (3)

주: 비율(%)의 경우 해당유형 전체 시설 수 대비 종사자 채용 시설 비율임.

마. 어린이집 건물형태

조사대상 어린이집의 건물형태를 알아본 결과는 <표 III-1-13>과 같다. 단독건물(46.9%)에 위치한 경우가 가장 많고, 아파트(28.7%)에 위치한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공동주택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8.5%, 공공시설 복합건물에 위치한 경우도 6.2%이었다.

〈표 III-1-13〉 어린이집 건물형태

단위: %(개소)

구분	단독	상가	주택	아파트	종교 시설	공공시설 복합건물	공동주택 어린이집	기타	합계
전체	46.9 (144)	3.3 (10)	2.9 (9)	28.7 (88)	2.6 (8)	6.2 (19)	8.5 (26)	1.0 (3)	100.0 (307)
국공립	68.4 (54)	0.0 (0)	1.3 (1)	5.1 (4)	2.5 (2)	13.9 (11)	7.6 (6)	1.3 (1)	100.0 (79)
법인	75.9 (41)	0.0 (0)	0.0 (0)	0.0 (0)	7.4 (4)	13.0 (7)	3.7 (2)	0.0 (0)	100.0 (54)
민간	58.1 (43)	10.8 (8)	4.1 (3)	1.4 (1)	2.7 (2)	1.4 (1)	20.3 (15)	1.4 (1)	100.0 (74)
가정	6.0 (6)	2.0 (2)	5.0 (5)	83.0 (83)	0.0 (0)	0.0 (0)	3.0 (3)	1.0 (1)	100.0 (100)

어린이집 유형별 건물형태를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단독건물에 위치한 경우가 전체 국공립어린이집 중 68.4%로 가장 많았으며, 공공시설 복합건물에 위치한 경우가 13.9%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법인어린이집의 경우 단독건물을 사용하는 비율이 전체 법인어린이집의 75.9%에 이르렀으며, 공공시설 복합건물에 위치한 경우가 13.0%이었다.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단독건물에 위치한 경우가 58.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공동주택 어린이집인 경우가 20.3%로 다른 유형에서보다 많았다. 또한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상가건물을 사용하는 경우(10.8%)가 다른 유형에서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정어린이집은 아파트에 위치한 경우가 83.0%로 가장 높게 나타나 여타 민간, 법인, 국공립어린이집과 확연히 다른 특징을 보여주었다.

바. 어린이집 임대여부

<표 III-1-14>와 같이 어린이집 임대여부를 살펴본 결과, 원장이 자가로 소유한 건물인 경우가 41.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용자금을 얻어 마련한 자가인 경우가 19.5%로, 어린이집이 원장 자신의 소유인 경우가 60.9%를 차지하였다. 임대는 39.1%로 나타났는데, 이 중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무상으로 대여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공간 임대비용이 추가로 들지 않은 경우가 17.3%이었다. 임대비용을 지불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비율은 20.2%이었는데, 월세로 임대한 경우가 14.0%, 전월세인 경우가 4.9%, 전세로 임대한 경우가 1.3%이었다.

<표 III-1-14> 어린이집 임대현황

단위: %(개소)

	자가		전세	전월세	임대			계
	소유	용자			월세	무상 ¹⁾	기타	
전체	41.4	19.5	1.3	4.9	14.0	17.3	1.6	100.0
	(127)	(60)	(4)	(15)	(43)	(53)	(5)	(307)

주: 1) 지자체 지원 무상제공

월세나 전월세로 건물을 임대하여 매월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 월 평균 임대금액은 <표 III-1-15>와 같다. 월세를 지불하는 어린이집의 월 평균 임대료는 1,040,862원으로, 50만원~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41.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00~150만원 미만인 경우도 27.6%로 많았다.

〈표 III-1-15〉 어린이집 월 평균 임대료

단위: %(개소)

	50만원 미만	50만원 ~100만원미만	100만원 ~150만원미만	150만원 ~200만원미만	200만원 이상	계
비율	12.1	41.4	27.6	8.6	10.3	100.0
빈도	(7)	(24)	(16)	(5)	(6)	(58)

건물 소유여부에 따라 어린이집 유형별 임대여부를 살펴보면 <표 III-1-16>과 같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37.2%가 자가로, 다른 유형에 비해 자가 비율이 가장 낮았다. 임대인 경우 나머지 62.8%에서 2.5%를 제외한 60.3%는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로 나타나,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시설비에 대한 부담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인어린이집의 경우 자가가 81.1%로, 나머지는 월세가 1.9%, 지자체 무상지원이 9.4%, 7.5%이었다. 민간어린이집은 자가인 경우(52.7%)와 임대(47.3%)인 경우가 비슷한 비중을 보이고 있었다. 민간어린이집의 52.7%는 자가로, 용자금이 없는 경우가 28.4%, 용자금이 있는 경우가 24.3%이었다. 민간어린이집 중 임대인 경우(47.3%) 월세가 37.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전월세가 6.8%, 전세가 2.7%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자가인 비율이 76.0%로 임대인 경우(24.0%)보다 3배 가까이 높았으며, 전체 가정어린이집 중 어린이집 건물을 월세로 사용하는 경우가 13.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월세 8.0%, 전세 2.0%, 기타 1.0% 순이었다.

〈표 III-1-16〉 어린이집 유형별 임대여부

단위: %(개소)

구분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전체	100.0	(78)	100.0	(53)	100.0	(74)	100.0	(100)
자가	37.2	(29)	81.1	(43)	52.7	(39)	76.0	(76)
임대	62.8	(49)	18.9	(10)	47.3	(35)	24.0	(24)
$X^2(df)$	39.34***							

*p<.05, **p<.01, ***p<.001

유형별 어린이집 임대료 지불 수준은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월 평균 1,151,471원(응답한 34개소 기준)이었으며,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월 평균 900,870원(응답한 23개소 기준)이었다. 국공립의 경우 자가가거나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지원받은 비율이 많아 응답한 사례가 없었으며, 법인의 경우에도 월세인 경우가 드물고(1.9%) 그조차 임대료 문항에는 1곳만 응답하여 대표성을 부여하기 어려웠다.

사. 어린이집 실외놀이터 유무

조사대상 어린이집의 실외놀이터 유무를 살펴보면 <표 III-1-17>과 같다. 전체 조사대상 어린이집 중 인근 놀이터를 사용하는 비율이 44.3%, 자체 놀이터를 갖고 있는 비율이 42.0%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가 없는 경우는 13.7%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법인어린이집의 경우 81.5%가 자체 놀이터를 소유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자체놀이터 소유비율(58.2%)보다도 높게 나타났고, 민간어린이집의 자체놀이터 소유율도 45.9%로 높은 편이었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다른 유형과 달리 아파트에 위치한 경우가 많은 특성상 84.0%가 자체놀이터가 없이 인근의 놀이터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0-2세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가정어린이집에서는 놀이터가 아닌 실내 환경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 아동을 돌보는 일반어린이집에서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본 조사에서 놀이터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옥상놀이터를 구비한 경우도 포함한 것이다. 옥상놀이터의 경우 일반적인 건물 건축시 포함되는 보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적절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한 시설로 보고, 자체놀이터에 포함하였다. 놀이터를 전혀 이용할 수 없는 비율은 법인어린이집의 경우 5.6%로 가장 낮고, 가정어린이집의 11.0%, 국공립어린이집의 13.9%, 민간어린이집의 23.0% 순으로 나타나, 민간어린이집의 놀이터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III-1-17> 어린이집 유형별 실외놀이터 유무

단위: %(개소)

구분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계
전체	100.0	(79)	100.0	(54)	100.0	(74)	100.0	(100)	100.0 (307)
자체 놀이터 있음	58.2	(46)	81.5	(44)	45.9	(34)	5.0	(5)	42.0 (129)
인근 놀이터 사용	27.8	(22)	13.0	(7)	31.1	(23)	84.0	(84)	44.3 (136)
없음	13.9	(11)	5.6	(3)	23.0	(17)	11.0	(11)	13.7 (42)

아. 어린이집 운영시간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살펴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는 경우가 전체의 63.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는 경우가 전체의 35.8%를 차지하였다. 그에 따라 조사대상 어린이집의 99.6%가 평일에 운영하고 일요일에 휴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18 참조).

〈표 III-1-18〉 주간 어린이집 운영요일

운영요일	월요일-금요일	월요일-토요일	월요일-일요일	단위: %(개소) 계
전체	35.8 (110)	63.8 (196)	0.3 (1)	100.0 (307)

<표 III-1-19>는 유형별 어린이집의 평일 운영시간에 관한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평일 운영 시작시간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대체로 일관적인 경향을 보여 7시 이후~7시 30분에 운영을 시작하는 경우가 97.5%이었다. 법인어린이집의 경우 7시 이후~7시 30분 사이에 운영을 시작하는 비율이 64.8%이었으며, 7시 30분~8시인 경우도 29.6%로 많았다.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7시 이후~7시 30분에 운영을 시작하는 경우(44.6%)와 7시 30분 이후~8시 사이에 운영을 시작하는 경우(45.9%)가 서로 비슷한 비중이었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7시 이후~7시 30분 사이에 운영을 시작하는 경우가 48.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7시 30분 이후~8시 사이인 경우가 36.0%이었다. 다른 유형에서와 달리 운영 시작시간이 8시 이후인 경우도 11.0%, 7시 이전인 경우도 5.0%로 나타났다. 운영 시작시간대의 분포가 가정어린이집에서 퍼져있는 이유는 가정어린이집의 건물유형이 대부분 아파트임을 고려할 때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어린이집이라는 점과 등교지도에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쓰는 소규모 어린이집이라는 점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평일 운영 종료시간을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저녁 7시 이후~7시 30분 시간대에 종료하는 경우가 46.8%이었고, 다음으로 저녁 8시 이후~9시 30분 시간대에 종료하는 경우가 34.2% 순이었다. 오후 9시 30분 이후에 종료하는 경우도 12.7%이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종료시간이 맞벌이 부부의 퇴근 후 귀가 시간에 맞춰 상당히 늦은 것을 볼 수 있다. 법인어린이집의 경우 오후 7시 이후~7시 30분 시간대에 종료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44.4%), 다음으로 오후 6시 30분 이후~7시의 시간대에 종료하는 경우가 많았다(24.1%).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의 경우에도 7시 이후~7시 30분 시간대에 운영을 종료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민간 33.8%, 가정 35.0%). 그러나 2순위 운영 종료시간대가 특정화 되어있는 국공립(오후 8시 이후~)이나 법인(오후 6:30~7:00)과 달리 운영 종료시간이 여러 시간대에 걸쳐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하였다. 그에 따라 다른 유형에서는 드물게 나타나는데 비해 민간어린이집은 저녁 7시 이전에 종료하는 비율이 41.9%, 오후 8시에 운영을 종료하는 비율이 21.7%이었으며, 가정어린이집

은 저녁 7시 이전에 종료하는 비율이 36.0%, 저녁 8시 이후에 종료하는 비율이 25.0%이었다. 어린이집 유형과 상관없이 저녁식사 시간대인 7시 30분 이후~8시에 운영을 종료하는 비율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평일 총 운영시간을 살펴보면, 전체 어린이집의 60.6%가 10시간 초과~12시간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 운영시간이 상당히 긴 편임을 볼 수 있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운영시간이 10시간 초과~12시간인 경우가 48.1%, 12시간 초과~14시간인 경우가 34.2%, 14시간 초과인 경우도 17.7%로, 매우 길었다. 법인어린이집의 경우 운영시간이 10시간 초과~12시간인 경우가 75.9%, 12시간 초과인 경우가 16.7%이었다. 민간어린이집은 운영시간이 10시간 초과~12시간인 경우가 68.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2시간 초과~14시간인 경우가 13.5%, 14시간 초과인 경우가 9.5%이었다. 가정어린이집에서도 운영시간이 10시간 초과~12시간인 경우가 56.0%로 가장 많고, 12시간 초과~14시간인 경우가 22.0%이었으며, 14시간 초과인 비율도 11.0%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제외하면 14시간 초과로 운영하는 비율은 높지 않아 법인,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10시간 이하로 보육하는 경우는 14시간 초과로 보육하는 경우와 비슷한 비중으로 나타났다.

〈표 III-1-19〉 평일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운영시간

단위: %(개소)

구분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계	
전체	100.0 (79)	100.0 (54)	100.0 (74)	100.0 (100)	100.0 (307)	
시작 시간	오전 07:00 이전	0.0 (0)	0.0 (0)	0.0 (0)	5.0 (5)	1.6 (5)
	오전 07:01~07:30	97.5 (77)	64.8 (35)	44.6 (33)	48.0 (48)	62.9 (193)
	오전 07:31~08:00	2.5 (2)	29.6 (16)	45.9 (34)	36.0 (36)	28.7 (88)
종료 시간	오전 08:01 이후	0.0 (0)	5.6 (3)	9.5 (7)	11.0 (11)	6.8 (21)
	오후 06:00 이전	1.3 (1)	9.3 (5)	4.1 (3)	8.0 (8)	5.5 (17)
	오후 06:01~06:30	1.3 (1)	5.6 (3)	13.5 (10)	9.0 (9)	7.5 (23)
	오후 06:31~07:00	2.5 (2)	24.1 (13)	24.3 (18)	19.0 (19)	16.9 (52)
	오후 07:01~07:30	46.8 (37)	44.4 (24)	33.8 (25)	35.0 (35)	39.4 (121)
	오후 07:31~08:00	1.3 (1)	0.0 (0)	2.7 (2)	4.0 (4)	2.3 (7)
	오후 08:01~09:30	34.2 (27)	9.3 (5)	14.9 (11)	12.0 (12)	17.9 (55)
	오후 09:31 이후	12.7 (10)	7.4 (4)	6.8 (5)	13.0 (13)	10.4 (32)
총 운영 시간	10시간이하	0.0 (0)	7.4 (4)	8.1 (6)	11.0 (11)	6.8 (21)
	10시간초과~12시간	48.1 (38)	75.9 (41)	68.9 (51)	56.0 (56)	60.6 (186)
	12시간초과~14시간	34.2 (27)	9.3 (5)	13.5 (10)	22.0 (22)	20.8 (64)
	14시간초과	17.7 (14)	7.4 (4)	9.5 (7)	11.0 (11)	11.7 (36)

다음으로 토요일 어린이집의 보육운영시간을 살펴보면, 전체 어린이집 중 운영 시작시간은 7시 이후~8시 시간대인 경우(54.5%)가 가장 많았고 운영 종료시간은 15시 이후~16시 시간대인 경우(43.5%)가 가장 많았다. 총 운영시간은 7시간 초과~8시간인 경우가 41.4%로 가장 많았다.

유형별 토요일 보육 시작시간을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82.1%)과 법인어린이집(55.3%), 가정어린이집(35.9%)의 경우 7시 이후~7시 30분 시간대에, 민간어린이집(40.4%)은 7시 30분~8시 시간대에 운영을 시작하는 비율이 높았다. 보육 종료시간을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71.6%)과 가정어린이집(35.9%)의 경우 주로 오후 3시 이후~4시 사이였으나, 법인어린이집은 오후 1시 이전에 종료하는 비율(28.9%)이 가장 높고, 민간어린이집은 오후 1시 이후~2시에 종료하는 비율(31.9%)이 가장 높았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종료 시간은 토요일에도 오후 3시 이후인 비율이 86.5%에 이르는 반면, 법인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은 이른 시간부터 늦은 시간까지 고르게 분포하였으며, 가정어린이집은 오후 3시 이전이 56.4%로 가장 높았다. 토요일 총 운영시간은 7시간 초과~8시간인 경우가 41.4%로, 토요일에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운영시간이 일반근로자의 평일 근로시간과 비슷한 수준임을 볼 수 있다.

〈표 III-1-20〉 토요일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운영시간

단위: %(개소)

구분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계
전체		100.0 (67)	100.0 (38)	100.0 (47)	100.0 (39)	100.0 (191)
시작 시간	오전 07:00 이전	0.0 (0)	0.0 (0)	2.1 (1)	2.6 (1)	1.0 (2)
	오전 07:01~07:30	82.1 (55)	55.3 (21)	29.8 (14)	35.9 (14)	54.5 (104)
	오전 07:31~08:00	11.9 (8)	34.2 (13)	40.4 (19)	23.1 (9)	25.7 (49)
	오전 08:01~08:30	3.0 (2)	2.6 (1)	17.0 (8)	7.7 (3)	7.3 (14)
	오전 08:31 이후	3.0 (2)	7.9 (3)	10.6 (5)	30.8 (12)	11.5 (22)
종료 시간	오후 01:00 이전	3.0 (2)	28.9 (11)	14.9 (7)	15.4 (6)	13.6 (26)
	오후 01:01~02:00	4.5 (3)	15.8 (6)	31.9 (15)	25.6 (10)	17.8 (34)
	오후 02:01~03:00	6.0 (4)	15.8 (6)	17.0 (8)	15.4 (6)	12.6 (24)
	오후 03:01~04:00	71.6 (48)	26.3 (10)	23.4 (11)	35.9 (14)	43.5 (83)
	오후 04:01 이후	14.9 (10)	13.2 (5)	12.8 (6)	7.7 (3)	12.6 (24)
총 운영 시간	~5시간이하	3.0 (2)	23.7 (9)	19.1 (9)	25.6 (10)	15.7 (30)
	5시간초과~6시간	4.5 (3)	21.1 (8)	25.5 (12)	25.6 (10)	17.3 (33)
	6시간초과~7시간	7.5 (5)	10.5 (4)	17.0 (8)	5.1 (2)	9.9 (19)
	7시간초과~8시간	64.2 (43)	31.6 (12)	21.3 (10)	35.9 (14)	41.4 (79)
	8시간초과	20.9 (14)	13.2 (5)	17.0 (8)	7.7 (3)	15.7 (30)

자. 차량운행

<표 III-1-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린이집 차량운행여부를 조사한 결과, 차량을 운행하는 어린이집(54.7%)이 운행하지 않는 어린이집(45.3%)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을 운행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자체차량을 소유하며 운전기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가 27.4%로 가장 많고, 자체차량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별도 운전기사는 채용하지 않은 경우가 22.5%로 많았다. 이 경우 원장이나 보육교사, 다른 교직원이 운전기사를 겸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1-21> 어린이집 유형별 차량운영 현황

단위: %(개소)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계	X ² (df)
전체	100.0 (79)	100.0 (54)	100.0 (74)	100.0 (100)	100.0 (307)	
자체차량+운전기사 채용	7.6 (6)	63.0 (34)	54.1 (40)	4.0 (4)	27.4 (84)	199.11*** (9)
운행 자체차량+운전기사 미채용	0.0 (0)	11.1 (6)	27.0 (20)	43.0 (43)	22.5 (69)	
외부차량 사용	2.5 (2)	7.4 (4)	12.2 (9)	0.0 (0)	4.9 (15)	
차량 미운행	89.9 (71)	18.5 (10)	6.8 (5)	53.0 (53)	45.3 (139)	

*p<.05, **p<.01, ***p<.001

어린이집 유형별 차량운행 현황을 분석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은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경우(89.9%)가 많으나 법인 및 민간어린이집은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경우가 드물게 나타났다(법인 18.5%, 민간 6.8%). 가정어린이집은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54.7%)와 운행하지 않는 경우(45.3%)가 비슷한 비중이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운영 종료시간이 다른 유형에 비해 늦은 반면 차량운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동이 어린이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다른 유형에 비해 긴 편이다. 서울 및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위치한 비중이 높은 경우 차량운행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상대적으로 아동의 거주지와 어린이집의 거리가 도시지역보다 먼 법인어린이집에서 차량운행 비율이 가장 높은 것도 그 때문이다.

차량운행을 하는 경우 차량운행 방식 역시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별도의 운전기사 채용 없이 자체차량을 운영하는 비율(43.0%)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법인어린이집(63.0%), 민간어

린이집(54.1%)의 경우에는 자체차량을 사용하고 운전기사를 별도로 채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차량운행을 하는 어린이집에서 차량비를 별도로 수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해 차량비를 별도로 받고 있다고 응답한 어린이집은 46.4%(78개소, 전체 조사대상 어린이집의 25.4%)로, 차량비를 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어린이집이 53.6%(90개소, 전체 조사대상 어린이집의 29.3%)이었다. 차량비를 수납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원아 1인당 수납하는 차량비는 월 평균 19,230원이었으며, 최소금액 5,000원에서 최대금액 40,000원까지 분포하였다.

차. 평가인증

조사대상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현황을 알아본 결과는 <표 III-1-22>와 같다. 재인증을 획득한 어린이집이 58.6%로 가장 많고, 신규인증을 획득한 어린이집이 33.6%로, 전체 조사대상 어린이집의 91.1%가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인증에 실패한 어린이집은 5.2%로, 신규인증에 실패한 경우가 2.3%, 재인증에 실패한 경우가 2.9%이었다. 평가인증 경험이 전혀 없는 어린이집은 3.0%이었다. 이를 통해 볼 때,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 참여한 어린이집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평가인증 현황을 살펴보면, 재인증을 포함하여 국공립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가 100.0%, 법인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가 94.4%, 민간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가 79.7%, 가정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가 94%로 대다수가 양호한 질을 유지하고 있었다.

<표 III-1-22> 어린이집 평가인증 상태

단위: %(개소)

	인증획득		인증실패		인증경험 없음	계
	신규인증	재인증	신규인증	재인증		
전체	33.6(103)	58.6(180)	2.3 (7)	2.9 (9)	2.6 (8)	100.0(307)
국공립	34.2 (27)	65.8 (52)	0.0 (0)	0.0 (0)	0.0 (0)	100.0 (79)
법인	18.5 (10)	75.9 (41)	1.9 (1)	3.7 (2)	0.0 (0)	100.0 (54)
민간	33.8 (25)	45.9 (34)	6.8 (5)	6.8 (5)	6.8 (5)	100.0 (74)
가정	41.0 (41)	53.0 (53)	1.0 (1)	2.0 (2)	3.0 (3)	100.0(100)

2. 어린이집 운영비 현황

가. 연령별 필요경비 수납 현황

어린이집 유형 및 영유아 연령별로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비교한 결과는 <표 III-2-1>과 같다. 월 필요경비를 수납한다고 응답한 어린이집의 아동 연령별 평균 월 필요경비 수납액은 만 0세아의 경우 3,966원, 만 1세아의 경우 13,705원, 만 2세아의 경우 22,811원, 만 3세아는 28,967원, 만 4세아는 31,463원, 만 5세아는 31,926원이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만 0세아부터 만 5세아에 이르기까지 연령이 증가할수록 필요경비 수납액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만 0세아에서 만 2세아까지 개월별 발달속도가 빠른 영아기에는 1년 사이에 필요경비 증가액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어린이집 연령별 필요경비 수납액을 살펴보면, 만 0세아부터 만 5세아에 이르기까지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수납하는 필요경비가 다른 유형에서 수납하는 금액보다 높았다. 만 0세아의 경우 국공립 7,544원, 법인 4,900원, 가정 3,329원, 민간 1,038원 순이었으며, 만 1세아의 경우 국공립 20,041원, 가정 13,606원, 법인 11,047원, 민간 7,800원 순이었다. 만 2세아의 경우 국공립 28,560원, 민간 25,913원, 법인 19,418원, 가정 17,427원 순이었으며, 만 3세아의 경우 국공립 33,921원, 민간 30,981원, 법인 22,286원, 가정 2,857원이었다. 만 4세아의 경우 국공립 34,567원, 민간 32,463원, 법인 25,835원 순이었으며, 만 5세아의 경우 국공립 34,979원, 민간 33,091원, 법인 26,271원이었다.

<표 III-2-1> 어린이집 유형별 연령별 월 필요경비 수납 현황

단위: 원(개소)

구분	만 0세아	만 1세아	만 2세아	만 3세아	만 4세아	만 5세아
전체	3,966 (182)	13,705 (285)	22,811 (287)	28,967 (201)	31,463 (166)	31,926 (147)
국공립	7,544 (34)	20,041 (77) ^a	28,560 (79)	33,921 (76) ^a	34,567 (66)	34,979 (61)
법인	4,900 (26)	11,047 (51)	19,418 (53)	22,686 (52)	25,835 (46)	26,271 (42)
민간	1,038 (26)	7,800 (58) ^b	25,913 (66)	30,981 (66) ^a	32,463 (54)	33,091 (44)
가정	3,239 (96)	13,606 (99)	17,427 (89)	2,857 (7) ^b	-	-
F	2.302	3.576*	3.017*	3.061*	0.952	0.837

주: a, b는 Scheffe 사후검정 기준 a≠b.

*p<.05, **p<.01, ***p<.001

나. 연령별 특별활동비 수납 현황

어린이집 유형 및 영유아 연령별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을 비교한 결과는 <표 III-2-2>와 같다. 분석 결과, 만 0세아에서 만 5세아까지 영유아 연령이 증가할수록 특별활동비 금액 수준이 증가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만 0세아는 610원, 만 1세아는 6,228원, 만 2세아는 34,299원, 만 3세아는 43,202원, 만 4세아는 46,673원, 만 5세아는 47,259원이었다. 실내 거주시간이 많은 만 0세는 특별활동비를 수납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며 만 1세에서 만 2세 사이에 급증한 이후 만 3세, 4세, 5세간에는 증가폭이 5,000원 안팎으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특별활동비 수납현황을 비교해 보면, 2011년부터 만 2세아 미만 영아의 경우 특별활동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민간, 가정 어린이집 중 일부에서는 이들 영아를 대상으로 특별활동비를 수납하는 경향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가정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가 국공립어린이집보다 높았으며, 민간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가 국공립 및 법인어린이집보다 높았다.

<표 III-2-2> 어린이집 유형 및 연령별 특별활동비 수납현황

단위: 원(개소)

구분	만 0세아	만 1세아	만 2세아	만 3세아	만 4세아	만 5세아
전체	610 (182)	6,228 (285)	34,299 (287)	43,202 (200)	46,673 (166)	47,259 (147)
국공립	0 (34)	389 (77) ^a	20,330 (79) ^a	34,155 (74) ^a	36,580 (66) ^a	38,083 (61) ^a
법인	3,000 (26) ^a	3,549 (51)	29,953 (53) ^c	41,385 (52) ^c	46,043 (46) ^b	45,095 (42) ^c
민간	0 (26)	7,362 (58)	49,000 (66) ^{bd}	56,731 (67) ^{bde}	59,546 (54)	62,045 (44) ^{bd}
가정	344 (96) ^b	11,484 (99) ^b	38,385 (89) ^b	22,857 (7) ^f	-	-
F	3.447*	6.003***	12.199***	9.238***	9.494***	9.227***

주: a, b, c, d, e, f는 Scheffe 사후검정 기준 a≠b, c≠d, e≠f.

*p<.05, **p<.01, ***p<.001

다. 인건비 현황

1) 기본급여 및 근무시간

가) 원장 및 기타 직원

어린이집종사자 월 평균 급여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표 III-2-3>과 같다. 월 평균 급여는 원장 2,086,074원, 취사원 1,053,873원, 운전사 1,198,094원, 관리인

1,157,89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장, 취사원, 관리원 등 기타 교직원의 기본급여는 시설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원장, 취사원, 기타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원장 2,429,621원, 취사원 1,281,250원, 기타 1,150,924원) 및 법인어린이집(원장 2,564,695원, 취사원 1,334,223원, 기타 1,418,928원)에서 민간어린이집(원장 1,954,402원, 취사원 833,043원, 기타 836,346원)과 가정어린이집(원장 1,702,616원, 취사원 750,400원, 기타 786,667원)보다 급여수준이 높았다.

<표 III-2-3> 어린이집 직원 월 평균 기본급여

단위: 원(개소)

구분	원장		취사원		운전사		기타	
전체	2,086,074	(266)	1,053,873	(217)	1,198,094	(107)	1,157,890	(64)
국공립	2,429,621	(67)	1,281,250	(66)	1,291,649	(9)	1,150,924	(27)
법인	2,564,695	(44)	1,334,223	(45)	1,274,228	(39)	1,418,928	(21)
민간	1,954,402	(61)	833,043	(55)	1,153,148	(56)	836,346	(13)
가정	1,702,616	(94)	750,400	(51)	766,667	(3)	786,667	(3)

<표 III-2-4>와 같이 어린이집종사자 1일 평균 근무시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조사대상 중 원장은 10.1시간, 취사원은 8.1시간, 운전사는 7.1시간, 관리원 등 기타 교직원은 7.9시간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유형별 어린이집종사자 1일 평균 근무시간의 차이가 나는지 알아본 결과, 원장의 1일 평균 근무시간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가정어린이집(11.1시간)이 법인어린이집(10.0시간), 국공립어린이집(8.8시간)에 비해 더 긴 시간동안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4> 어린이집 직원 1일 평균 근무시간

단위: 시간(개소)

구분	원장		취사원		운전사		기타	
전체	10.1	(216)	8.1	(128)	7.1	(42)	7.9	(32)
국공립	8.8	(61)	8.0	(59)	7.0	(6)	7.8	(20)
법인	10.0	(35)	8.6	(34)	7.7	(17)	8.4	(10)
민간	10.2	(42)	6.1	(21)	6.7	(18)	8.0	(1)
가정	11.1	(78)	10.1	(14)	3.0	(1)	5.0	(1)

나) 전체 보육교사

조사대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전체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호봉, 월 평균

급여, 1일 근무시간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표 III-2-5>와 같다. 분석 결과, 전체 보육교사의 평균 호봉은 5.1호봉으로, 월 평균 급여는 1,443,677원이었으며, 1일 평균 근무시간은 9.9시간이었다. 전체 보육교사의 호봉, 월 평균 급여, 1일 근무시간에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호봉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및 법인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평균 호봉(국공립 5.5호봉, 법인 5.8호봉)이 민간어린이집 및 가정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평균 호봉(민간 2.7호봉, 가정 2.4호봉)보다 높았다.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월 평균 급여(1,588,342원) 및 법인어린이집 보육교사 월 평균 급여(1,611,136원) 또한 민간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월 평균 급여(1,229,530원) 및 가정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월 평균 급여(1,192,283원)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급여수준의 차이는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여부에 따른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1일 평균 근무시간은 법인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10.3시간으로 다른 유형의 보육교사(국공립 9.8시간, 민간 9.8시간, 가정 9.8시간)보다 긴 편이었다. 앞서 전반적인 운영 실태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이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에서보다 장시간이었음을 고려할 때, 법인어린이집에서 교사 1인당 1일 평균 근무시간이 가장 길게 나타난 결과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법인어린이집에서보다 시간연장교사 및 보조교사 등 교원을 보다 많이 확보하여 교대근무를 충분히 할 만한 인력구성이 되어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III-2-5> 전체 보육교사 호봉, 기본급여 및 일일근무시간

단위: 호봉(개소), 원(개소), 시간(개소)

구분	호봉		기본급여		일일근무시간	
전체	5.1	(967)	1,443,677	(1,978)	9.9	(1,971)
국공립	5.5	(513)	1,588,342	(747)	9.8	(745)
법인	5.8	(287)	1,611,136	(441)	10.3	(439)
민간	2.7	(91)	1,229,530	(448)	9.8	(445)
가정	2.4	(76)	1,192,283	(342)	9.8	(342)

다) 단일연령반 보육교사

단일연령 영아반 보육교사의 월 평균 급여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조사대상 어린이집의 만 0세반 교사 급여는 월 평균 1,394,584원, 만 1세반 교사 급여는 월 평균 1,423,428원, 만 2세반 교사 급여는 월 평균 1,441,204원으로, 대상아동

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육교사의 급여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영아 단일연령반 교사급여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면, 모든 연령에서 국공립어린이집 및 법인어린이집의 교사 급여수준이 민간어린이집 및 가정어린이집에서의 교사 급여수준보다 높았다. 흥미롭게도 국공립 및 법인어린이집에서는 대상아동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교사 급여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민간어린이집에서는 반대 경향을 보였고, 가정어린이집에서는 0세반 교사, 2세반 교사, 1세반 교사 순이었다.

〈표 III-2-6〉 단일연령 영아반 교사 월 평균 급여

단위: 원(개소)

구분	만 0세반 교사		만 1세반 교사		만 2세반 교사	
전체	1,394,584	(222)	1,423,428	(442)	1,441,204	(521)
국공립	1,662,042	(57)	1,613,533	(152)	1,583,497	(186)
법인	1,665,663	(30)	1,626,918	(90)	1,621,711	(121)
민간	1,184,937	(35)	1,201,256	(84)	1,233,579	(117)
가정	1,234,186	(100)	1,177,327	(116)	1,193,621	(97)

단일연령 영아반 교사의 1일 평균 근무시간을 살펴보면, 전체 조사대상 어린이집의 만 0세반 교사는 9.8시간, 만 1세반 교사는 9.8시간, 만 2세반 교사는 10.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차이는 크게 눈에 띄지 않았다.

〈표 III-2-7〉 단일연령 영아반 교사 일일 평균 근무시간

단위: 시간(개소)

구분	만 0세반 교사		만 1세반 교사		만 2세반 교사	
전체	9.8	(223)	9.8	(442)	10.0	(513)
국공립	10.1	(57)	9.9	(152)	9.7	(184)
법인	10.2	(30)	10.1	(90)	10.2	(119)
민간	9.7	(35)	9.7	(84)	9.8	(114)
가정	9.6	(101)	9.5	(116)	10.4	(96)

단일연령 유아반 보육교사의 월 평균 급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조사대상 어린이집의 만 3세반 교사 급여는 1,440,222원, 만 4세반 교사 급여는 1,466,101원, 만 5세반 교사 급여는 1,528,202원이었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단일연령 유아반 교사 급여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국공

립 및 법인어린이집에서의 급여수준이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에서의 급여수준보다 높았다.

〈표 III-2-8〉 단일연령 유아반 교사 월 평균 기본급여

단위: 원(개소)

구분	만 3세반 교사		만 4세반 교사		만 5세반 교사	
전체	1,440,222	(277)	1,466,101	(172)	1,528,202	(155)
국공립	1,536,025	(126)	1,550,585	(82)	1,609,741	(75)
법인	1,506,235	(70)	1,550,479	(41)	1,651,136	(38)
민간	1,239,784	(78)	1,254,119	(49)	1,271,372	(42)
가정	1,087,533	(3)	-	-	-	-

단일연령 유아반 보육교사의 1일 평균 근무시간을 보면, 하루 평균 전체 조사대상 어린이집의 만 3세반 교사는 10.0시간, 만 4세반 교사는 10.0시간, 만 5세반 교사는 9.7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단일연령 유아반 교사의 근무시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만 3세반 교사의 경우 법인어린이집(10.5시간) 및 민간어린이집(10.1시간)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국공립어린이집(9.6시간) 및 가정어린이집(9.7시간)에서보다 더 오래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5세반 교사에서도 법인어린이집(10.5시간)에서 국공립어린이집 교사(9.7시간)에 비해 근무시간이 더 길었다.

〈표 III-2-9〉 단일연령 유아반 교사 일일 평균 근무시간

단위: 시간(개소)

구분	만 3세반 교사		만 4세반 교사		만 5세반 교사	
전체	10.0	(277)	10.0	(172)	9.7	(155)
국공립	9.6	(126)	9.7	(82)	9.3	(75)
법인	10.5	(70)	10.5	(41)	10.5	(38)
민간	10.1	(78)	10.0	(49)	9.7	(42)
가정	9.7	(3)	-	-	-	-

라) 혼합반, 장애통합반, 시간연장 및 야간반 보육교사

이번에는 어린이집 구성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단일연령반을 제외하고 혼합연령, 장애통합, 시간연장 및 야간반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을 살펴보았다. 먼저 혼합연령 영아반(만 0·1세반, 만 1·2세반, 만 2·3세반) 교사의 월 평균 기본급여를 보면, 대상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사 급여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만 0·1세 혼합연령반 교사는 월 평균 1,573,102원, 만 1·2세 혼합연령반 교사는 월 평균 1,417,177원, 만 2·3세 혼합연령반 교사는 월 평균 1,238,578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호봉이 높은 교사를 영아반에 배치하는 어린이집의 경향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별도의 정부보조금이 영아반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어린이집 유형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0·1세반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1,962,028원) 및 법인어린이집 교사급여(2,122,857원)가 민간어린이집(995,444원) 및 가정어린이집 교사급여(1,207,430원)보다 높았다. 만 1·2세반의 경우 법인 어린이집 교사의 기본급여(1,735,932원)가 가장 높고, 가정어린이집 교사의 기본급여(969,675원)가 가장 낮았다. 모든 유형을 통틀어 민간어린이집 0·1세반 교사 및 가정어린이집의 1·2세반 교사 급여수준이 가장 낮았는데, 이것은 국공립어린이집 교원 1호봉(1,392,280원)에 비교할 때 69.6%~71.5%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혼합연령 영아반 보육교사의 일일 평균 근무시간을 살펴보면, 전체 조사대상 어린이집의 만 0·1세반 교사는 하루 평균 10.2시간을, 만 1·2세반 교사는 9.5시간을, 만 2·3세반 교사는 10.0시간을 근무하였다. 어린이집 유형별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만 1·2세반 교사의 경우 법인어린이집 근무교사의 근무시간(10.4시간)이 다른 유형 어린이집(국공립 8.5시간, 민간 9.4시간, 가정 8.5시간)에서보다 길었다.

〈표 III-2-10〉 혼합연령 영아반 교사 월 평균 급여 및 일일 평균 근무시간

단위: 원/월, 시간/일(개소)

구분	만 0·1세반 교사			만 1·2세반 교사			만 2·3세반 교사		
	월 급여	근무 시간	(빈도)	월 급여	근무 시간	(빈도)	월 급여	근무 시간	(빈도)
전체	1,573,102	10.2	(22)	1,417,177	9.5	(29)	1,238,578	10.0	(12)
국공립	1,962,028	10.7	(6)	1,578,613	8.5	(2)	1,405,720	9.3	(3)
법인	2,122,857	10.7	(5)	1,735,932	10.4	(12)	1,476,790	10.5	(1)
민간	995,444	9.9	(5)	1,254,630	9.4	(9)	1,193,765	9.8	(4)
가정	1,207,430	9.5	(6)	969,675	8.5	(6)	1,098,480	10.7	(4)

다음으로 혼합연령 유아반 보육교사의 월 평균 급여수준을 살펴보면, 영아 전담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해당연령반 아동이 없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전반적으로 만 3·4세 혼합연령반 교사는 월 평균 1,467,365원을, 만 4·5세 혼합연령반 교사는 1,538,955원을 받았다. 만 5세 통합반은 국공립어린이집에만 있었는데, 월 평균 1,540,757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는 만 5세아를 대상

으로 지원하던 누리과정 지원금이 만 3세 및 4세에게 확대됨에 따라 교사 인건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어린이집 유형별 차이를 살펴보면, 만 3·4세반과 만 4·5세반의 교사 급여에 있어서 국공립어린이집(만 3·4세반 1,566,338원, 만 4·5세반 1,606,659원) 및 법인어린이집(만 3·4세반 1,651,996원, 만 4·5세반 1,514,928원)이 민간어린이집(만 3·4세반 1,179,222원, 만 4·5세반 1,368,878원)보다 높았다.

혼합연령반 보육교사의 일일 평균 근무시간을 살펴보면, 전체 조사대상 어린이집의 만 3·4반 교사는 9.6시간, 만 4·5세반 교사는 10.0시간, 만 5세통합반 교사는 8.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3·4세반 교사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에서의 근무시간(10.3시간)이 법인(9.5시간) 및 민간(9.2시간)에 비해 길었으나, 만 4·5세반 교사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에서의 근무시간(9.6시간)이 법인어린이집(10.8시간) 및 민간어린이집(10.1시간)보다 짧았다.

<표 III-2-11> 혼합연령 유아반 교사 월 평균 급여 및 일일 평균 근무시간

단위: 원/월, 시간/일(개소)

구분	만 3·4세반 교사			만 4·5세반 교사			만 5세통합반 교사		
	월 급여	근무 시간	(빈도)	월 급여	근무 시간	(빈도)	월 급여	근무 시간	(빈도)
전체	1,467,365	9.6	(37)	1,538,955	10.0	(43)	1,540,757	8.0	(5)
국공립	1,566,338	10.3	(8)	1,606,659	9.6	(24)	1,540,757	8.0	(5)
법인	1,651,996	9.5	(16)	1,514,928	10.8	(11)	-	-	-
민간	1,179,222	9.2	(13)	1,368,878	10.1	(8)	-	-	-

또한 어린이집에서는 대상 아동의 발달 특성에 맞춘 단일연령반 및 혼합연령반 보육교사 이외에도 장애통합반 및 시간연장 또는 야간반 교사를 정규 보육 인력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비록 전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으나, 이들의 근무여건이 일반 보육교사와는 다른 특성을 보임에 따라 장애통합교사와 시간연장 및 야간반 교사의 근무여건을 살펴보면 <표 III-2-12>와 같다. 분석 결과, 가정어린이집에서는 장애통합반 교사가 별도 배치되지 않았으며, 전체 조사대상 어린이집에서 장애통합반 교사가 있는 경우 월 평균 1,523,510원, 시간연장 및 야간반 교사가 있는 경우 월 평균 1,423,073원의 급여를 받았다. 일반 보육교사의 최저 급여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었다.

근무시간은 장애통합반 교사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1일 평균 10.6시간, 법인어린이집은 1일 평균 10.0시간을 근무하였으며, 민간어린이집은 8.0시간을 근무하였다. 시간연장 및 야간반 교사의 경우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났는데, 민간에서는 1일 평균 6.7시간으로 일반교사보다 적게 나타난 반면, 가정(10.6시간) 및 국공립(11.8시간)에서는 일반교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III-2-12〉 장애통합, 시간연장 및 야간반 교사 월 평균 급여 및 일일 평균 근무시간

단위: 원/월, 시간/일(개소)

구분	장애통합반 교사			시간연장 및 야간반 교사		
	월 급여	근무시간	(빈도)	월 급여	근무시간	(빈도)
전체	1,523,510	10.1	(9)	1,423,073	10.6	(32)
국공립	1,525,812	10.6	(5)	1,561,264	11.8	(16)
법인	1,700,843	10.0	(3)	1,673,690	8.0	(3)
민간	980,000	8.0	(1)	1,421,707	6.7	(3)
가정	-	-	-	1,127,191	10.6	(10)

2) 제수당

어린이집에서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월 평균 제수당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평균 545,854원으로,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정어린이집(209,187원)이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국공립 769,501원, 법인 726,354원, 민간 592,457원)에 비해 제수당 지출금액이 훨씬 적었다.

〈표 III-2-13〉 어린이집 교직원 월 평균 제수당

단위: 원(개소)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사례수	F
			하한값	상한값		
전체	545,854	801,008	454,227	637,481	(296)	
국공립	769,501 ^a	529,770	650,839	888,163	(79)	9.080***
법인	726,354 ^c	1,369,583	348,850	1,103,858	(53)	
민간	592,457 ^e	822,444	400,566	784,347	(73)	
가정	209,187 ^{bdf}	235,531	160,135	258,238	(91)	

주: a, b, c, d, e, f는 Scheffe 사후검정 기준 a≠b, c≠d, e≠f.

*p<.05, **p<.01, ***p<.001

3) 후생경비

교직원 복리후생에 소요된 월 평균 비용을 살펴본 결과, 전체 조사대상의 월 평균 후생경비는 503,039원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유형별 차이 또한 존재하였

는데, 가정어린이집(246,136원)과 민간어린이집(351,453원)이 비슷한 속성을 보이는 가운데 법인어린이집(637,072원) 및 국공립(878,552원)과 차이를 보였다.

〈표 III-2-14〉 어린이집 월 평균 교직원 후생경비

단위: 원(개소)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사례수	F
			하한값	상한값		
전체	503,039	452,625	451,869	554,208	(303)	
국공립	878,552a	461,996	774,388	982,716	(78)	48.028***
법인	637,072b	559,780	482,778	791,367	(53)	
민간	351,453c	293,481	283,458	419,447	(74)	
가정	246,136c	167,899	212,475	279,798	(98)	

주: a, b, c는 Scheffe 사후검정 기준 $a \neq b \neq c$.

* $p < .05$, ** $p < .01$, *** $p < .001$

4) 일용잡급

2011년 어린이집이 단기간 채용한 임시직 인력유형을 살펴보면 <표 III-2-15>와 같다. 분석 결과, 전체 조사대상 어린이집 중에서 보육교사를 도와줄 수 있는 인력으로 보조교사를 한 어린이집의 비율은 16.6%, 대체교사를 채용한 어린이집의 비율은 14.1%이었으며, 시간연장교사를 채용한 어린이집의 비율은 0.9%이었다. 특강강사를 임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는 10.6%이었다. 보육교사가 아닌 직원 인력으로는, 취사원(27.8%)을 임시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청소 및 관리인력을 채용한 경우가 14.7%, 차량운전사가 6.3%, 행사보조 및 기타 인력이 3.1%, 영양사가 2.8% 순이었다.

〈표 III-2-15〉 어린이집 임시직 인력유형(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시간 연장	대체 교사	보조 교사	특강 강사	취사	차량	청소 및 관리	행사 보조	영양사	기타	계
비율	0.9	14.1	16.6	10.6	27.8	6.3	14.7	3.1	2.8	3.1	100.0
빈도	(3)	(45)	(53)	(34)	(89)	(20)	(47)	(10)	(9)	(10)	(320)

한편, 임시직 고용 인력에 지급한 월 평균 비용을 계산하면 <표 III-2-16>과 같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 응답한 조사대상 어린이집의 임시직 월 평균 급여는 405,250원이었다. 이를 통해 전체 어린이집(모집단)의 임시직 월 평균 급여를 유

추하면, 308,515원에서 501,985원의 범위에 있을 확률이 95%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유형별 월 평균 일용잡급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국공립어린이집은 월 평균 365,063원, 법인어린이집은 471,015원, 민간 어린이집은 542,284원, 가정어린이집은 345,526원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2-16〉 어린이집 월 평균 일용잡급

단위: 원(개소)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사례수	F
			하한값	상한값		
전체	405,250	627,366	308,515	501,985	(164)	0.765
국공립	365,063	519,756	225,871	504,254	(56)	
법인	471,015	536,998	258,586	683,445	(27)	
민간	542,284	880,919	193,804	890,764	(27)	
가정	345,526	625,194	174,881	516,171	(54)	

라. 일반 운영비 현황

1) 사업운영비

이번에는 일반 운영비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행사비로 구성된 사업운영비를 살펴보면, 전체 조사대상 어린이집의 월 평균 사업운영비 총액은 3,228,840원으로, 모집단인 어린이집의 사업운영비가 2,964,339원에서부터 3,493,341원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이었다.

먼저 급간식비를 살펴보면, 전체 평균 2,506,297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3,911,999원으로 가장 높고, 법인어린이집이 2,940,099원, 민간어린이집이 2,822,259원, 가정어린이집이 927,727원 순이었다. 가정어린이집에서 급간식비가 다른 시설유형보다 낮은 것은 영아의 섭취량이 더 적기 때문이다.

교재교구비의 경우, 전체 조사대상 어린이집의 월 평균 교재교구비 지출액은 503,013원으로 나타났다. 모집단인 전체 어린이집의 월 평균 교재교구비는 442,178원에서 563,848원 사이의 범위에 위치할 확률이 95%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813,124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법인어린이집의 경우 598,168원으로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513,583원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195,747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것은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교재교구에 투자하는 규모가 다른 시설유형보다 크고, 보육 아동의 연령이 어리고

어린이집의 규모가 작을수록 교재교구비가 적게 투입되는 것을 시사한다.

행사비를 살펴보면, 전체 조사대상 어린이집의 월 평균 행사비 지출수준은 227,848원이었다. 어린이집 유형별 지출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가정 어린이집만 행사비가 67,051원으로,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국공립: 329,626원, 법인: 322,764원, 민간: 268,264원)에 비해 훨씬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운영비는 어린이집 운영의 질을 좌우하는 주요 항목인 급간식비와 교재교구비가 포함되어 있어 어린이집 운영에서 인건비 다음으로 중요한 항목이다. <표 III-2-17>에서 제시되는 바처럼 특히 급간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충분한 금액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표 III-2-17> 어린이집 월 평균 사업운영비

단위: 원(개소)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사례수	F
			하한값	상한값		
전체	3,228,840	2,355,199	2,964,339	3,493,341	(307)	72.559***
급간식비	2,506,297	1,837,403	2,299,947	2,712,647	(307)	
국공립	3,911,999 ^a	1,697,083	3,531,873	4,292,125	(79)	69.985***
법인	2,940,099 ^b	1,302,498	2,584,585	3,295,612	(54)	
민간	2,822,259 ^b	1,993,515	2,360,399	3,284,119	(74)	
가정	927,727 ^c	236,944	880,713	974,742	(100)	
교재교구비	503,013	540,806	442,178	563,848	(306)	
국공립	813,124 ^a	450,726	712,167	914,081	(79)	24.466***
법인	598,168 ^b	742,785	395,426	800,909	(54)	
민간	513,583 ^b	537,507	389,053	638,113	(74)	
가정	195,747 ^c	238,702	148,139	243,355	(99)	
행사비	227,848	279,327	196,004	259,692	(298)	
국공립	329,626 ^a	271,599	268,390	390,862	(78)	20.027***
법인	322,764 ^a	267,335	249,078	396,451	(53)	
민간	268,264 ^a	377,048	177,687	358,841	(69)	
가정	67,051 ^b	42,762	58,478	75,625	(98)	

주: a, b, c는 Scheffe 사후검정 기준 $a \neq b \neq c$.

* $p < .05$, ** $p < .01$, *** $p < .001$

2) 관리운영비

관리운영비는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연료비로 구성된다. 전체 조사대상 어린이집에서 지출하는 월 평균 관리운영비를 살펴

보면 <표 III-2-18>과 같이 2,890,786원이었다. 어린이집에서 일반적으로 2,670,341원부터 3,111,232원까지를 월 관리운영비로 지출할 확률은 95%이었다.

관리운영비의 구성항목별 월 평균 관리운영비를 살펴보면, 조사대상 어린이집에서는 월 평균 여비로 59,350원, 수용비 및 수수료로 783,111원, 공공요금으로 540,219원, 제세공과금으로 271,172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 평균 차량운영비 지출수준은 594,295원, 연료비는 270,402원, 기타운영비는 1,051,795원이었다. 어린이집유형별로 월 평균 관리운영비 지출금액에 있어 차이가 나는지 알아본 결과, 여비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월 평균 수용비 및 수수료 지출액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1,335,393원)이 법인어린이집(900,524원) 및 민간어린이집(641,415원)에 비해 더 많았으며, 가정어린이집(388,261원)에서 가장 적었다. 공공요금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696,734원), 법인어린이집(682,329원), 민간어린이집(596,074원)에서 가정어린이집(298,056원)에 비해 월 평균 지출액이 더 많았다. 제세공과금의 경우 법인어린이집의 월 평균 지출액(504,175원)이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국공립: 243,872원, 민간: 275,195원, 가정: 164,213원)에 비해 더 많았다. 월 평균 차량운영비의 경우 농어촌지역에 주로 위치한 법인어린이집(952,541원)에서 국공립어린이집(303,994원) 및 가정어린이집(232,660원)에 비해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방비를 포함한 연료비의 경우 월 평균 가정어린이집에서의 지출액(89,031원)이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국공립: 399,148원, 법인: 298,047원, 민간: 267,438원)에 비해 지출액이 적었다. 기타운영비의 경우 민간어린이집의 월 평균 지출액(1,761,237원)이 다른 어린이집(국공립: 259,779원, 법인: 728,449원, 가정: 805,877원)에서보다 많았다.

3) 재산조성비

재산조성비는 자산취득비와 시설장비유지비로 구성된다. 분석 결과, 조사대상 어린이집에서는 자산취득비로 월 평균 326,288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월 평균 211,365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월 평균 재산조성비 금액에 차이가 나는지 분석한 결과, 월 평균 자산취득비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474,586원)이 민간어린이집(293,878원) 및 가정어린이집(194,040원)에 비해 더 많이 지출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의 경우 가정어린이집(53,881원)이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국공립: 243,855원, 법인: 243,177원, 민간: 328,705원)에 비해 더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2-19 참조).

〈표 III-2-18〉 어린이집 월 평균 관리운영비

단위: 원(개소)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사례수	F
			하한값	상한값		
전체	2,890,786	1,962,913	2,670,341	3,111,232	(307)	29.153***
여비	59,350	82,844	48,418	70,283	(223)	2.635
국공립	49,208	41,663	39,687	58,728	(76)	
법인	90,152	90,747	62,562	117,742	(44)	
민간	55,315	122,830	17,971	92,659	(44)	
가정	52,453	76,280	32,574	72,332	(59)	
수용료및수수료	783,111	589,845	716,869	849,354	(307)	65.591***
국공립	1,335,393 ^a	645,428	1,190,826	1,479,961	(79)	
법인	900,524 ^b	420,93	785,697	1,015,351	(54)	
민간	641,415 ^c	504,138	524,616	758,214	(74)	
가정	388,261 ^d	203,982	347,787	428,735	(100)	
공공요금	540,219	473,685	486,757	593,680	(304)	15.334***
국공립	696,734 ^a	355,835	617,032	776,437	(79)	
법인	682,329 ^a	509,739	541,828	822,831	(53)	
민간	596,074 ^a	688,594	435,413	756,735	(73)	
가정	298,056 ^b	120,377	274,048	322,065	(99)	
체세공과금	271,172	274,122	240,131	302,214	(302)	21.722***
국공립	243,872 ^a	186,830	202,024	285,719	(79)	
법인	504,175 ^b	442,807	382,123	626,228	(53)	
민간	275,195 ^a	229,005	221,381	329,009	(72)	
가정	164,213 ^a	140,589	136,026	192,399	(98)	
차량운영비	594,295	587,103	507,943	680,647	(180)	17.937***
국공립	303,994 ^a	259,206	118,569	489,419	(10)	
법인	952,541 ^b	570,466	781,154	1,123,928	(45)	
민간	689,607 ^a	667,955	530,339	848,875	(70)	
가정	232,660 ^c	169,071	186,954	278,367	(55)	
연료비	270,402	243,457	236,282	304,523	(198)	15.104***
국공립	399,148 ^a	238,126	331,473	466,822	(50)	
법인	298,047 ^a	244,782	222,714	373,379	(43)	
민간	267,438 ^b	253,660	204,076	330,800	(64)	
가정	89,031 ^c	54,053	71,970	106,092	(41)	
기타운영비	1,051,795	1,268,707	881,644	1,221,946	(216)	12.971***
국공립	295,779 ^a	390,951	94,770	496,787	(17)	
법인	728,449 ^a	648,157	523,865	933,033	(41)	
민간	1,761,237 ^b	1,612,116	1,371,022	2,151,452	(68)	
가정	805,877 ^a	1,054,788	584,956	1,026,797	(90)	

주: a, b, c, d는 Scheffe 사후검정 기준 a≠b≠c≠d.

*p<.05, **p<.01, ***p<.001

<표 III-2-19> 어린이집 월 평균 재산조성비

단위: 원(개소)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사례수	F
			하한값	상한값		
전체	492,926	510,192	433,857	551,995	(289)	16.237***
자산취득비	326,288	342,198	285,589	366,987	(274)	10.401***
국공립	474,586 ^a	395,721	385,949	563,222	(79)	
법인	354,914	334,627	258,797	451,030	(49)	
민간	293,878 ^b	354,257	203,914	383,843	(62)	
가정	194,040 ^b	202,746	150,042	238,039	(84)	
시설장비유지비	211,365	368,582	165,546	257,185	(251)	7.112***
국공립	243,855 ^a	266,552	181,218	306,492	(72)	
법인	243,177 ^a	338,352	144,930	341,424	(48)	
민간	328,705 ^a	585,428	178,770	478,640	(61)	
가정	53,881 ^b	62,997	38,860	68,902	(70)	

주: a, b는 Scheffe 사후검정 기준 a≠b.

*p<.05, **p<.01, ***p<.001

4)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로 구성된다. 각 영역별로 월 평균 지출비용을 살펴보면 <표 III-2-20>과 같다. 조사 결과, 전체 조사대상 어린이집에서는 업무추진비로 월 평균 총 305,869원을 지출하였다. 항목별로는 기관운영비로 월 평균 127,773원, 직책급으로 월 평균 171,413원, 회의비로 월 평균 34,829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운영비는 어린이집 유형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국공립어린이집(148,202원)에서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에 비해 월 평균 기관운영비를 더 많이 지출하였으며, 가정어린이집(86,625원)에서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에 비해 월 평균 기관운영비를 더 적게 지출하였다.

어린이집유형에 따른 직책급 월 평균 지급 비용의 차이를 보면, 국공립어린이집(228,998원)에서 월 평균 가장 많은 직책급을 지출하였으며, 가정어린이집(127,574원)에서 월 평균 가장 적은 직책급을 지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회의비 역시 어린이집 유형별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인어린이집(47,731원)이 월 평균 회의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36,760원), 민간어린이집(37,381원), 가정어린이집(22,317원)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2-20〉 어린이집 월 평균 업무추진비

단위: 원(개소)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사례수	F
			하한값	상한값		
전체	305,869	182,621	285,292	326,446	(305)	22.970***
기관운영비	127,773	124,383	113,593	141,953	(298)	
국공립	148,202 ^a	106,497	124,191	172,214	(78)	
법인	153,396 ^a	163,988	108,195	198,596	(53)	5.644***
민간	143,442 ^a	156,427	105,864	181,020	(69)	
가정	86,625 ^b	64,941	73,605	99,644	(98)	
직책급	171,413	94,940	160,184	182,643	(277)	
국공립	228,998 ^a	132,665	199,283	258,714	(79)	
법인	185,808 ^b	56,129	169,857	201,760	(50)	21.528***
민간	148,965 ^b	77,356	128,440	169,490	(57)	
가정	127,574 ^c	40,761	119,085	136,063	(91)	
회의비	34,829	35,618	30,118	39,540	(222)	
국공립	36,760	29,787	29,907	43,613	(75)	
법인	47,731 ^a	51,393	31,295	64,167	(40)	4.672**
민간	37,381	37,238	26,194	48,569	(45)	
가정	22,317 ^b	23,525	16,343	28,292	(62)	

주: a, b, c는 Scheffe 사후검정 기준 $a \neq b \neq c$.* $p < .05$, ** $p < .01$, *** $p < .001$

5) 과년도지출 및 잡지출

과년도지출은 <표 III-2-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48개소의 어린이집에서만 발생하였고,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해당 항목으로 지출된 금액이 없었다. 2011년 과년도지출이 있었다고 응답한 어린이집에서 지출한 월 평균 과년도지출 비용은 3,051,859원이었다.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2-21〉 어린이집 월 평균 과년도지출

단위: 원(개소)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사례수	F
			하한값	상한값		
전체	3,051,859	10,806,164	-85,924	6,189,642	(48)	
국공립	5,393,634	18,407,023	-5,234,265	16,021,533	(14)	
법인	338,956	441,518	-124,389	802,301	(6)	0.363
민간	2,183,840	6,708,549	-1,870,095	6,237,776	(13)	
가정	2,703,647	5,412,424	-293,653	5,700,947	(15)	

잡지출은 <표 III-2-22>에서와 같이 전체 어린이집 중 113개소에서 발생하였는데, 모집단의 95% 신뢰구간이 37,420원에서 74,228원에 이를 정도로 표준편차가 큰 편이었다. 잡지출이 있었던 어린이집에서 월 평균 지출한 금액은 55,824원이었다.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지출액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III-2-22> 어린이집 월 평균 잡지출

단위: 원(개소)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사례수	F
			하한값	상한값		
전체	55,824	98,739	37,420	74,228	(113)	0.739
국공립	46,068	71,413	19,402	72,734	(30)	
법인	79,514	108,793	33,574	125,453	(24)	
민간	61,648	142,474	38	123,259	(23)	
가정	44,440	76,245	18,643	70,238	(36)	

6) 어린이집 운영비 총액

지금까지 언급된 월별 시설운영비 하위영역(업무추진비, 관리운영비, 사업운영비, 재산조성비, 과년도지출, 잡지출)을 모두 합산한 시설운영비 월 총액은 평균 7,676,454원이었다(표 III-2-23 참조). 어린이집 유형별 월 평균 운영비 지출액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운영비로 지출하는 총액이 월 평균 3,952,267원으로,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국공립어린이집의 월 평균 운영비 총액 10,283,642원이나 법인어린이집의 월 평균 운영비 총액 8,868,985원, 또는 민간어린이집의 월평균 운영비 총액 9,055,563원보다 훨씬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III-2-23> 어린이집 유형별 시설운영비 총액

단위: 원(개소)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사례수	F
			하한값	상한값		
전체	7,676,454	6,830,792	6,909,320	8,443,587	(307)	17.822***
국공립	10,283,642 ^a	9,431,558	8,171,088	12,396,195	(79)	
법인	8,868,985 ^b	3,337,475	7,958,029	9,779,940	(54)	
민간	9,055,563 ^a	7,270,460	7,371,135	10,739,993	(74)	
가정	3,952,267 ^b	2,750,289	3,406,550	4,497,984	(100)	

주: a, b는 Scheffe 사후검정 기준 a≠b.

*p<.05, **p<.01, ***p<.001

소규모 가정어린이집과 규모가 큰 민간,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간에는 월 평균 운영비에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어린이집 유형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 결과가 어린이집 규모에 따른 차이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번에는 어린이집 아동 현원을 기준으로 월 평균 총 운영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표 III-2-24 참조). 분석 결과, 어린이집 월 평균 운영비 총액은 규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집 규모가 커질수록 월 평균 운영비 총액이 커지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그에 따라 98인 이상 현원을 가진 어린이집의 월 평균 운영비 총액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77~97인, 50~76인, 50인 미만의 어린이집 순으로 월 평균 운영비 지출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2-24〉 어린이집 규모별 월 평균 시설운영비 총액 비교

단위: 원(개소)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사례수	F
			하한값	상한값		
전체	7,676,454	6,830,792	6,909,320	8,443,587	(307)	
98인 이상	18,146,316 ^a	14,243,720	13,253,427	23,039,205	(35)	53.520***
77-97인	10,478,811 ^{bc}	1,738,889	9,936,935	11,020,686	(42)	
50-76인	8,220,029 ^{be}	2,251,454	7,638,417	8,801,642	(60)	
21-49인	5,964,384 ^{bd}	2,151,699	5,413,308	6,515,460	(61)	
20인 이하	3,893,678 ^{bdf}	2,646,241	3,391,269	4,396,088	(109)	

주: a, b, c, d, e, f는 Scheffe 사후검정 기준 a≠b, c≠d, e≠f.

*p<.05, **p<.01, ***p<.001

어린이집 규모를 아동 현원 기준 50인 미만 시설과 50인 이상 시설로 구분하여 월 평균 운영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표 III-2-25>와 같다. 전체 237개소 중 50인 미만 어린이집은 140개소로 59.1%를 차지하여 50인 이상 시설(97개소, 40.9%)보다 다소 많았다. 분석 결과, 50인을 기준으로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월 평균 운영비 지출양상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50인 이상의 규모가 큰 시설에서 운영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25〉 어린이집 규모별(50인 중심) 월 평균 시설운영비 총액 비교

단위: 원(개소)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최소	최대	t
50인 이상	11,448,415	8,382,443	(137)	4,453,665	88,061,167	9.146***
50인 미만	4,636,696	2,666,661	(170)	730,715	18,339,946	

*p<.05, **p<.01, ***p<.001

또한, 어린이집 운영시간에 따라 운영비가 다르게 지출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운영시간에 따라 월 평균 운영비 지출이 달라지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조사대상 어린이집의 1일 평균 운영시간(평일 기준)을 기준으로 12시간 미만, 12시간, 12시간 초과 3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월 평균 운영비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분석 결과, 어린이집 운영시간에 따른 운영비 지출 총액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토요일 운영시간을 기준으로 7시간 미만, 7시간, 7시간 초과 3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월 평균 운영비를 살펴보기도 하였으나, 이 역시 유형별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3. 사례조사

다음으로 표준보육료 현실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유형별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어린이집 유형 뿐 아니라 규모를 고려하여 2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조사대상자를 섭외하였으며, 현재 표준보육료 지원 하에서 재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및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어느 정도로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기대수준을 조사하였다. 자료 수집시 세출예산안 뿐만 아니라 세입예산안도 같이 조사하여 지역별 서로 다를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및 외부 수익금 대비 지출규모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사례조사 결과 수집된 세입예산안을 정리한 것이 <표 III-3-1>에 제시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안을 정리한 것이 <표 III-3-2>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I-3-1〉 어린이집 유형별 세입예산개선안

	가정(20인, 읍면지역)		가정(20인, 대도시)		민간(50인, 중소도시)		민간(76인, 중소도시)		단위 : 원
	조정치	현재	조정치	현재	조정치	현재	조정치	현재	
111 기타필요경비	3,600,000	2,800,000	4,060,000	4,060,000	30,000,000	18,520,000	39,640,000	39,640,000	
112 특별활동비	4,320,000	3,600,000	10,200,000	10,200,000	33,600,000	24,000,000	45,600,000	27,360,000	
211 과년도수입	-	-	-	-	-	-	-	-	
311 이차수입	5,000	-	-	-	-	-	-	-	
312 후원금수입	-	600,000	-	-	-	-	-	-	
313 기타잡수입	200,000	100,000	-	-	-	-	-	-	
411 보육료수입	99,810,000	74,220,000	79,848,000	79,848,000	191,088,000	175,488,000	281,400,000	244,200,000	
511 인건비보조금	8,400,000	6,720,000	169,655,869	169,655,869	42,000,000	-	28,800,000	-	
512 기본보육료	46,893,000	40,032,000	-	-	40,200,000	40,200,000	19,320,000	19,320,000	
513 기타지원금	4,440,000	2,415,000	-	-	10,600,000	-	15,592,000	-	
521 자본보조금	1,000,000	-	-	-	-	-	-	-	
611 전입금	-	-	-	-	-	-	-	-	
612 차입금	-	1,000,000	-	-	-	-	-	-	
711 전년도이월금	-	1,000,000	-	-	-	-	-	-	
712 전년도이월사업비	-	455,000	-	-	-	-	-	-	
합 계	168,668,000	132,942,000	263,763,869	263,763,869	347,488,000	258,208,000	430,352,000	330,520,000	

주: 어린이집 규모는 현원 기준

(표 III-3-1 계속)

	범인(44인, 대도시)		범인(50인, 중소도시)		국공립(46인)		국공립(75인)		국공립(115인)	
	조정치	현재	조정치	현재	조정치	현재	조정치	현재	조정치	현재
111 기타필요경비	11,100,000	11,100,000	57,020,000	57,020,000	1,500,000	1,500,000	15,850,000	15,850,000	30,020,000	30,020,000
112 특별활동비	13,860,000	13,860,000	12,360,000	12,360,000	-	-	34,776,000	34,776,000	89,530,000	89,530,000
211 과년도수입	-	-	500,000	500,000	-	-	-	-	-	-
311 이자수입	4,000	4,000	608,243	520,808	50,000	50,000	50,000	50,000	200,000	200,000
312 후원금수입	-	-	-	-	-	-	-	-	-	-
313 기타잡수입	900,000	900,000	5,920,000	3,190,000	2,370,846	2,370,846	2,700,000	2,700,000	9,800,000	9,800,000
411 보육료수입	155,088,000	126,888,000	240,910,600	143,962,000	184,602,000	184,602,000	211,356,000	211,356,000	511,680,000	511,680,000
511 인건비보조금	124,680,792	124,680,792	232,781,157	134,129,160	344,679,268	344,679,268	148,626,761	148,626,761	411,494,001	411,494,001
512 기본보육료	-	-	-	-	-	-	-	-	-	-
513 기타지원금	10,820,000	10,820,000	32,900,000	19,940,000	9,950,000	9,950,000	21,744,360	21,744,360	59,808,000	59,808,000
521 자본보조금	-	-	-	-	-	-	-	-	-	-
611 전입금	-	-	-	-	-	-	-	-	500,000	500,000
612 차입금	-	-	-	-	-	-	-	-	-	-
711 전년도이월금	121,953	121,953	7,378,032	7,378,032	29,002,158	29,002,158	9,000,000	9,000,000	70,000,000	70,000,000
712 전년도이월사업비	-	-	-	-	-	-	-	-	-	-
합 계	316,574,745	288,374,745	583,000,000	379,000,000	572,154,272	572,154,272	444,103,121	444,103,121	1,183,032,001	1,183,032,001

주: 어린이집 규모는 현원 기준

〈표 III-3-2〉 어린이집 유형별 세출예산개산안

	가정(20인, 읍면지역)		가정(20인, 대도시)		민간(50인, 중소도시)		민간(76인, 중소도시)	
	조정치	현재	조정치	현재	조정치	현재	조정치	현재
111 기본금	93,070,080	76,800,000	132,778,560	132,778,560	144,150,720	127,200,000	178,406,280	135,000,000
112 인용집금	550,000	100,000	600,000	600,000	22,560,000	-	36,720,000	1,200,000
113 재수당	2,520,000	3,000,000	19,600,000	19,600,000	7,200,000	-	-	7,200,000
114 퇴직금및퇴직적립금	5,254,520	3,500,000	11,064,880	11,064,880	12,000,000	8,400,000	16,800,000	10,800,000
115 사회보험부담비용	14,973,725	10,300,000	11,499,121	11,499,121	13,000,000	10,400,000	15,000,000	11,640,000
116 기타후생경비	6,500,000	3,300,000	8,340,000	8,340,000	2,700,000	1,200,000	2,700,000	2,700,000
121 기관운영비	600,000	550,000	1,200,000	1,200,000	900,000	600,000	900,000	900,000
122 직책급	1,800,000	1,800,000	1,800,000	1,800,000	2,400,000	2,400,000	2,400,000	2,400,000
123 회의비	490,000	100,000	1,800,000	1,8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31 여비	500,000	300,000	1,600,000	1,600,000	-	-	-	-
132 수용비, 수수료 및 공공요금	7,330,000	5,300,000	14,880,000	14,880,000	14,320,000	11,410,000	14,320,000	14,320,000
133 차량비	-	-	-	-	2,400,000	2,400,000	2,400,000	2,400,000
134 연료비	1,920,000	1,700,000	-	-	3,600,000	3,600,000	4,200,000	4,200,000
135 기타운영비	4,200,000	4,000,000	16,800,000	16,800,000	24,000,000	24,000,000	30,000,000	30,000,000
211 임금삭비	13,500,000	11,000,000	18,744,000	18,744,000	23,100,000	23,100,000	35,112,000	35,112,000
212 교재교구비	2,580,000	1,000,000	3,400,000	3,400,000	3,600,000	-	6,000,000	-
213 행사비	800,000	300,000	1,100,000	1,100,000	2,700,000	1,600,000	5,000,000	2,700,000
214 기타필요경비 지출	3,600,000	2,840,000	14,260,000	14,260,000	30,000,000	22,600,000	37,300,000	37,300,000
215 특별활동비 지출	4,320,000	3,600,000	-	-	30,000,000	18,600,000	36,000,000	27,000,000
311 시설비	1,000,000	500,000	2,000,000	2,000,000	5,000,000	-	5,000,000	5,000,000
312 자산취득비	1,000,000	1,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	2,000,000	2,000,000
313 시설장비유지비	600,000	100,000	2,000,000	2,000,000	1,000,000	-	-	-
411 법인회계진출금	-	-	-	-	-	-	-	-
412 차입금 상환	-	1,000,000	-	-	-	-	-	-
413 보조금반환금	-	-	-	-	-	-	-	-
414 보호자반환금	-	-	-	-	-	-	-	-
511 과년도지출	-	-	-	-	-	-	-	-
611 잠지출	491,675	352,000	-	-	-	-	-	-
711 예비비	1,000,000	500,000	297,308	297,308	-	-	-	-
합 계	168,600,000	132,942,000	263,763,869	263,763,869	346,830,720	257,750,000	430,458,280	332,072,000

(표 III-3-2 계속)

	범인(44인, 대도시)		범인(50인, 중소도시)		국공립(46인)		국공립(75인)		국공립(115인)	
	조성지	현재	조성지	현재	현재	현재	현재	현재	현재	
111 기본급	141,446,820	141,446,820	233,825,832	169,250,640	294,023,979	184,124,580	495,163,920			
112 인공급	11,700,000	11,700,000	21,600,000	8,700,000	7,000,000	5,875,000	17,200,000			
113 체수당	15,600,000	9,864,000	42,000,000	6,960,000	44,220,000	13,420,000	53,628,000			
114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13,937,230	13,459,235	18,335,070	14,103,900	25,792,820	15,605,378	41,247,155			
115 사회보장부담비용	14,479,490	13,982,890	19,981,689	15,370,530	53,800,740	17,373,820	43,206,979			
116 기타후생경비	14,840,000	8,180,000	8,000,000	6,580,000	26,900,000	9,670,000	26,700,000			
121 기관운영비	1,200,000	180,000	2,400,000	1,200,000	3,200,000	3,600,000	2,400,000			
122 작책금	2,400,000	2,400,000	3,600,000	2,400,000	2,400,000	2,760,000	3,600,000			
123 회의비	1,000,000	150,000	1,200,000	600,000	400,000	300,000	1,800,000			
131 예비	360,000	360,000	3,600,000	1,800,000	1,200,000	250,000	360,000			
132 수용비·수수료 및 공공요금	11,860,000	10,360,000	20,400,000	13,060,000	35,340,000	40,901,500	84,270,000			
133 차량비	-	-	8,400,000	2,400,000	-	-	-			
134 연료비	6,000,000	6,000,000	15,840,000	9,600,000	-	-	-			
135 기타운영비	100,000	100,000	30,000,000	7,000,000	-	-	-			
211 급간식비	43,800,000	29,622,000	49,248,000	33,037,200	43,110,000	48,600,000	124,982,000			
212 교재교구비	6,240,000	6,240,000	19,200,000	8,340,000	13,280,000	9,400,000	73,500,000			
213 행사비	2,800,000	2,400,000	3,000,000	1,500,000	5,700,000	6,412,000	25,455,000			
214 기타필요경비 지출	11,100,000	11,100,000	59,480,000	59,480,000	1,500,000	14,725,000	30,020,000			
215 특별활동비 지출	13,860,000	13,860,000	12,360,000	12,360,000	3,600,000	40,656,000	89,530,000			
311 시설비	4,000,000	4,000,000	5,000,000	2,000,000	6,000,000	2,300,000	9,900,000			
312 자산취득비	2,000,000	2,000,000	3,000,000	2,000,000	9,000,000	3,200,000	33,000,000			
313 시설장비유지비	720,000	720,000	2,000,000	1,000,000	1,000,000	3,000,000	4,000,000			
411 법인회계지출금	-	-	-	-	-	-	-			
412 차입금 상환	-	-	-	-	-	-	-			
413 보조금반환금	-	-	-	-	-	-	-			
414 보호자반환금	-	-	-	-	-	-	-			
511 과년도지출	-	-	-	-	-	-	-			
611 잡지출	-	-	529,409	257,730	50,000	750,000	3,000,000			
711 예비비	2,031,163	249,800	-	-	636,733	542,401	10,068,948			
합 계	265,974,703	247,052,745	583,000,000	379,000,000	571,854,272	423,715,679	1,183,032,002			

가. 인건비 지원 여부

1) 유형별 교사 인건비 지원 요구도

조사 결과, 민간 및 가정, 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표준보육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국공립의 경우 현재 재정 지원으로도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같은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라 하더라도 서울형인 경우 또한 표준보육료 인상폭을 크게 잡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특히 교사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일례로, 표준보육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어린이집 유형에 상관없이 운영상 가장 시급히 해결될 문제로 어린이집에서의 교사 인건비 지원을 들었다. 이는 현재 표준보육료 지원방식(구간결재 방식)이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예산 운용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현재 표준보육료는 아동 현원에 따라 이용금액을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출항목은 일할로 계산하기 어려운 항목이 다수 있다. 급간식비와 같은 항목은 아동 현원 감소에 따라 지출이 줄어들 수 있지만, 학급 수 및 교사 수, 취사원 수나 운전기사 수는 아동 1인이 줄어든다고 하여 고용 1인을 줄일 수 없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예산 편성시 차년도 정원 충족률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교사 및 직원 인건비를 최소한도로 책정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교사의 일정한 임금 수준을 보장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었다.

2) 교사 인건비 적정 수준 기대치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에서 양질의 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사 임금을 국공립 수준에 준하게 지급해주어야 하지만, 이는 모두 원장 자부담이 되므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하였다. 교사의 근무시간 역시 8시간을 기준으로 되어있으나, 실제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10-12시간에 이르러 교사들이 초과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시간외 수당 및 대체교사 투입 역시 어린이집 재정운영 상황에 따라 편차가 큰 편이었다.

교사 인건비의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같은 외부에서 지원을 별도로 받지 못하는 한, 어린이집에서 고용할 수 있는 교사의 최대호봉이 암묵적으로 정해져있는 편이었다. 유형별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교사가 7호봉 이상 되면

어린이집 운영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었으며, 10호봉 이상으로 올라가면 지속적인 고용을 보장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3) 직원인건비 요구도

어린이집 유형에 상관없이 취사원은 반드시 필요한 직원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고용여부 및 임금 수준은 어린이집 유형별, 규모별, 소재위치에 따라 상이하였다. 한편 가정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이 반을 겸임하는 동시에 운전사, 취사원의 역할까지 병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과중한 업무로 인해 해당 반 아동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4) 재정 운영이 가장 어려운 규모

현행 보육료 지원 하에서 가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규모로는 유형에 상관없이 40-50인 시설인 것으로 지목되었는데, 이 역시 교원 인건비 지원과 무관하지 않다. 현 표준보육료가 만 3세아에서 실제 필요수준과의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40-50인 시설일 경우 학급 편성은 대규모와 유사하게 해야 하지만, 인건비 지원은 소규모 영아전담 시설처럼 해당되지 않는다. 원아 수에 비례하는 보육료 수입 또한 대규모에 비할 수 없이 적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영아전담으로 인건비 보조를 지원받을 수 있고, 영유아 공통으로 적용되는 급간식비의 경우에도 영아섭취량이 적어 상대적으로 지출 총액을 쉽게 낮출 수 있는 유익이 있지만 중규모가 되면 사라진다. 반면 규모의 경제 및 연령별 교사 수의 기준 적용으로 인해 적은 유아 수로도 대규모 어린이집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학급 수를 운영하는 데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었다.

나. 시설 개보수비 지원 요구도

지원이 필요한 다른 항목으로 시설개보수비가 있었으나,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과 같은 원장 개인소유 시설에 대해 정부에서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한 동의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가장 바람직한 경우는 해마다 일정 금액을 예비비로 남겨 2-3년에 한 번씩 개보수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어린이집 규모별로 적용 가능성에 대한 편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 교재교구비 및 급간식비 지원 요구도

또한 운영비에서 교재교구비와 급간식비를 현실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교재교구비의 경우 어린이집 운영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의 수준으로 집행되고 있으며, 급간식비의 경우 현재 영유아 공통으로 1,750원의 지원단가가 10년째 비슷한 수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교재교구비 및 급간식비의 수준을 직장 어린이집 수준까지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례조사시 직장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조사에서 유형별로 할당할 때에는 직장 어린이집을 따로 편성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해당 유형이 수적으로 많지 않으며 같은 유형 내에서도 소속 기업에 따라 운영기준(특히 인건비)에서 천차만별인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사례조사에 참여한 직장 어린이집은 비슷한 유형 중에서도 최저치나 최고치가 아닌 평균치의 교재교구비 및 급간식비를 지출하는 곳으로, 이곳에서 지출하는 교재교구비 및 급간식비 수준은 <표 III-3-3>과 같다.

<표 III-3-3> 직장어린이집 A의 교재교구비 및 급간식비 기준

항목	지원금액	지원내용
교재교구비	- 아동 1인당 월 15,000원 적용 - 어린이집 1개소당 3년 주기로 30,000,000원 지원	- 순수 교재교구 구입비 및 자체 교재교구 제작을 할 수 있는 재료비 - 어린이집 초기 설치시 및 해당기간 경과시 유구비품 지원금 지원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
급간식비	- 아동 1인당 월 4,500원	- 식사 1회+간식 2회 기준 - 학부모들의 요구사항 충족 (한우 ++등급, 주 4~5회 제철 과일 제공, 유기농, 친환경, 무농약 농산물 및 식자재 사용) - 교직원 급식비 비교려

현재 직장어린이집을 포함하여 민간, 가정, 법인 어린이집 등에서 급간식비 예산서 작성시 교직원 급간식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교직원 급간식비는 교직원 후생경비에 포함되기도 하는데, 급간식 재료를 구입할 때에 영유아와 교직원용으로 따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들은 급간식비 산출시 교직원이 포함되는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IV. 표준보육료 산출

본 장에서는 보육료 산출 원칙 및 산출 과정을 토대로, 교재교구비 및 급간 식비, 2012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표준보육료 단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1. 보육료 산출 원칙

가. 인건비

인건비 산출을 위해 우선적으로 교사의 호봉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김현숙(2008) 및 김혜금(2010)의 연구에 따르면, 모두 6호봉 기준이었다. 그러나 2009 보육 실태조사(표 IV-1-1 및 표 IV-1-2 참조)에 따르면 전체 평균 호봉은 4호봉이었다. 시설 유형을 고려할 경우 2호봉, 5호봉으로 나누어 산출할 수 있다. <표 IV-1-3>은 본 연구에서 인건비 계산시 적용한 교사 대 아동비율 기준이다.

〈표 IV-1-1〉 보육교사의 근무경력 및 호봉

구분	평균 총 근무경력	평균 현시설 경력	평균 호봉
전체	4년 (12.627)	2년 1개월 (13.144)	4.2 (6.780)
시설유형			
국공립	5년 4개월(1.758)	3년 2개월(1.837)	5.1 (0.825)
법인	4년 8개월(1.808)	3년 0개월(1.874)	4.4 (1.888)
민간+기타	3년 9개월(5.174)	1년 9개월(5.363)	3.7 (1.600)
가정	3년 2개월(2.710)	1년 3개월(2.798)	1.8 (0.497)
직장	4년 2개월(1.177)	2년 3개월(1.272)	4.4 (0.973)
통계치(F)	115.1(4)***	258.8(4)***	106.1(4)***
소재			
대도시	4년 2개월(5.166)	2년 1개월(5.340)	4.3(2.683)
중소도시	3년 10개월(5.547)	1년 11개월(5.806)	4.1(2.814)
읍면지역	4년 2개월(1.914)	2년 3개월(1.998)	4.4(1.286)
통계치(F)	7.7(2)***	17.6(2)***	4.2(2)*
규모			
20명이하	3년 3개월(2.893)	1년 3개월(2.988)	2.0(565)
21 - 39명	3년 9개월(2.256)	1년 9개월(2.302)	3.7(856)
40 - 79명	4년 3개월(3.400)	2년 3개월(3.568)	4.4(2.315)
80명 이상	4년 6개월(4.048)	2년 7개월(4.256)	4.7(3.047)
통계치(F)	79.4(3)***	188.1(3)***	103.4(3)***

자료: 보건복지부(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보육시설조사보고서.

*p<.05, **p<.01, ***p<.001

〈표 IV-1-2〉 보육교사의 급여(월 평균 급여 및 연평균 수당)

단위: 만원(명)

구분	월 평균 급여	표준편차	연 평균 수당	표준편차
전체	126.1(13,076)	30.8	148.4(11,020)	104.0
시설유형				
국공립	155.0(1,844)	23.9	147.8(1,635)	88.4
법인	150.2(1,922)	24.1	126.5(1,492)	100.2
민간+기타	113.8(5,329)	23.1	150.5(4,604)	106.0
가정	101.9(2,791)	14.3	148.8(2,348)	100.8
직장	154.0(1,190)	25.7	172.6 (941)	118.3
통계치(F)	3087.3(4)***		30.1(4)***	
소재지				
대도시	126.3(5,328)	31.1	165.3(4,204)	108.3
중소도시	123.6(5,764)	29.8	129.8(4,975)	95.1
읍면지역	132.6(1,984)	31.4	159.9(1,841)	108.9
통계치(F)	63.0(2)***		149.5(2)***	
규모				
20명이하	102.7(2,978)	15.7	151.6(2,494)	104.6
21 - 39명	114.1(2,327)	24.2	163.6(1,999)	111.0
40 - 79명	135.0(3,567)	30.1	155.7(2,966)	105.6
80명 이상	141.6(4,204)	30.1	132.2(3,561)	95.8
통계치(F)	1551.1(3)***		48.9(3)***	
2004년도	96			

자료: 보건복지부(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보육시설조사보고서.

*p<.05, **p<.01, ***p<.001

〈표 IV-1-3〉 연령별 아동과 교사 비율

구분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5세
교사:아동	1:3	1:5	1:7	1:15	1:20

자료: 보건복지부(2012).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표 IV-1-4〉는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에 제시된 인건비 지급 기준표이다. 단, 이는 정부지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따라야할 기준으로 일부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이 지급기준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 그에 따라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교사 인건비 수준은 이보다 훨씬 낮은 경우도 존재한다. 그러나 어린이집 운영을 제대로 하고자 하는 운영자 입장에서는 양질의 교원 수급을 위해 정부지원 인건비 수준과의 격차를 줄이고자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산출하는 보육료 인건비 수준 역시 보육사업 안내에 제시된 정부지원 인건비 수준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표 IV-1-4〉 2012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단위: 원

호봉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보수총액	월지급액	보수총액	월지급액	보수총액	월지급액
1	20,171,400	1,680,950	16,707,360	1,392,280	13,723,440	1,143,620
2	20,716,440	1,726,370	17,191,200	1,432,600	14,127,720	1,177,310
3	21,392,640	1,782,720	17,721,480	1,476,790	14,704,440	1,225,370
4	22,032,960	1,836,080	18,278,040	1,523,170	15,010,800	1,250,900
5	22,679,040	1,889,920	18,839,520	1,569,960	15,341,280	1,278,440
6	24,102,000	2,008,500	20,134,080	1,677,840	16,037,760	1,336,480
7	24,954,840	2,079,570	20,987,400	1,748,950	16,739,400	1,394,950
8	25,512,120	2,126,010	21,371,280	1,780,940	17,013,960	1,417,830
9	26,248,080	2,187,340	21,954,840	1,829,570	17,574,120	1,464,510
10	26,990,880	2,249,240	22,587,120	1,882,260	18,117,240	1,509,770
11	27,923,280	2,326,940	23,407,920	1,950,660	18,848,520	1,570,710
12	28,738,320	2,394,860	24,112,800	2,009,400	19,487,280	1,623,940
13	29,355,000	2,446,250	24,729,720	2,060,810	20,016,000	1,668,000
14	30,015,840	2,501,320	25,280,160	2,106,680	20,566,560	1,713,880
15	30,676,560	2,556,380	25,830,960	2,152,580	21,095,280	1,757,940
16	31,520,520	2,626,710	26,608,680	2,217,390	21,807,000	1,817,250
17	32,159,280	2,679,940	27,181,440	2,265,120	22,335,600	1,861,300
18	32,864,160	2,738,680	27,754,200	2,312,850	22,886,280	1,907,190
19	33,547,080	2,795,590	28,326,840	2,360,570	23,415,000	1,951,250
20	34,141,680	2,845,140	28,899,480	2,408,290	23,965,440	1,997,120
21	35,146,800	2,928,900	29,838,480	2,486,540	24,838,560	2,069,880
22	35,807,640	2,983,970	30,411,240	2,534,270	25,345,200	2,112,100
23	36,402,240	3,033,520	30,918,000	2,576,500	25,851,720	2,154,310
24	36,996,960	3,083,080	31,490,640	2,624,220	26,336,280	2,194,690
25	37,657,920	3,138,160	32,019,120	2,668,260	26,864,880	2,238,740
26	38,274,480	3,189,540	32,547,720	2,712,310	27,349,560	2,279,130
27	38,847,240	3,237,270	33,010,200	2,750,850	27,768,120	2,314,010
28	39,441,960	3,286,830	33,516,840	2,793,070	28,252,680	2,354,390
29	39,992,520	3,332,710	34,067,400	2,838,950	28,715,160	2,392,930
30	40,609,320	3,384,110	34,552,080	2,879,340	29,199,720	2,433,310

자료: 보건복지부(2012). 2012년 보육사업안내.

나. 사업운영비

1) 영유아 급간식비

영유아 급간식비의 경우 서울시 보육정보센터에 의뢰하여 2011년 실제 어린이집에서 운영된 식단표를 바탕으로 연령별 권장 열량 및 영양을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하였

다(부록 2 참조). <표 IV-1-5>는 본 연구에서 적용한 2010년도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영유아 연령별 필요 열량에 관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만 1-2세 영아의 필요열량은 1,000kcal이고 만 3-5세 유아의 필요열량은 1,400kcal로, 2007년도 영양섭취기준과 비교해볼 때 만 1-2세 기본 1,200kcal와 만 3-5세 기본 1,600kcal에서 다소 감소한 수치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루 필요 열량을 나눠서 섭취한다는 가정 하에 평일의 경우 간식 2회(오전, 오후) 및 식사 1회(점심), 토요일의 경우 간식 1회(오전) 및 식사 1회(점심)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급간식비 산출 원리는 김현숙의 연구(2008)와 동일하게 적용한 것으로, 만 0세의 경우 아동에 따라 분유에 대한 선호가 다르기 때문에 보육수요자가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기본 제공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표 IV-1-5〉 영유아 필요 열량

연령	신장(cm)	체중(kg)	필요열량(Kcal)		비고
			1일	점심+간식2회	
만 0-5개월	61.9	6.5	600		분유포함
만 6-11개월	72.3	9.1	730	365	
만 1-2세	85.9	12.2	1000	500	
만 3-5세	102	16.3	1400	700	

자료: 한국영양학회(2010).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개정판.

급간식비 재료비 산출은 대형마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재료의 품질에 따라 중품(중상품)과 상품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자문회의 결과, 지금까지의 선행연구 결과로 산출된 현 보육사업 안내 지침의 1인당 급간식비 기준액이 최저한도의 재료비에 불과한 반면,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양질의 먹거리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도가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급간식비 산출시 상품을 기준으로 하였다.

2) 교재교구비

교재교구비는 어린이집이 보육활동에 필요한 교재교구를 확보하고자 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인증기준에 부합하고 표준보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아동연령별 및 각 놀이영역 항목별로 필요한 교재교구 목록을 조사하고, 교구업체를 통하여 최저단가를 조사하였다. 여기에 교구교재별 내구연한을 반영하여 연간 소모되는 비용을 역산하고, 이를 다시 월로 환산하여 학급당 소요되는 월 평균 교재교구비용을 산출하였다.

〈표 IV-1-6〉 연령별 영역

연령	영역	
만 0세,1세	① 수유·기저귀갈이 영역 ③ 신체영역 ⑤ 창의영역	② 언어 및 휴식영역 ④ 탐색영역
만 2세	① 언어 및 휴식영역 ③ 소꿉영역 ⑤ 탐색조작영역 ⑦ 대근육영역	② 작업영역 ④ 쌓기영역 ⑥ 음률영역
만 3세~5세	① 신체운동·건강영역 ③ 사회관계영역 ⑤ 자연탐구영역	② 의사소통영역 ④ 예술경험영역

자료: 김혜금(2010). 보육료현실화를 위한 표준보육료 산정.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아동의 연령별 교재교구항목 및 연간·월간 소요비용을 보면, 먼저 만 0세 영아반에서의 연간 교재교구비용은 1,025,877원, 월 평균 소요비용은 85,490원이었다. 만 1세 영아반에서는 연간 교재교구비용으로 859,284원, 월 평균 소요비용은 71,607원이었다. 만 1세반의 소요비용이 만 0세반보다 적은 이유는 교재교구를 다루는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내구연한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만 2세 영아반에서는 연간 교구비로 1,095,979원, 월 평균 91,332원을 소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3세반의 경우 연간 1,359,582원, 월 평균 113,299원이었고, 만 4·5세 유아반에서는 연간 1,359,582원, 월 평균 113,299원으로 소요하고 있었다(자세한 산출내역은 부록 3을 참조).

3) 행사비

행사비는 보육과정에서 아동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행사 경비를 말한다. 행사비는 통상적으로 기관이 1년 동안 지출하는 총비용을 기관의 현원수로 나누어 1인당 행사비를 산출한다.

다. 관리운영비

관리운영비는 세출예산서상에서 여비, 수용비·수수료및공공요금, 차량비, 연료비, 기타운영비로 구성된다. 이 중 여비는 종사자의 국내·외출장여비, 수용비·수수료및공공요금은 사무용품비·인쇄비·집기구입비·도서구입비, 공고료·등기료·수

수료, 우편료·전신전화료·전기료·상하수도료·도시가스료, 자동차세·협회비·화재·자동차보험료 등이다. 차량비는 통학용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의 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차량소모품비이다. 기타 운영비에는 위의 네가지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건물임대료, 감가상각비, 건물용자금의 이자, 차량 할부금 등이 있다.

라. 시설비

시설비는 세부 항목으로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로 나뉜다. 모두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이 중에서 시설비는 실외놀이터, 보육실, 사무실, 자료실, 양호실, 주방 등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구성된다. 자산취득비는 비품구입비를 포함하고 토지, 건물, 그밖의 자산 취득은 제외한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건축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수선비, 그 밖의 시설물의 유지 관리비로 구성된다. 시설비 산출을 위해 영유아 어린이집 설치 전문 업체와 교육용품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전문 업체의 자문을 받아 산출한다. 시설비 중 특히 보육실은 연령별로 필요한 시설장비가 차이가 나고, 그 외 실외놀이터와 사무실, 자료실, 양호실, 주방은 연령에 상관없이 일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자산취득비는 교구·설비 이외에 소모품 성격을 지닌 비용이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자산은 내구연한이 1년미만 소모품이라고 가정하고 만 0~2세반과 만 3~5세반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시설장비유지비의 경우 세입,세출예산 내역에서 연도별로 그 금액차가 크게 나는 편이다. 따라서 실태조사에 참여한 시설들의 월 평균비용을 구하여 모든 시설과 모든 연령대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한다.

〈표 IV-1-7〉 시설비 구성

구분	구성	세부구성항목
시설비	시설비	①실외놀이터 ②보육실 ③사무실 ④자료실 ⑤양호실 ⑥주방
	자산취득비	- 만 0~2세 영아반 비품구입비: 약품, 위생장갑, 화장지, 락스, 쿠킹호일, 종이타월 등 약 52 종류
		- 만 3~5세 유아반 비품구입비: 약품, 위생장갑, 뽕뽕이, 티슈, 투명시트지 등 총 73개 종류
시설장비유지비	- 연령별 시설장비유지비 차이남	

주: 시설비의 경우, 실외놀이터 시설비는 50인 이상부터 적용, 자료실 시설비는 70인 이상, 50~70인 시설은 70인 이상 자료실 시설비의 1/2적용, 50인 미만은 미적용, 양호실 시설비는 100인이상 시설부터 적용함.

마.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로 구성된다. 업무추진비는 시설규모별로 정부가 기준액 한도를 정하고 있어 그 이상 지출이 불가능하다.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어린이집 규모별 업무추진비 기준액은 40인 미만은 4,800,000원, 40인 이상 6,000,000원, 70인 이상 6,600,000원, 100인 이상 7,200,000원, 150인 이상 7,800,000원, 200인 이상 8,400,000원이다(표 IV-1-8 참조).

〈표 IV-1-8〉 업무추진비 기준액

현원 기준	업무추진비 기준액	항목별 편성기준		
		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
200인 이상	8,400,000원	자율	4,200,000원	자율
150인 이상	7,800,000원	자율	3,600,000원	자율
100인 이상	7,200,000원	자율	3,000,000원	자율
70인 이상	6,600,000원	자율	2,760,000원	자율
40인 이상	6,000,000원	자율	2,400,000원	자율
40인 미만	4,800,000원	자율	1,800,000원	자율

자료: 보건복지부(2012).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이와 같은 원칙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규모별 및 영유아 연령별 표준보육료 항목별 보육료를 산출할 것이다. 지금까지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선행연구(김현숙·서병선, 2008; 김혜금, 2010)에서 사용된 방법을 토대로, 인건비, 급간식비 및 교재교구비 등을 일정 수준에 맞추어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 세 항목을 제외한 운영비의 경우,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적용하되 본 연구의 실태조사 대상 수가 적은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김혜금, 2010; 임양미, 2010, 2011) 결과를 참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어린이집 규모를 구분한 기준은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으로 적용할 것이다.

2. 표준인건비 산출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는 기본급여, 퇴직금, 사회보험부담비용, 제수당, 기타 후생경비, 일용잡급의 모두 6가지 세부항목을 토대로 산출되었으며, 퇴직금 및

사회보험부담비용 지급비율은 2012년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의 지침(9.08%)을 적용하였다. 기본급여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여기에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수당, 기타후생경비를 합산하여 전체 인건비를 산출하였다.

- 기본급여: 교직원에 대한 기본봉급
- 퇴직금: 교직원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월 보수액의 1/12)
- 사회보험부담비용: 월 보수액의 9.08% 적용(보건복지가족부, 2012)
 -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 월 보수액의 4.5% 적용
 -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금: 월 보수액의 2.9% 적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용자부담금: 월 보수액의 0.189% 적용
 - 고용보험료 사용자부담금: 월 보수액의 0.8% 적용
 - 산재보험료 사용자부담금: 월 보수액의 0.7% 적용
- 제수당: 교직원에 대한 제수당(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 시간외·야간·휴일 근무수당, 연구수당, 급식비 및 기타수당)
- 기타후생경비: 교직원의 건강진단비·급량비·연구연수비·종사자의 상용피복비 등

인건비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2012년 정부지원 어린이집의 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을 적용하였다(표 IV-1-4 참조). 시설규모에 따라 종사자 수가 달라지므로, 시설규모별 영유아 1인당 월 평균 인건비를 산출하였으며 규모별 교직원 배치 기준은 「영유아보육법」과 선행연구(김현숙·서병선, 2008; 김혜금, 2010)의 어린이집 규모별 반 편성기준 및 종사자 수를 적용하였다(표 IV-2-1 참조).

〈표 IV-2-1〉 어린이집 규모별 표준교직원수

단위: 명/반

기본형	원장	보육교사	취사원	운전기사	영양사	간호사	반편성 기준				
							0세	1세	2세	3세	4·5세
							1:3	1:5	1:7	1:15	1:20
20인(4학급)	1	4	1	-	-	-	1	2	1		1
50인(5학급)	1	5	1	1	-	-	1	1	1	1	1
77인(7학급)	1	7	1	1	-	-	1	1	2	1	2
97인(9학급)	1	9	2	1	-	-	1	2	2	2	2
124인(11학급)	1	11	2	1	1/5	1/5	1	2	3	2	3
142인(13학급)	1	13	3	1	1/5	1/5	2	2	3	3	3
169인(15학급)	1	15	3	1	1/5	1/5	2	2	4	3	4

주: 1) 교사 대 아동비율 및 규모별 교직원 수는 「영유아보육법」에 기초.
 2) 20인 이하 시설(가정보육시설)은 운전기사, 영양사, 간호사 미채용으로 간주.
 3) 20인 이하 시설(가정보육시설) 만 3,4·5세반은 혼합연령반 구성이 다수임을 반영.
 4) 김현숙·서병선(2008). 김혜금(2010). 본 연구의 실태조사를 토대로 인력현황 재구성.

어린이집 인건비, 특히 보육교사 인건비의 경우 근무연한에 따라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표준보육료를 제시할 때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의 산출 기준이 되는 평균 호봉을 어떻게 정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 전국 보육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어린이집 종사자의 평균 경력연수를 적용하여,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11호봉(가정어린이집은 4호봉), 보육교사의 경우 5호봉(가정어린이집은 3호봉)을 적용하였다.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취사원, 영양사, 간호사, 운전사의 경우 근무기간에 대한 조사 자료가 없어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원 평균 급여수준에 가장 근접한 1호봉을 적용하였다. 2012년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표 IV-1-4 참조)을 토대로 교직원 호봉을 적용하여 기본급 산출 결과, 가정어린이집 원장은 1,836,080원(4호봉), 그 외 어린이집 원장은 2,326,940원(11호봉), 가정어린이집 교사는 1,476,790원(3호봉), 그 외 어린이집 교사는 1,569,960원(5호봉), 운전기사, 취사원, 영양사, 간호사는 1,143,620원(1호봉)이 각각 적용되었다. 또한 기본급여 외의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비용을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 어린이집 교직원 1인당 월 평균 표준인건비는 <표 IV-2-2>와 같다.

<표 IV-2-2> 어린이집 교직원 1인당 표준인건비

단위: 원/월

구분	원장 11호봉	원장 4호봉	보육교사 5호봉	보육교사 3호봉	직원 1호봉
월 기본급여	2,326,940	1,836,080	1,569,960	1,476,790	1,143,620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기본급의 1/12)	193,912	153,007	130,830	123,066	95,301
사회보험시설부담비용 (기본급의 9.08%)	211,286	166,716	142,552	134,093	103,840
총 인건비	2,732,138	2,155,803	1,843,342	1,733,948	1,342,761

주: 직원인건비 항목에는 취사원, 운전기사, 영양사, 간호사가 포함됨.

또한 영유아 1인당 부담하는 월 평균 인건비를 제시하기 위해 어린이집 정원 규모에 따른 인건비를 산출하였다. <표 IV-1-4>과 <표 IV-2-1>을 토대로 규모에 따른 필요인력의 월별 인건비에 영유아 정원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보육교사의 인건비는 별도로 반별 정원을 적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실태조사와 선행연구(김혜금, 2010; 임양미, 2010, 2011)를 토대로 영유아 1인당 월 평균 제수당, 후생경비를 합산하여 최종 인건비를 산출하였다(표 IV-2-3 참조).

〈표 IV-2-3〉 연령별 규모별 영유아 1인당 월 평균 표준인건비

단위: 원/월

구분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만 5세
20인	803,393	572,200	473,117	341,007	312,108	312,108
50인	742,994	497,214	391,881	251,435	220,713	220,713
77인	697,919	452,140	346,806	206,361	175,638	175,638
97인	694,551	448,772	343,438	202,993	172,271	172,271
124인	681,441	435,662	330,328	189,883	159,160	159,160
142인	682,405	436,626	331,292	190,847	160,124	160,124
169인	671,548	425,769	320,435	179,990	149,267	149,267

주: 영유아 1인당 월 평균 보육교사 인건비의 경우 연령별 반 정원을 적용해 계산하였음.
영유아 1인당 월 평균 기타 직원 인건비 및 제수당, 후생경비, 일용잡급은 어린이집 규모별 보육정원을 적용해 계산하였음.

3. 표준사업운영비 산출

사업운영비는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행사비로 구성된다. 그에 따라 적정수준의 교재교구 및 급간식 제공을 위해 요구되는 영유아 1인당 월 평균 비용을 산출하고, 어린이집 규모별 영유아 1인당 월 평균 행사비를 합산하였다.

- 급간식비: 보육아동 및 종사자를 위한 쌀, 보리 등의 주식, 부식 구입비 및 간식비 등
- 교재교구비: 교재교구 구입 및 제작비
- 행사비: 보육과정에서 아동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행사경비

가. 급간식비

급간식비는 2011년 어린이집에서 실제 제공한 식단표를 바탕으로 서울시 보육정보센터 영양사의 자문을 받아 영유아 영양을 고려하여 산출하였다(부록 2 참조). 식재료 단가 시장조사²⁾를 통해 유아 1인당 일일 급간식비를 계산하였으며, 평일에는 오전간식, 점심, 오후간식을 기본제공으로, 토요일에는 오전간식, 점심을 기본제공으로 하였다. 그 결과 산출된 급간식비는 <표 IV-3-1>과 같다.

2) 식재료 가격조사는 중품 재료를 사용하는 일반 단가를 적용하되 식재료별 가격조사는 푸드머스(풀무원 급식업체 - 주거래업체), 은혜청과, 럭키떡방앗간, DC마트(농수산물시장내 - 야채, 청과, 정육류등), 뚜레쥬르 등 대형 식재료 판매장의 고시 가격을 통해 이루어짐.

〈표 IV-3-1〉 영아 1인당 표준급간식비

단위: 원

구분	영아		유아	
	일일 급간식비	월별 급간식비1)	일일 급간식비	월별 급간식비1)
3월	1,752	43,800	2,522	63,050
6월	1,703	42,575	2,418	60,450
9월	1,791	44,775	2,543	63,575
12월	1,750	43,750	2,476	61,900
전체	1,749	43,725	2,490	62,250

주: 1개월간 25일 운영 기준.

나. 교재교구비

교재교구비는 어린이집 평가인증기준에 부합하면서 표준보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교재교구목록을 기준으로 보육전문가 검토 아래 교재교구비를 조사하였다. 교구업체(예: 파랑새 교육사, 보육사)의 교재교구 구입가를 조사하여 최저가격을 적용하고, 만 0~5세아 연간 소요비용을 조사하였다. 이것을 영유아 1인당 월 평균 교재교구비로 환산하였다(표 IV-3-2 참조).

〈표 IV-3-2〉 영유아 1인당 표준교재교구비

단위: 원

구분	연간 소요비용 (1반 기준)	월간 소요비용 (1반 기준)	월 표준교재교구비 (영유아 1인 기준)
만 0세반	2,749,070	229,089	76,363
만 1세반	2,516,630	209,719	41,944
만 2세반	3,023,670	251,973	35,996
만 3세반	2,148,660	179,055	11,937
만 4~5세반	2,850,960	237,580	11,879

다. 행사비

본 연구의 보육실태조사에서 산출된 행사비 금액을 토대로 어린이집 규모별로 만 0~5세아 1인당 월 평균 행사비를 산출한 결과는 <표 IV-3-3>과 같다.

〈표 IV-3-3〉 어린이집 규모별 만 0~5세아 1인당 월 평균 행사비

단위: 원/월

구분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만 0~5세	8,242	3,297	2,141	1,699	1,329	1,161	975

라. 총 사업운영비

제시된 만 0~5세아 1인당 월 평균 급간식비(영아용, 유아용) 및 교재교구비와 어린이집 규모별 영유아 1인당 월 평균 행사비를 합산한 사업운영비를 제시한 결과는 <표 IV-3-4>와 같다.

<표 IV-3-4> 규모별 영유아 표준사업운영비

단위: 원/월

구분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만 5세
20인	128,330	93,911	87,963	82,429	82,371	82,371
50인	123,385	88,966	83,018	77,484	77,426	77,426
77인	122,229	87,810	81,862	76,328	76,270	76,270
97인	121,787	87,368	81,420	75,886	75,828	75,828
124인	121,417	86,998	81,050	75,516	75,458	75,458
142인	121,249	86,830	80,882	75,348	75,290	75,290
169인	121,063	86,644	80,696	75,162	75,104	75,104

4. 표준관리운영비 산출

영유아 1인당 월 평균 관리운영비는 본 연구의 운영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6 가지 항목(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료비, 기타운영비)에 대한 1인당 규모별 월 평균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 여비: 종사자의 국내·출장비
-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인쇄비·집기구입비·도서구입비·공고료·수수료·등기료·운송비·통행료 및 주차료·소규모수선비·포장비·의료비·약품구입비 등
- 공공요금: 우편료, 전신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및 오물수거료, 도시가스
- 제세공과금: 법령에 의해 어린이집에서 지급하는 제세(자동차 세 등), 협회비, 화재·자동차 보험료
- 연료비: 보일러 및 난방시설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
- 기타운영비: 기타 운영경비로서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시설임대료, 감가상각비, 건물융자금의 이자, 차량구입비 등)

본 연구의 실태조사와 선행연구(김혜금, 2010; 임양미, 2010, 2011) 결과 어린이집 유형별로 차량운행 실태에 있어 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차량운영비는 제외하였다. 일례로 III장에서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은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경우가

85.7%, 가정어린이집은 50.0%인 반면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7.4%에 불과하다. 따라서 전체 어린이집에 차량운영비를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관리운영비에서 차량운영비는 제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표본 수의 부족으로 시도하지 않았으나 표준관리운영비의 경우 특히 차량운행과 관련한 비용은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을 구분하여 산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보육실태조사에서 산출된 관리운영비 금액을 토대로 어린이집 규모별로 만 0~5세아 1인당 월 평균 관리운영비를 산출한 결과는 <표 IV-4-1>과 같다.

<표 IV-4-1> 어린이집 규모별 만 0~5세아 1인당 월 평균 관리운영비

단위: 원/월							
구분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만 0~5세	144,370	57,748	37,499	29,767	23,285	20,334	17,085

5. 표준재산조성비 산출

영유아 1인당 월 평균 재산조성비는 운영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출하였다. 재산조성비의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어린이집 기관당 공통 면적을 공유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연령별 아동 수로 나누지 않고 어린이집 전체 아동 현원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자산취득비와 시설장비유지비 연간 지출금액을 각각 영유아 1인당 월 평균 금액으로 환산하고, 이 두 항목을 합산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 자산취득비: 어린이집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그밖에 자산의 취득비
- 시설장비유지비: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기구, 비품수선비, 기타 시설물 유지관리비

본 연구에서 산출한 표준재산조성비는 <표 IV-5-1>과 같다.

<표 IV-5-1> 규모별 영유아 1인당 표준재산조성비

단위: 원/월							
구분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만 0~5세	7,097	6,446	5,747	4,776	3,736	3,262	2,741

6. 표준업무추진비 산출

영유아 1인당 월 평균 업무추진비는 본 연구의 실태조사와 선행연구(김혜금, 2010; 임양미 외, 2011, 2012)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 각각의 3가지 항목에 대한 어린이집 규모별 영유아 1인당 월 평균 부담액을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월 평균 업무추진비 규모별 정원을 적용하여 영유아 1인당 월 평균 업무추진비가 산출되었다.

- 기관운영비: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 직책급: 원장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 회의비: 운영위원회, 부모회의 등 각종회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본 연구에서 산출한 영유아 1인당 월 평균 업무추진비는 <표 IV-6-1>과 같다.

<표 IV-6-1> 어린이집 규모별 만 0-5세아 1인당 월 평균 업무추진비

단위: 원/월							
구분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만 0~5세	8,423	7,457	3,090	3,090	2,447	2,137	1,796

7. 표준보육료 산출 단가

표준보육료는 영유아 1인당 표준인건비에 영유아 1인당 운영비 항목을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선행연구와 보건복지부(2012)의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참고하여 적정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와 정원 충족을 기준으로 어린이집 규모별 운영비를 차등 적용하고, 평균 물가 상승률 3.0%를 적용하여 산출된 보육료 수준은 <표 IV-7-1>과 같다.

<표 IV-7-1> 어린이집 규모 및 연령별 보육료

단위: 원								
	인건비	사업 운영비	관리 운영비	재산 조성비	업무 추진비	합계	물가 상승분	최종 보육료
만 0세 20인	803,393	128,330	47,224	7,097	8,423	994,467	29,834	1,024,301

(표 IV-7-1 계속)

	인건비	사업 운영비	관리 운영비	재산 조성비	업무 추진비	합계	물가 상승분	최종 보육료
50인	742,994	123,385	47,646	6,446	7,457	927,928	27,838	955,766
77인	697,919	122,229	35,146	5,747	3,090	864,131	25,924	890,055
97인	694,551	121,787	28,056	4,776	3,090	852,260	25,568	877,828
124인	681,441	121,417	21,574	3,736	2,447	830,615	24,918	855,533
142인	682,405	121,249	18,623	3,262	2,137	827,676	24,830	852,506
169인	671,548	121,063	15,374	2,741	1,796	812,522	24,376	836,898
만 1세								
20인	572,200	93,911	47,224	7,097	8,423	728,855	21,866	750,721
50인	497,214	88,966	47,646	6,446	7,457	647,729	19,432	667,161
77인	452,140	87,810	35,146	5,747	3,090	563,933	17,518	601,451
97인	448,772	87,368	28,056	4,776	3,090	572,062	17,162	589,224
124인	435,662	86,998	21,574	3,736	2,447	550,417	16,513	566,930
142인	436,626	86,830	18,623	3,262	2,137	547,478	16,424	563,902
169인	425,769	86,664	15,374	2,741	1,796	532,344	15,970	548,314
만 2세								
20인	473,117	87,963	47,224	7,097	8,423	623,824	18,715	642,539
50인	391,881	83,018	47,646	6,446	7,457	536,448	16,093	552,541
77인	346,806	81,862	35,146	5,747	3,090	472,651	14,180	486,831
97인	343,438	81,420	28,056	4,776	3,090	460,780	13,823	474,603
124인	330,328	81,050	21,574	3,736	2,447	439,135	13,174	452,309
142인	331,292	80,882	18,623	3,262	2,137	436,196	13,086	449,282
169인	320,435	80,696	15,374	2,741	1,796	421,042	12,631	433,673
만 3세								
20인	341,007	82,429	47,224	7,097	8,423	486,180	14,585	500,765
50인	251,435	77,484	47,646	6,446	7,457	390,468	11,714	402,182
77인	206,261	76,328	35,146	5,747	3,090	326,672	9,800	336,472
97인	202,933	75,886	28,056	4,776	3,090	314,801	9,444	324,245
124인	189,883	75,516	21,574	3,736	2,447	293,156	8,795	301,951
142인	190,847	75,348	18,623	3,262	2,137	290,217	8,707	298,924
169인	179,990	75,162	15,374	2,741	1,796	275,063	8,252	283,315
만4·5세								
20인	312,108	82,371	47,224	7,097	8,423	457,223	13,717	470,940
50인	220,713	77,426	47,646	6,446	7,457	359,688	10,791	370,479
77인	175,638	76,270	35,146	5,747	3,090	295,891	8,877	304,768
97인	172,271	75,828	28,056	4,776	3,090	284,021	8,521	292,542
124인	159,160	75,458	21,574	3,736	2,447	262,375	7,871	270,246
142인	160,124	75,290	18,623	3,262	2,137	259,436	7,783	267,219
169인	149,268	75,014	15,374	2,741	1,796	244,193	7,326	251,519

주: 물가상승률은 3.0%로 적용함.

이 중 선행연구(김현숙, 서병선, 2008; 김혜금, 2010)와 동일하게 97인 규모의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2012년 표준보육료를 제시하면 <표 IV-7-2>와 같다. 만 0세아 표준보육료는 877,828원, 만 1세아 표준보육료는 589,224원, 만 2세아 표준보육료는 474,603원, 만 3세아 표준보육료는 324,245원, 만 4세아 및 만 5세아 표준보육료는 292,542원이었다. 항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영아의 경우 인건비 비중이 더 높고 유아의 경우 사업비 비중이 더 높은 편이다.

<표 IV-7-2> 2012년 표준보육료(97인 어린이집 기준)

단위: 원

구분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만 5세
인건비	694,551 (79.1%)	448,772 (76.2%)	343,438 (72.3%)	202,993 (62.6%)	172,271 (58.9%)	172,271 (58.9%)
업무추진비	3,090 (0.4%)	3,090 (0.5%)	3,090 (0.6%)	3,090 (0.9%)	3,090 (1.1%)	3,090 (1.1%)
관리운영비	28,056 (3.2%)	28,056 (4.7%)	28,056 (5.9%)	28,056 (8.6%)	28,056 (9.5%)	28,056 (9.5%)
사업운영비	121,787 (13.9%)	87,368 (14.8%)	81,420 (17.2%)	75,886 (23.4%)	75,828 (25.9%)	75,828 (25.9%)
재산조성비	4,776 (0.5%)	4,776 (0.8%)	4,776 (1.0%)	4,776 (1.5%)	4,776 (1.6%)	4,776 (1.6%)
합계	852,260	572,062	460,780	314,801	284,021	284,021
물가상승률 (3.0%)	25,568	17,162	13,823	9,444	8,521	8,521
최종보육료	877,828	589,224	474,603	324,245	292,542	292,542

한편 본 연구의 보육료를 선행연구 및 현재 중앙정부의 보육료 수준과 비교해 본 결과는 <표 IV-7-3>과 같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표준보육료 산출 단가는 김현숙과 서병선(2008)의 연구에 비해 최소 9,142원에서 최대 166,518원 상승한 금액으로 (만 0세: 166,518원, 만 1세: 76,424원, 만 2세: 65,403원, 만 3세: 27,845원, 만 4, 5세: 9,142원), 만 0세 상승금액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만 4,5세의 상승금액수준이 가장 낮았다. 그러나 김혜금(2010)의 연구에서 제시된 보육료 수준에 비해서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그 이유는 투입된 운영비 항목내용과 시설비 산출과정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시설비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제시된 평균 시설비 비용을 투입한 반면 김혜금(2010)의 연구에서는 실제 어린이집에 필요한 시설항목을 도출 후 그에 대한 비용을 산출하여 투입함으로써 실제비용과 기대비용 간의 차이로 인해 두 연구의

보육료 수준이 달라졌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보육료와 2012년 현재 어린이집 보육료 수준을 비교해 본 결과, 영유아 보육서비스 질적수준 제고를 위해 최소 68,224원에서 최대 122,828원의 금액(만 0세: 122,828원, 만 1세: 68,224원, 만 2세: 73,603원, 만 3세: 127,245원, 만 4세: 115,542원, 만 5세: 92,542원)이 상향조정될 필요가 있다.

〈표 IV-7-3〉 선행연구 및 정부지원 단가와외의 표준보육료 수준 비교

단위: 원

구분	김현숙·서병선 ¹⁾ (2008)	김혜금 ¹⁾ (2010)	본 연구 ¹⁾ (2012)	정부지원 보육료 ²⁾ (2012)
만 0세	711,300	1,012,325	877,828	755,000 ³⁾
만 1세	512,800	695,214	589,224	521,000 ⁴⁾
만 2세	409,200	550,886	474,603	401,000 ⁵⁾
만 3세	296,400	385,646	324,245	197,000
만 4세	283,400	344,285	292,542	177,000
만 5세	284,200			200,000

주: 1) 표준보육료 산출 기준은 97인 어린이집 기준

2) 기본보육료 포함한 금액임

3) 만 0세 보육료 755,000원 = 보육료 394,000원 + 기본보육료 361,000원

4) 만 1세 보육료 521,000원 = 보육료 347,000원 + 기본보육료 174,000원

5) 만 2세 보육료 401,000원 = 보육료 286,000원 + 기본보육료 115,000원

V. 결론

2000년대 이후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표준보육료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더 나은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해 표준보육료의 법제화까지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12년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필요한 보육료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 가정, 민간, 법인,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운영 및 운영비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여 연령별·규모별 2012년 표준보육료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전국 지역을 대상으로 가정, 민간, 법인, 국공립의 대표적인 어린이집 유형을 모두 포괄하여 조사하였다는 점, 조사항목별 연간 어린이집 현장에서 지출되고 있다고 보고되는 비용을 토대로 영유아 1인당 항목별 지출수준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이를 통해 산출된 표준보육료에는 다양한 유형의 어린이집 현장에서 연령별·규모별로 실제 지출되고 있는 현실적인 수준이 반영되었다.

그러한 한편으로, 본 연구에서는 표준보육료 산출시 어린이집 기준 규모를 97인 시설로 적용하여 선행연구 및 2012년 현행 정부 지원단가와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50인 및 75인 시설이 가장 많다. 이에 유형별 어린이집에서 필요로 하는 금액을 조사할 때에는 20인, 50인, 75인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선행연구 및 2012년 현행 정부 지원단가 대비 차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시할 수 있는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안정적인 인건비 지원방안 수립

표준보육료 산출 관련 선행연구들(김현숙·서병선, 2008; 김혜금, 2010)에서는 보육료 산정에서 기본급여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시간외 수당 및 일용직 급여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현재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기본

근무시간(평일 8시간)과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보육시간(평일 10시간+주말 운영)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보육교사에게 시간외 근무 및 주말근무가 교대근무 형태로 요구되고 있으며,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 시 많은 비용이 복잡하게 정산되고 있다. 보육교사에게 긴급 상황 발생 시 이를 대체하여 투입될 보육인력 또한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어린이집은 대체교사 인건비를 비롯한 부모교육 강사료, 주방보조 인건비, 취사부대체 인건비, 운전기사대체 인건비, 기타(김장도우미 외) 인건비를 일용잡급(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으로 회계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의 지급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간 외 수당 지급, 임시직 및 일용직에 대한 고려 등을 통해 어린이집 인건비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보조교사 등의 업무 보조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인건비 항목에 반영하여 0~12시간/일 근무를 하는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해 주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령의 어린이집 종사자 관련 규정 또한 그에 맞게 개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체교사 인건비의 경우 매년 대체교사 활용정도를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우리와 비슷한 상황으로 표준보육료를 지급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표준보육료 산정 시 교원인건비에서 기본급여 이외에 교사수당 및 대체교사, 임시·일용직 인건비를 반영하여 보육의 질을 유지하고자 하고 있다.

2. 영유아의 보육료 격차 조정

본 연구의 연령별 표준보육료 산출단가를 볼 때, 영유아의 보육료 격차를 합리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 보육료 지원수준은 영아 1인당 지원금액이 더 높기 때문에 만 3세 이상의 유아보육료 현실화가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2013년부터는 누리과정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역전될 전망이다.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고려할 때, 올 해 영아반 교사에 대한 우대 논란이 벌어졌던 것과 반대로 내년에는 유아반 교사에 대한 우대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현재의 운영방식 아래 영아에서 유아로 전환하는 만 3세아가 가장 운영이 어려운 연령대로 지적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제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정부지원 보육료에서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연령별증가에 따른 인

건비 및 운영비 지원액을 보다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반편성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구간지원 방식 적용항목과 비적용 항목 구분

표준보육료 지원 항목에서 구간지원 방식으로 지원할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구분하여 지원대상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반 편성 및 시설운영은 어린이집 1개소의 전체 규모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보육료 지원은 현원 아동 1인을 기준으로 하는 구간적용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다. 또한 연구결과 산출된 표준보육료의 항목별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인건비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비중이 다소 줄어들기는 하지만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특히 반 편성이 애매한 연령대가 존재할 수 있는 40-50인 규모의 원에서 교사 및 시설에 대해 안정적인 지원을 보장하기 힘든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건비나 시설비의 경우에는 연간 어린이집의 운영 규모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급간식비의 경우 아동 현원을 기준으로 한 현행 지원 방식을 적용하는 등과 같은 구간지원방식의 구분된 정책이 필요하다.

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적정 재원 마련에 대한 협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긴밀한 협의 과정을 통해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표준보육료의 적정 수준을 결정할 뿐 아니라, 해당 재원의 마련 방안에도 대해서도 합의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어린이집은 서울형 어린이집의 도입을 비롯하여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는 내용이 매우 상이하다. 같은 규모의 어린이집이라 하더라도 그 어린이집이 위치한 지역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 가능여부 및 보육 운영수준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에 따라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또한 단기간의 시혜성 정책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보육료 지

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도시 지역과 같이 세수가 풍부한 지역에서는 단기적으로 충분한 재정을 약속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데에는 많은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방단체의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중앙정부의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공약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하였다는 비판을 가하기도 한다. 보육 정책은 우리나라의 차후 세대를 육성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단기간의 시혜성 정책으로 그치지 않고, 장기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려면 재정 지출에 대한 고민 뿐 아니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5. 투명하고 합리적인 감독 및 관리 방안 수립

보육재정이 어린이집 현장에서 사용되는 과정에 대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감독·관리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현재의 표준보육료 관련 지원은 단기간 급격하게 관심과 수요가 확산되었다. 이로 인해 단가 산출에 초점이 맞춰지고, 상대적으로 관리 및 감독 절차는 미흡한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오랫동안 종사해 온 어린이집을 재정상 이유로 문을 닫는 한편, 다른 일각에서는 제도상 허점을 악용하여 어린이집을 사유재산 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 지원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는 조치가 도입되었으나, 어린이집 현장과 맞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표준보육료 지원 체계 하에서는 재정운영이 항목별로 지정되어, 어떤 항목에서 비용이 남고 다른 항목에서 추가 지출이 필요하게 되더라도 항목 간 금액의 이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연말 결산 시 차액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필요한 영역에 사용하지 못하고 해당 항목 내 필요 이상의 과다지출을 하는 비효율성이 나타난다. 또한 현재 표준보육료 지원은 원아 1인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에 따라 학급 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거나 인건비를 보조받는 것은 수월한 편이다. 그러나 전체 기관 운영에는 필요하지만 여러 학급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는 공용 공간, 공용 시설 및 공용 물품에 대해서는 지출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학교 재정의 기본 원칙을 적용하여, 보육료 산출 시에는 항목별로 산출 하더라도, 지출 시에는 각 기관별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6. 보육료 산정 관련 제언

보편 복지를 위해 영유아의 표준보육료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실제 부모부담액을 줄여주는 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행 보육체제에서는 보육료를 보편복지로 하건 선별복지로 하건 부모들이 실제 부담하는 비용 면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다. 보육료 전액지원을 받은 아동들이 보육시설 이용 시 기타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 부모들이 지불하는 비용은 보육료와 기타 필요경비로 구성된다. 정부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해도 기타필요경비가 그만큼 인상되면 부모의 부담은 그대로이다.

실제로 민간어린이집은 재정 운영상의 이유로 해마다 기타 필요경비를 계속 인상해오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어린이집의 실제 운영에 비추어 표준보육료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즉, 실제 현장에서의 추세와 고민을 반영한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표준보육료 산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보육료 산정을 위해 업무추진비, 관리운영비, 재산조성비에 대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금액산정이 요구된다. 또한 인건비, 급간식비 등의 경우 매년 중앙정부의 인건비 산정기준과 중앙보육정보센터 식단을 중심으로 하는 금액 산정이 필요하다. 교재교구비 역시 평가인증에 부합되고 표준보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목록을 중심으로 시장조사를 통하여 표준화된 교재 교구비용산정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자료가 구비될 경우 보육료 산정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둘째, 차량운영비의 경우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차량운행실태를 고려하여 보육료 외 별도수납을 원칙으로 하되, 차량운영비 금액 수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납한도액을 설정하는 접근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현행법상 취사원을 별도로 채용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영아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가 취사원 겸직하는 것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즉, 취사원 별도 채용 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취사원 인건비를 보육료에 별도로 산정하는 과정이 향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명순·황옥경(2009), 영유아 보육 선진화 정책 방안,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김현숙·서병선(2008),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김현숙(2009), 보육시설 유형별 표준보육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58, pp.21-40.
- 김혜금(2010), 보육료현실화를 위한 표준보육료 산정,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박기백(2005), 표준교육, 교육단가 및 적정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변용찬·임유경(2002), 표준보육단가 평가와 단가 산출, 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2012),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 서문희·박수연(2008),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시간 유형별 비용 차등 적용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유해미·유희정·장경희(2011), 일본의 보육정책 동향(II), 육아정책연구소.
- 일본 후생노동성고용균등 아동가정국보육과(2011), 2011년도 후생노동성 보육대책 관계예산.
- 임양미(2010), 경기도 민간·가정시설 보육료 산정 연구 - 만 3-5세아를 중심으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임양미(2011), 2012년 경기도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산정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최성은·우석진(2009) 보육지원정책의 적정성 및 효과성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Miho Taguma, Ineke Litjens and Kelly Makowiecki(2012), Quality Matter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New Zealand 2012, OECD.

Abstract

An Investigation of the Current Costs of Standard Childcare

Meewha Lee Moon-hee Suh Yangmi Lim Jin-kyung Lee

Recently, childcare has become a policy priority in Korea and thus a large portion of the government's budget has been allocated to the childcare sector. The current study aimed to calculate the standard childcare costs to increase economic efficiency, and consequently be able to improve the quality of childcare services in Korea.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307 childcare centers that were selected by statements of accounts. They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4 types: public, corporate, private, and family care. Focus group interviews, surveys, and case studies were conducted, and the data were contextualized by a literature review explor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earch on childcare cost policy, all with a view to establishing what constitutes fair childcare costs. Descriptive analyses, chi-square, and ANOVA were used for data analyses. Findings include the average annual expenditure per capita, and suggest the standard childcare cost, differentiated according to children's age and size of the facility.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monthly costs per child decrease as the child gets older. Specifically, the labor costs and the management costs of childcare curriculum are decreased greatly. Second, there are some different needs and spending by childcare types. Usually, family care centers show less spending and public care centers have less desires to increase childcare costs. Third, the standard childcare costs were higher than the actual average childcare costs when the quality of food and educational materials were taken into account, in which case, the figures are as follows: 877,878 won for a child under the age of 1; 589,224 won for a 1-year-old child; 474,603 won for a 2-year-old child; 324,245 won for a 3-year-old child;

and 292,542 won for a 4- or 5-year old child. Lastly, as regards the size of the childcare facility, the study showed that the smaller the childcare center is, the higher the per capita cost of standard childcare.

부 록

부록 1. 어린이집 보육 투입비용 조사표 (원장용)

부록 2. 어린이집 영유아급간식비 식단

부록 3. 어린이집 연령별 교재교구 목록

부록 1. 어린이집 보육 투입비용 조사표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하여 본 연구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어린이집 보육 투입비용 설문조사(원장용)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영유아 보육 및 유아교육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2012년 기본과제로 「표준보육료 산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표준보육료 산정시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로서, 영유아를 보육하는데 어린이집에서 투입되는 연간 비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표준보육료 산출 연구를 위한 자료로서만 활용되며, 본 연구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에 진솔하게 응답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2년 8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이 영

ID

주소	_____시·도 _____구·시·군 _____읍·면·동 _____로 _____길 _____통·리 _____반(공동주택명 _____동 - _____호)		
응답자명	_____	연락처	_____



7. 귀하는 원장으로서 다음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고용(월급) 원장 ② 대표자 겸 원장

8. 귀하의 원장(시설장)으로서의 경력(보육교사 경력 제외)은 총 얼마나 됩니까?

- ① 이전 어린이집: _____년 (이전 어린이집 경력이 없을 경우 기입하지 마십시오.)
 ② 현재 어린이집: _____년

9. **2012년 현재** 귀하의 어린이집 영유아 정원 및 총 현원수를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십시오.

- ① 정원 _____명 ② 총 현원 (수) _____명

9-1. **2012년 현재** 귀하의 어린이집 **만 0~5세 영유아 현원 수**를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십시오.
 (☞ 합계는 9번의 총 현원 수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구분	만 0세아	만 1세아	만 2세아	만 3세아	만 4세아	만 5세아	합 계
현원	명	명	명	명	명	명	명

10. **2012년 현재** 귀하의 어린이집 총 교사 수를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십시오.

총 교사 (수) _____명

10-1. **2012년 현재** 귀하의 어린이집 **해당 연령 학급 및 교사 수**를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십시오.

구 분	단일 연령 학급		구 분	혼합 연령 학급	
	학급 수	교사 수		학급 수	교사 수
만 0세반	반	명	만 0,1세 혼합반	반	명
만 1세반	반	명	만 1,2세 혼합반	반	명
만 2세반	반	명	만 2,3세 이상 혼합반	반	명
만 3세반	반	명	만 3,4세 이상 혼합반	반	명
만 4세반	반	명	만 4,5세 이상 혼합반	반	명
만 5세반	반	명			

10-2. **2012년 현재를 기준으로** 귀하의 어린이집에서 고용한 다음의 직원 수를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십시오.

해당되는 인원이 없으면 반드시 '0'이라고 기입하여 주십시오.

구분	종사자 수	구분	종사자 수
원장(시설장)	명	영양사	명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명	간호사(조무사)	명
		취사원	명
보조교사(비담임교육도우미)	명	관리인 / 사무원	명
		운전사(별도로 고용한 경우)	명

11. 귀하의 어린이집 건물형태는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 ① 단독건물 ② 상가건물 ③ 주택
 ④ 아파트 ⑤ 종교단체 건물 ⑥ 공공시설 복합건물
 ⑦ 공동주택 어린이집(예: 관리동 어린이집) ⑧ 기타()

12. 귀 어린이집의 임대여부 및 해당유형에 V표시해 주십시오.

- ① 자가(임대아님) (☞ 13번 문항으로) ② 자가(용자) (☞ 12-1번 문항으로)
 ③ 전세 (☞ 12-2번 문항으로) ④ 전월세 (☞ 12-2번 문항으로)
 ⑤ 월세 (☞ 12-2번 문항으로) ⑥ 무상(지자체 지원) (☞ 13번 문항으로)
 ⑦ 기타 (☞ 13번 문항으로)

※ 귀 어린이집 건물이 자가(용자)일 경우에만 응답해 주십시오.

12-1. 귀 어린이집의 최초용자금과 현재 남은 용자금은 얼마입니까?

* 금액 단위를 원(예: 267,000원)으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① 최초 용자금: ()원

② 현재 남은 용자금: ()원

(☞응답 후 13번 문항으로)

※ 귀 어린이집이 임대(전세, 전월세 또는 월세)인 경우에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12-2. 임대하고 있는 경우 금액과 기간이 어떠한지 해당되는 곳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 금액 단위를 원(예: 267,000원)으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전세의 경우	① 전 세 금 액: ()원 ② 계 약 기 간: ()개월
월세의 경우	③ 월세 보증금: ()원 ④ 월 지 급 액: ()원 ⑤ 기 간: ()개월

(☞응답 후 13번 문항으로)

13. 귀하의 어린이집에는 실외놀이터가 있습니까?

- ① 있음 ② 인근에 어린이놀이터 있음 ③ 없음

14. 귀하의 어린이집은 일주일 기준으로 며칠 운영됩니까?

- ① 월요일부터 금요일 ② 월요일부터 토요일 ③ 월요일부터 일요일

15. 귀하의 어린이집 운영시간(1일 기준)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 ① 평 일: 시작 ()시 ()분 ~ 종결 ()시 ()분 / 총 운영시간: ()시간 ()분
 ② 토요일: 시작 ()시 ()분 ~ 종결 ()시 ()분 / 총 운영시간: ()시간 ()분
 ③ 휴 일: 시작 ()시 ()분 ~ 종결 ()시 ()분 / 총 운영시간: ()시간 ()분

16. 귀하의 어린이집에서는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① 차량 운영함 (☞ 16-1번 문항으로) → ② 차량 운영하지 않음(☞ 17번 문항으로)

16-1. 차량 운영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 ① 자체차량 + 운전기사 별도 채용
 ② 자체차량 + 운전기사 별도 채용하지 않음
 ③ 외부차량 사용하고 정액으로 사용료 제공

16-2. 귀하의 어린이집에서는 올해부터 차량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해 차량비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 영유아 1인당 월 차량비 금액은 ? _____ 원)
 ② 그렇지 않다

(☞응답 후 17번 문항으로)

17. 귀하의 어린이집 평가인증 상태는 어떠합니까?

- ① 신규인증을 받음
 ② 신규인증을 신청하였으나 인증을 받지 못함
 ③ 신규인증 후, 재 인증을 받음
 ④ 신규인증 후, 재 인증을 신청하였으나 인증을 받지 못함
 ⑤ 평가인증 신청 및 인증경험 없음

II. 어린이집 운영비용 현황

※ 다음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투입되는 비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서 묻는 내용을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2012년 현재** 어린이집에서 수납하고 있는 월 특별활동비 및 필요경비 액수를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십시오.

* 금액 기입시, 금액 단위를 원(예: 267,000원)으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구분	영유아 1인당 월 특별활동비 (※ 특별활동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없음'에 V표시해 주십시오)	영유아 1인당 월 필요경비 (현장학습비 등)
만 0세	원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원
만 1세	원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원
만 2세	원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원
만 3세	원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원
만 4세	원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원
만 5세	원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원

19. 직원별 1일 평균 총 근무시간 및 **2011년 세출결산서**를 토대로 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지급된 어린이집 직원 총 인건비를 항목별로 해당란에 정확하게 원 단위(예: 500,000원)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참 고

- ① 기본급여: 어린이집 직원에 대한 기본봉급(처우개선비 제외)
- ② 제수당 : 어린이집 직원의 제수당
(주임교사 수당 등 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
시간외 · 야간 · 휴일 근무수당, 연구수당, 급식비 및 기타수당)
- ③ 기타 후생경비: 직원의 건강진단비, 급량비, 연구연수비, 직원의 상용피복비 등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① 기본급여

구 분	세부항목	1일 총 근우시간	휴 일	산출기초		2011년간 총 지출비용 (월지급액 x 개월수 x 명수)
				월지급액	개월수	
기 본 급 여	원장(시설장)		×	원	개월	원
			×	원	개월	원
	0세반 교사			원	개월	원
				원	개월	원
	1세반 교사			원	개월	원
				원	개월	원
	2세반 교사			원	개월	원
				원	개월	원
	3세반 교사			원	개월	원
				원	개월	원
	4세반 교사			원	개월	원
				원	개월	원
	5세반 교사			원	개월	원
				원	개월	원
	0, 1세 혼합반 교사			원	개월	원
				원	개월	원
	1, 2세 혼합반 교사			원	개월	원
				원	개월	원
	2, 3세 혼합반 교사			원	개월	원
				원	개월	원
	3, 4세 혼합반 교사			원	개월	원
				원	개월	원
	4, 5세 혼합반 교사			원	개월	원
				원	개월	원

21. 2011년 세출결산서를 토대로 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투입된 시설 운영비용을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십시오. * 금액 단위를 원(예: 267,000원)으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참고

①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비: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 직책급: 원장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 회의비: 운영위원회, 부모회의 등 각종 회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② **관리운영비**

- 여비: 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인쇄비, 집기구입비, 도서구입비, 공고료, 수수료, 등기료, 운송비, 통행료 및 주차료, 소규모 수선비, 포장비, 의료비, 약품구입비 등
- 공공요금: 우편료, 전신전화료(유선전화만), 전기료, 상하수도료 및 오물수거료, 도시가스
- 제세공과금: 법령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제세(자동차세 등), 협회비, 화재·자동차 보험료
- 차량비: 통학용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의 유류대·차량정비유지비·차량소모품
- 연료비: 보일러 및 난방시설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
- 기타운영비: 그 밖의 운영경비로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시설임대료, 감가상각비, 건물용자금의 이자, 차량할부금 등)

③ **사업운영비**

- 급간식비: 보육아동 및 직원을 위한 쌀/보리 등의 주식과 부식 구입비 및 간식비
- 교재교구비: 교재교구 구입 및 제작비
- 행사비: 보육과정에서 아동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행사경비

④ **재산조성비**

- 자산취득비: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 건물, 그밖에 자산 취득비
- 시설장비유지비: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수선비, 그밖에 시설물 유지관리비

⑤ **과년도지출:** 과년도 미불금 및 과년도 사업비의 지출

⑥ **잡지출:** 시설이 지출하는 보상금, 사례금, 소송경비 및 원단위 절사금 등

구분	세부항목	2011년간 총 지출비용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원
	직책급	원
	회의비	원
관리운영비	여비	원
	수용비 및 수수료	원
	공공요금	원
	제세공과금	원
	차량비	원
	연료비	원
	기타운영비	원
사업운영비	급간식비	원
	교재교구비	원
	행사비	원
재산조성비	자산취득비	원
	시설장비유지비	원
과년도지출		원
잡지출		원

제출서류: ① 설문지, ② 2011년도 세출결산서 (또는 불임 1. 양식 기재)

제 출 처: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이진경 jklee@kicce.re.kr (02-398-7760)

답례품 수령	본인은 육아정책연구소의 「표준보육료 산출 연구」에 참여하여 조사를 완료하고, 답례품으로 문화상품권 10,000원 권을 수령합니다. <p style="text-align: right;">응답자: _____ (인)</p>
-----------	--

☺ 감 사 합 니 다 ☺

부록 2. 어린이집 영유아급간식비 식단

〈부록 표 1〉 어린이집 영유아급간식비 식단 예시(3월)

							단위: g, 원
구분	음식명	재료명	용량 재료단가	유아 1인량	유아 음식별총액	영아 1인량	영아 음식별총액
3월 2일(수)							
오전 간식	핫케이크	핫케이크 가루	3.6	60	216.0	40	144.0
		유정란	7.4	15	111.0	10	74.0
	어린이우유	어린이 우유	2.4	200	480.0	100	240.0
점심	알밥	날치알	18.5	5	92.5	3	55.5
		흙당근	2.5	7	17.5	5	12.5
		오이	8.0	7	56.0	5	40.0
		양파	2.1	7	14.7	5	10.5
		쌀	3.4	55	187.0	40	136.0
	표고버섯	34.8	7	243.6	5	174.0	
	봄동된장국	봄동	2.4	20	48.0	15	36.0
각두기	세척무	1.5	20	30.0	15	22.5	
오후 간식	꿀떡	꿀떡	7.0	60	420.0	40	280.0
	오미자차	오미자	7.9	7	55.3	5	39.5
	올리고당	올리고당	2.3	7	16.1	5	11.5
				유아1인당 일일급식비	1,987.7	영아1인당 일일급식비	1,276.0
3월 3일(목)							
오전 간식	과일	사과	5.2	50	260.0	35	182.0
	떠먹는 요구르트	호상 요구르트	4.1	110	451.0	110	451.0
	차조밥	차조	29.2	5	146.0	5	146.0
		쌀	3.4	55	187.0	40	136.0
된장찌개	감자	2.7	15	40.5	10	27.0	
	두부	5.0	10	50.0	5	25.0	
	애호박	5.3	10	53.0	5	26.5	
	양파	2.1	5	10.5	3	6.3	
	생선조림	삼치	10.8	35	378.0	30	324.0
숙주나물	세척무	1.5	10	15.0	5	7.5	
	흙대파	4.5	0.5	2.3	0.3	1.4	
	숙주	5.5	30	165.0	20	110.0	
	흙당근	2.5	4	10.0	2	5.0	
	쪽파		0.5	4.2	0.2	1.7	
오후 간식	김치	손질배추	20	20	52.0	15	39.0
	찜감자	감자	100	100	440.0	80	352.0
	두유	두유	190	190	437.0	100	230.0
				유아1인당 일일급식비	2,701.5	영아1인당 일일급식비	2,070.3

(부록 표 1 계속)

구분	음식명	재료명	8당 재료단가	유아 1인량	유아 음식별총액	영아 1인량	영아 음식별총액	
3월 4일(금)								
오전 간식	최고기 미역죽	한우 분쇄육	24.7	10	247.0	7	172.9	
		찰미역	15.1	3	45.3	1.5	22.7	
		쌀	3.4	25	85.0	20	68.0	
	쌀밥	쌀	3.4	60	204.0	45	153.0	
	콩나물국	콩나물	3.2	25	80.0	20	64.0	
		훈대파	4.5	0.5	2.3	0.3	1.4	
		훈당근	2.5	5	12.5	3	7.5	
		제육볶음	돈육 불고기	12.0	30	360.0	25	300.0
점 심		파푸리카	13.5	10	135.0	5	67.5	
		훈당근	2.5	3	7.5	3	7.5	
		양파	2.1	5	10.5	5	10.5	
		훈대파	4.5	0.5	2.3	0.3	1.4	
	양배추숙쌈	양배추	3.5	35	122.5	25	87.5	
	각두기	세척무	1.5	20	30.0	15	22.5	
오후 간식	카스테라	카스테라	15.5	50	775.0	30	465.0	
	어린이우유	어린이 우유	2.4	200	480.0	100	240.0	
				유아1인당 일일급식비	2,598.8	영아1인당 일일급식비	1,691.3	
3월 5일(토)								
오전 간식	과일	배	4.9	50	245.0	35	171.5	
		치즈	4.7	10	47.0	10	47.0	
		우동	3.4	60	205.2	40	136.8	
		종합어묵	4.2	15	63.0	10	42.0	
		쭈갓	7.5	3	22.5	2	15.0	
점심	유부초밥	쌀	3.4	55	187.0	40	136.0	
		유부	9.6	10	96.0	8	76.8	
		훈당근	2.7	10	27.0	7	18.9	
		오이	8.0	10	80.0	7	56.0	
		양파	2.1	10	21.0	7	14.7	
		김치	손질배추	2.6	20	52.0	15	39.0
				유아1인당 일일급식비	1045.7	영아1인당 일일급식비	753.7	
3월 7일(월)								
오전 간식	유기농 씨리얼	씨리얼	16.1	15	241.5	10	161.0	
	씨리얼	콘푸레이크	8.7	20	174.0	15	130.5	
	어린이우유	어린이우유	2.4	150	360.0	100	240.0	
	쌀밥	쌀	3.4	60	204.0	45	153.0	
점심	최고기무국	한우국거리	40.3	15	604.5	10	403.0	
		세척무	1.5	20	30.0	10	15.0	
		훈대파	4.5	0.5	2.3	0.3	1.4	
		달걀말이	유정란	7.4	30	222.0	25	185.0
		시금치	5.1	5	25.5	5	25.5	

(부록 표 1 계속)

구분	음식명	재료명	8당 재료단가	유아 1인량	유아 음식별총액	영아 1인량	영아 음식별총액	
점심		흑당근	2.7	5	13.5	3	8.1	
		양파	2.1	5	10.5	3	6.3	
		흑대파	4.5	0.5	2.3	0.3	1.4	
		김구이	33.8	5	169.0	3	101.4	
		깍두기	1.6	20	32.0	15	24.0	
오후 간식	잔치국수	소면	2.7	40	108.0	25	67.5	
		한우분쇄육	24.7	10	247.0	5	123.5	
		애호박	5.3	10	53.0	5	26.5	
		흑당근	2.7	5	13.5	3	8.1	
		양파	2.1	5	10.5	3	6.3	
유아1인당 일일급식비					2,523.0	영아1인당 일일급식비	1,687.4	
3월 8일(화)								
오전 간식	과일	바나나	3.5	50	175.0	35	122.5	
	어린이우유	어린이우유	2.4	200	480.0	100	240.0	
	발아현미밥	발아현미	15.0	5	75.0	5	75.0	
		쌀	3.4	55	187.0	40	136.0	
	콩가루죽	콩가루	18.9	3	56.7	2	37.8	
	된장국	숙	16.0	25	400.0	20	320.0	
	햄버거	돼지분쇄육	9.0	20	180.0	15	135.0	
	스테이크	두부	5.4	10	54.0	7	37.8	
점심		흑당근	2.7	10	27.0	5	13.5	
		양파	2.1	10	21.0	5	10.5	
		흑대파	4.5	0.5	2.3	0.3	1.4	
		빵가루	4.8	5	24.0	3	14.4	
		전분가루	5.9	3	17.7	2	11.8	
		소스	하이라이스 가루	16.5	3	49.5	2	33.0
			양파	2.1	2	4.2	1	2.1
			양송이버섯	16.6	3	49.8	2	33.2
			무나물	1.6	35	56.0	25	40.0
			들깨가루	31.6	3	94.8	2	63.2
오후 간식	깍두기	세척무	1.6	20	32.0	15	24.0	
		멸치 주먹밥	쌀	3.4	55	187.0	40	136.0
			잔멸치	34.7	10	347.0	6	208.2
			파푸리카	13.5	5	67.5	3	40.5
		유산균음료	유산균음료	4.5	100	450.0	100	450.0
유아1인당 일일급식비					3,037.5	영아1인당 일일급식비	2,185.9	
3월 9일(수)								
오전 간식		감자	2.7	10	27.0	7	18.9	
		베이컨	우리밀가루	4.8	7	33.6	5	24.0
		스프	버터	14.5	6	87.0	5	72.5
			베이컨	28.0	6	168.0	6	168.0
			생크림	9.9	2.5	24.8	2	19.8
	어린이우유	2.4	25	60.0	20	48.0		

(부록 표 1 계속)

구분	음식명	재료명	g당 재료단가	유아 1인량	유아 음식별총액	영아 1인량	영아 음식별총액
오전 간식	당근스틱	훈당근	27	30	81.0	15	40.5
점심	마과두부 덮밥	두부	5.4	20	108.0	15	81.0
		돼지분쇄육	9.0	15	135.0	10	90.0
		파푸리카	13.5	5	67.5	3	40.5
		청피망	6.3	3	18.9	2	12.6
		양파	2.1	5	10.5	3	6.3
		훈당근	2.7	3	8.1	2	5.4
		쌀	3.4	55	187.0	40	136.0
	팽이버섯	팽이버섯	5.1	25	127.5	15	76.5
	장국	세척무	1.6	5	8.0	5	8.0
		다시마	25.0	2	50.0	2	50.0
		훈대파	4.5	0.5	2.3	0.3	1.4
		각두기	세척무	1.6	20	32.0	15
오후 간식	방울증편	방울증편	7.0	50	350.0	35	245.0
	레몬차	레몬	3.9	1	3.9	0.5	2.0
				유아1인당 일일급식비	2,523.0	영아1인당 일일급식비	1,687.4
3월 10일(목)							
오전 간식	과일	단감	5.9	50	295.0	35	206.5
	유아치즈	어린이치즈	47.0	10	470.0	10	470.0
점심	찰수수밥	찰수수	22.6	5	113.0	5	113.0
		쌀	3.4	55	187.0	40	136.0
	순두부탕	순두부	3.6	40	144.0	20	72.0
		바지락	18.9	5	94.5	3	56.7
		애호박	5.3	5	26.5	3	15.9
		훈당근	2.7	5	13.5	3	8.1
		양파	2.1	5	10.5	3	6.3
		훈대파	4.5	0.5	2.3	0.3	1.4
	생선구이	고등어구이	8.9	35	311.5	30	267.0
	달래오이	달래	15.0	10	150.0	5	150.0
	무침	오이	8.0	20	160.0	10	160.0
		김치	손질매추	3.2	20	64.0	15
오후 간식	단호박찜	단호박(원물)	2.7	90	243.0	60	243.0
	어린이우유	어린이우유	2.4	200	480.0	100	480.0
				유아1인당 일일급식비	2,764.8	영아1인당 일일급식비	2,267.6
3월 11일(금)							
오전 간식	참치죽	쌀	3.4	25	85.0	20	68.0
		참치캔	6.9	10	69.0	7	48.3
		양파	2.1	5	10.5	3	6.3
		훈대파	4.5	0.5	2.3	0.3	1.4
점심	쫄밥	쌀	3.4	60	204.0	45	153.0
		얼갈이된장국	얼갈이	2.7	25	67.5	20
		훈대파	4.5	0.5	2.3	0.3	1.4

(부록 표 1 계속)

구분	음식명	재료명	g당 재료단가	유아 1인량	유아 음식별총액	영아 1인량	영아 음식별총액	
점심	탕수육	돼지	12.2	30	366.0	20	244.0	
		탕수육용 전분가루	5.9	10	59.0	6	35.4	
	점심	우리밀가루	유정란	4.8	10	48.0	7	33.6
			오이	7.4	5	37.0	3	22.2
			호박근	8.0	10	80.0	5	40.0
			양파	2.7	5	13.5	3	8.1
			케찹	2.1	5	10.5	3	6.3
			목이버섯	13.8	2	27.6	1	13.8
			파인애플	120.0	0.5	60.0	0.3	36.0
			돌나물	9.5	5	47.5	3	28.5
			김치	3.7	20	74.0	15	55.5
	오후 간식	어린이우유	손질배추	3.2	20	64.0	15	48.0
			핫도그	9.2	50	460.0	30	276.0
					2,267.6	영아1인당 일일급식비	1,419.7	
3월 12일(토)								
오전 간식	호두살 두유	호두살	21.4	8	171.2	5	107.0	
		두유	2.3	190	437.0	100	230.0	
점심	삼계탕	영계	7.5	80	600.0	50	375.0	
		미삼	19.0	0.5	9.5	0.3	5.7	
		대추	8.9	1	8.9	1	8.9	
		찹쌀	7.2	5	36.0	5	36.0	
		생울	19.5	2	39.0	1	19.5	
		깐마늘	10.6	1	10.6	1	10.6	
		쌀	3.4	55	187.0	40	136.0	
		각두기 과일	세척무 배	1.6 4.9	20 50	32.0 245.0	15 50	24.0 245.0
					1,776.2	영아1인당 일일급식비	1,197.7	
3월 14일(월)								
오전 간식	어린이우유	어린이우유	24	150	360.0	100	240.0	
점심	쌀밥	쌀	3.4	60	204.0	45	153.0	
		시금치	5.1	25	127.5	20	102.0	
	치킨커틀렛	닭가슴살	우리밀가루	15.9	35	556.5	25	397.5
			유정란	4.8	13	62.4	10	48.0
			젓은빵가루	7.4	15	111.0	10	74.0
			빵가루	2.6	10	26.0	7	18.2
			양송이버섯	4.8	7	33.6	5	24.0
	소스	하이라이스	양송이버섯	16.5	2	33.0	1	16.5
			양파	16.6	7	116.2	5	83.0
			양파	2.1	5	10.5	3	6.3

(부록 표 1 계속)

구분	음식명	재료명	g당 재료단가	유아 1인량	유아 음식별총액	영아 1인량	영아 음식별총액
점심	채소샐러드	양상추	127	15	190.5	10	127.0
		파푸리카	124	5	62.0	3	37.2
		훈당근	27	3	8.1	2	5.4
		치커리	7.3	3	21.9	2	14.6
	각두기	훈무	0.9	20	18.0	15	13.5
오후 간식	들깨수제비	우리밀가루	4.8	40	192.0	30	144.0
		들깨가루	31.6	2	63.2	2	63.2
		감자	2.7	10	27.0	7	18.9
		애호박	5.3	10	53.0	5	26.5
		표고버섯	34.8	10	348.0	5	174.0
유아1인당 일일급식비					2,624.4	영아1인당 일일급식비	1,786.8
3월 15일(화)							
오전 간식	과일	귤	4.1	50	205.0	35	143.5
	어린이우유	어린이우유	2.4	200	480.0	100	240.0
점심	찰보리밥	찰보리	5.1	5	25.5	5	25.5
		쌀	3.4	55	187.0	40	136.0
	황태미역국	황태채	63.0	10	630.0	7	441.0
		찰미역	15.1	3	45.3	1.5	22.7
	모듬장조림	한우장조림육	35.1	12	421.2	8	280.8
		돼지장조림육	11.9	12	142.8	8	95.2
		메추리알	6.9	12	82.8	8	55.2
		곤약	2.9	5	14.5	3	8.7
		간마늘	10.6	1	10.6	1	10.6
		간생강	7.3	1	7.3	1	7.3
		훈무	0.9	3	2.7	2	1.8
	봄동무침	봄동	4.5	30	135.0	20	90.0
		파푸리카	12.4	5	62.0	5	62.0
김치	손질배추	2.1	20	42.0	15	31.5	
	김치전	우리밀가루	4.8	10	48.0	7	33.6
오후 간식		손질배추	2.1	10	21.0	7	14.7
		양파	2.1	10	21.0	7	14.7
		유정란	7.4	10	74.0	7	51.8
		돼지분쇄육	9.0	30	270.0	25	225.0
	주스	과일주스	2.6	150	390.0	100	260.0
유아1인당 일일급식비					3,317.7	영아1인당 일일급식비	2,251.6
3월 16일(수)							
오전 간식	편두부+	두부	5.4	40	216.0	30	162.0
		양념장	8.7	3	26.1	2	17.4
점심	자장밥	훈당근	2.7	3	8.1	2	5.4
		쌀	3.4	55	187.0	40	136.0
		춘장	8.2	10	82.0	7	57.4
		돼지	12.2	10	122.0	7	85.4
		자장용등심					

(부록 표 1 계속)

구분	음식명	재료명	g당 재료단가	유아 1인량	유아 음식별총액	영아 1인량	영아 음식별총액
3월 16일(수)							
점심	달걀국	감자	27	15	40.5	10	27.0
		홍당근	27	5	13.5	3	8.1
		양파	21	5	10.5	3	6.3
		양배추	3.5	10	35.0	7	24.5
		유정란	7.4	20	148.0	15	111.0
		흙대파	2.6	0.5	1.3	0.3	0.8
		홍당근	2.7	5	13.5	3	8.1
	각두기	흙무	0.9	20	18.0	15	13.5
오후 간식	썩절편	썩절편	5.0	60	300.0	40	200.0
	매실차	매실	29.2	8	233.6	5	146.0
유아1인당 일일급식비					1,455.1	영아1인당 일일급식비	1,008.9
3월 17일(목)							
오전 간식	과일	사과	6.0	50	300.0	35	210.0
	마시는 요구르트	마시는 요구르트	4.0	100	400.0	100	400.0
	기장밥	기장	27.5	5	137.5	5	137.5
점심	청국장찌개	쌀	3.4	55	187.0	40	136.0
		청국장	13.6	10	136.0	5	68.0
		두부	5.0	20	100.0	10	50.0
		감자	2.7	10	27.0	5	13.5
		애호박	5.3	10	53.0	5	26.5
	생선찜	양파	2.1	5	10.5	3	6.3
		흙대파	2.6	0.5	1.3	0.3	0.8
		임연수어조림	16.5	35	577.5	30	495.0
		흙무	0.9	10	9.0	5	4.5
		근약	2.9	2	5.8	1	2.9
		흙대파	2.6	0.5	1.3	0.3	0.8
두릅무침	두릅	10.7	20	214.0	15	160.5	
김치	손질배추	2.1	20	42.0	15	31.5	
오후 간식	삶은달걀	유정란	7.4	55	407.0	55	407.0
	구운멸치	잔멸치	34.7	10	347.0	6	208.2
	어린이우유	어린이우유	2.4	200	480.0	100	240.0
유아1인당 일일급식비					3435.9	영아1인당 일일급식비	2599.0
3월 18일(금)							
오전 간식	채소죽	쌀	3.4	25	85.0	20	68.0
		표고버섯	34.8	10	348.0	5	174.0
		홍당근	2.7	5	13.5	3	8.1
		양파	2.1	5	10.5	3	6.3
		애호박	5.3	5	26.5	3	15.9
점심	오징어무국	쌀밥	3.4	60	204.0	45	153.0
		오징어채	13.0	10	130.0	7	91.0
		흙무	0.9	15	13.5	10	9.0

(부록 표 1 계속)

구분	음식명	재료명	g당 재료단가	유아 1인량	유아 음식별총액	영아 1인량	영아 음식별총액
점심	오징어무국	흙대파	26	0.5	1.3	0.3	0.8
		돈편육	24.3	35	850.5	30	729.0
	미나리 무생채	간마늘	10.6	1	10.6	1	10.6
		간생강	7.3	1	7.3	1	7.3
		미나리	10.7	5	53.5	3	32.1
		홍무	0.9	15	13.5	10	9.0
		홍피망	10.9	3	32.7	2	21.8
		김치	2.1	20	42.0	15	31.5
오후 간식	참쌀파배기	18.7	60	1122.0	40	748.0	
어린이우유	어린이우유	2.4	200	480.0	100	240.0	
유아1인당 일일급식비				3444.4	영아1인당 일일급식비		2355.4
3월 19일(토)							
오전 간식	한과	한과	23.1	15	346.5	10	231.0
어린이우유	어린이우유	2.4	200	480.0	100	240.0	
점심	크림 스파게티	스파게티면	4.8	40	192.0	30	144.0
		생크림	9.9	2.5	24.8	2	19.8
	양파	어린이우유	2.4	25	60.0	20	48.0
		다진마늘	2.1	5	10.5	5	10.5
		다진마늘	6.7	3	20.1	3	20.1
		브로컬리	6.6	5	33.0	5	33.0
		올리브오일	11.2	5	56.0	5	56.0
		양송이버섯	16.6	5	83.0	3	49.8
	마늘빵 삼색초절이	마늘빵	10.3	30	309.0	20	206.0
		오이	8.0	10	80.0	7	56.0
	오렌지	양파	2.1	5	10.5	3	6.3
		비트	5.8	5	29.0	5	29.0
오렌지	오렌지	4.2	50	210.0	50	210.0	
유아1인당 일일급식비					영아1인당 일일급식비		
3월 21일(월)							
오전 간식	오곡미숫가루	오곡미숫가루	13.2	10	132.0	8	105.6
어린이우유	어린이우유	2.4	150	360.0	100	240.0	
점심	들깨미역국	쌀밥	3.4	60	204.0	45	153.0
		건미역	15.1	3	45.3	1.5	22.7
	달치알	들깨가루	31.6	2	63.2	2	63.2
		달치알	18.5	30	555.0	25	462.5
	달갈집	유정란	7.4	30	222.0	25	185.0
		흙당근	2.7	7	18.9	5	13.5
		양파	2.1	7	14.7	5	10.5
		오이	8.0	5	40.0	3	24.0
	멸치아몬드	찬멸치	34.7	10	347.0	6	208.2
	채볶음	아몬드채	19.0	3	57.0	2	38.0
김치	손질배추	2.1	20	42.0	15	31.5	

(부록 표 1 계속)

구분	음식명	재료명	g당 재료단가	유아 1인량	유아 음식별총액	영아 1인량	영아 음식별총액
오후 간식	떡국	떡국떡	4.5	40	180.0	30	135.0
		한우절단국거리	40.3	10	403.0	7	282.1
		양파	2.1	5	10.5	3	6.3
		애호박	5.3	5	26.5	3	15.9
유아1인당 일일급식비					2721.1	영아1인당 일일급식비	
3월 22일(화)							
오전 간식	과일	배	5.0	50	250.0	35	175.0
	어린이우유	어린이우유	2.4	200	480.0	100	240.0
점심	흑미밥	흑미	8.4	5	42.0	5	42.0
		쌀	3.4	55	187.0	40	136.0
	콩나물국	콩나물	3.2	25	80.0	20	64.0
		파푸리카	13.5	5	67.5	3	40.5
	버섯불고기	쪽파	8.4	1	8.4	1	8.4
		한우불고기	35.1	30	1053.0	25	877.5
		느타리버섯	7.0	5	35.0	5	35.0
		표고버섯	34.8	5	174.0	5	174.0
		팽이버섯	5.1	3	15.3	3	15.3
		홍당근	2.7	3	8.1	3	8.1
상추무침	양파	2.1	5	10.5	5	10.5	
	홍대파	2.6	0.5	1.3	0.3	0.8	
	양배추	3.5	5	17.5	5	17.5	
	적상추	5.5	7	38.5	5	27.5	
	청상추	5.5	7	38.5	5	27.5	
오후 간식	김치	홍당근	2.7	2	5.4	1	2.7
		손질배추	2.1	20	42.0	15	31.5
	쇠고기우영	한우분쇄육	24.7	10	247.0	5	123.5
	주먹밥	우영채	6.8	5	34.0	3	20.4
유산균음료	유산균음료	쌀	3.4	30	102.0	25	85.0
		오이	8.0	5	40.0	3	24.0
		양파	2.1	5	10.5	3	6.3
유아1인당 일일급식비					3437.5	영아1인당 일일급식비	
3월 23일(수)							
오전 간식	단호박스프	우리밀가루	4.8	7	33.6	5	24.0
		버터	14.5	6	87.0	5	72.5
		단호박(원물)	2.7	20	54.0	15	40.5
		생크림	9.9	2.5	24.8	2	19.8
		어린이우유	2.4	25	60.0	20	48.0
점심	콜라비스티	감자	2.6	6	15.6	5	13.0
		콜라비	6.5	30	195.0	15	97.5
		오색볶음밥	브로컬리	7.9	15	118.5	10
		홍당근	2.7	7	18.9	5	13.5
		양파	2.1	7	14.7	5	10.5

(부록 표 1 계속)

구분	음식명	재료명	g당 재료단가	유아 1인량	유아 음식별총액	영아 1인량	영아 음식별총액	
점심	오색볶음밥	유정란	7.4	10	74.0	7	51.8	
		파푸리카	13.5	5	67.5	3	40.5	
		쌀	3.4	55	187.0	40	136.0	
	두부장국	두부	5.0	30	150.0	20	100.0	
		쪽파	8.4	1	8.4	1	8.4	
		세척무	0.9	20	18.0	15	13.5	
과인애플	과인애플	11.5	50	575.0	30	345.0		
오후	약식	약식	10.0	60	600.0	40	400.0	
간식	구기자차	구기자	99.0	0.2	19.8	0.1	9.9	
유아1인당 일일급식비					2321.8	영아1인당 일일급식비	1523.4	
3월 24일(목)								
오전	과일	바나나	3.9	50	195.0	35	136.5	
간식	유아치즈	유아치즈	4.7	10	47.0	10	47.0	
점심	울무밥	울무	22.9	5	114.5	5	114.5	
		쌀	3.4	55	187.0	40	136.0	
	콩비지찌개	콩비지	8.4	6	50.4	5	42.0	
		배추	2.1	20	42.0	15	31.5	
		돼지고기찌개용	12.9	10	129.0	5	64.5	
	코다리강정	코다리살	12.7	35	444.5	30	381.0	
		전분가루	5.9	6	35.4	4	23.6	
		우리밀가루	4.8	6	28.8	4	19.2	
		유정란	7.4	12	88.8	10	74.0	
	애호박볶음	애호박	5.3	30	159.0	20	106.0	
		훈당근	2.7	2	5.4	1	2.7	
		양파	2.1	3	6.3	2	4.2	
		김치	손질배추	2.1	20	42.0	15	31.5
오후	찐고구마	고구마	6.7	100	670.0	80	536.0	
간식	두유	두유	2.3	190	437.0	100	230.0	
유아1인당 일일급식비					2682.1	영아1인당 일일급식비	1980.2	
3월 25일(금)								
오전	간식	누룽지죽	누룽지	14.4	25	360.0	20	288.0
점심	쌀밥	쌀	3.4	55	187.0	40	136.0	
		배추된장국	배추	3.0	25	75.0	20	60.0
	돈육잡채	양파	2.1	5	10.5	3	6.3	
		돼지잡채육	12.2	30	366.0	25	305.0	
		청피망	9.6	7	67.2	5	48.0	
		홍피망	7.0	7	49.0	5	35.0	
		느타리버섯	7.0	7	49.0	5	35.0	
		양파	2.1	5	10.5	3	6.3	
		훈당근	2.7	5	13.5	3	8.1	
		참나물	참나물	4.0	30	120.0	20	20
파푸리카	파푸리카	13.5	3	40.5	3	3		

(부록 표 1 계속)

구분	음식명	재료명	g당 재료단가	유아 1인량	유아 음식별총액	영아 1인량	영아 음식별총액
점심	참나물	흙당근	27	2	5.4	2	5.4
	깍두기	세척무	0.9	20	18.0	15	13.5
오후 간식	채소달걀	유정란	7.4	40	296.0	20	148.0
	샌드위치	오이	8.0	10	80.0	5	40.0
		양파	2.1	5	10.5	3	6.3
		마요네즈	22.6	5	113.0	3	67.8
		식빵	8.9	40	356.4	20	178.2
	어린이우유	어린이우유	2.4	200	480.0	100	240.0
				유아1인당 일일급식비	2,707.5	영아1인당 일일급식비	1,747.4
3월 26일(토)							
오전 간식	바나나	바나나	3.5	50	175.0	30	105.0
	어린이우유	어린이우유	2.4	200	480.0	100	240.0
점심	오징어덮밥	오징어	13.0	30	390.0	20	260.0
		양배추	3.5	10	35.0	5	17.5
		흙당근	2.7	5	13.5	5	13.5
		양파	2.1	5	10.5	5	10.5
		흙대파	2.6	0.5	1.3	0.3	0.8
		쌀	3.4	55	187.0	40	136.0
	달걀양파국	유정란	7.4	15	111.0	10	74.0
		양파	2.1	7	14.7	5	10.5
		흙당근	2.7	5	13.5	3	8.1
		흙대파	2.6	0.5	1.3	0.3	0.8
	깍두기	세척무	0.9	20	18.0	15	13.5
				유아1인당 일일급식비	1,450.8	영아1인당 일일급식비	890.2
3월 28일(월)							
오전 간식	토스트	식빵	8.9	40	356.0	20	178.0
		버터	14.5	5	72.5	3	43.5
점심	어린이우유	어린이우유	2.4	200	480.0	100	240.0
	쌀밥	쌀	3.4	60	204.0	45	153.0
	근대된장국	근대	4.0	25	100.0	20	80.0
		양파	2.1	10	21.0	5	10.5
	닭야채볶음	닭정육	8.1	30	243.0	25	202.5
		감자	2.7	7	18.9	5	13.5
		양배추	3.5	7	24.5	5	17.5
		새송이버섯	8.7	5	43.5	3	26.1
		깻잎	6.5	1	6.5	0.5	3.3
		양파	2.1	5	10.5	3	6.3
		흙당근	3.2	3	9.6	2	6.4
	취나물무침	취나물	8.0	30	240.0	20	160.0
		파푸리카	11.5	5	57.5	3	34.5
		김치	3.0	20	60.0	15	45.0
오후 간식	카레면	생면	3.4	40	136.0	35	119.0
		카레가루	4.8	7	33.6	5	24.0

(부록 표 1 계속)

구분	음식명	재료명	g당 재료단가	유아 1인량	유아 음식별총액	영아 1인량	영아 음식별총액
오후 간식	카레면	훈당근	3.2	5	16.0	3	9.6
		양파	2.1	10	21.0	5	10.5
		돼지등심	13.5	15	202.5	10	135.0
		감자	2.7	10	27.0	5	13.5
		오이	8.0	3	24.0	2	16.0
유아1인당 일일급식비					2407.6	영아1인당 일일급식비	
3월 29일(화)							
오전 간식	과일	방울토마토	5.4	50	270.0	35	189.0
	어린이우유	어린이우유	2.4	200	480.0	100	240.0
점심	참쌀팥밥	참쌀	7.2	2	14.4	1	7.2
		팥	28.6	3	85.8	1	28.6
		쌀	3.4	55	187.0	40	136.0
	느타리 들깨국	느타리버섯	7.0	15	105.0	10	70.0
		들깨가루	31.6	3	94.8	2	63.2
	쇠고기우영 채볶음	양파	2.1	5	10.5	3	6.3
		훈대파	4.2	0.5	2.1	0.3	1.3
		현우불고기	35.1	30	1053.0	25	877.5
		우영채	6.8	7	47.6	5	34.0
		훈당근	3.2	3	9.6	3	9.6
		양파	2.1	3	6.3	3	6.3
		훈대파	4.2	0.5	2.1	0.3	1.3
		청각두부	청각	17.8	15	267.0	10
	무침	두부	5.4	15	81.0	10	54.0
		홍피망	7.0	5	35.0	3	21.0
김치		3.0	20	60.0	15	45.0	
오후 간식	단호박치즈	단호박(원물)	2.7	90	243.0	60	162.0
	커틀렛	피자치즈	20.1	7	140.7	5	100.5
		튀김가루	2.4	6	14.4	4	9.6
		유정란	7.4	10	74.0	8	59.2
	과일쥬스	우리밀가루	4.8	5	24.0	3	14.4
과일쥬스		2.6	100	260.0	100	260.0	
유아1인당 일일급식비					3567.3	영아1인당 일일급식비	
3월 30일(수)							
오전 간식	호두살+	호두살	21.4	5	107.0	3	64.2
	뱅어포	뱅어포	60.8	2	121.6	1	60.8
	두유	두유	2.3	190	437.0	100	230.0
점심	비빔밥	도라지	26.0	10	260.0	5	130.0
		고사리	22.7	10	227.0	5	113.5
	훈당근	3.2	5	16.0	3	9.6	
	양파	2.1	10	21.0	5	10.5	
	시금치	5.1	10	51.0	5	25.5	
	쌀	3.4	55	187.0	40	136.0	

(부록 표 1 계속)

구분	음식명	재료명	g당 재료단가	유아 1인량	유아 음식별총액	영아 1인량	영아 음식별총액	
점심	쇠고기	한우절단국거리	40.3	15	604.5	10	403.0	
	당면국	당면	9.1	2	18.2	1	9.1	
		흠대파	4.2	0.5	2.1	0.3	1.3	
	달걀후라이	흠무	1.7	10	17.0	5	8.5	
		유정란	7.4	30	222.0	25	185.0	
		각두기	1.7	20	34.0	15	25.5	
		배	4.9	40	196.0	20	98.0	
	오후 간식	떡볶이	떡볶이떡	4.5	25	112.5	20	90.0
		사각어묵	4.2	7	29.4	5	21.0	
		양매추	3.5	7	24.5	5	17.5	
		흠당근	3.2	5	16.0	3	9.6	
		양파	2.1	5	10.5	3	6.3	
		흠대파	4.2	0.5	2.1	0.3	1.3	
보리차		보리차	3.9	0.3	1.2	0.3	1.2	
				유아1인당 일일급식비	2717.6	영아1인당 일일급식비	1657.3	
3월 31일(목)								
오전 간식	과일	귤	3.7	50	185.0	35	129.5	
	떠먹는 요구르트	호상요구르트	4.1	110	451.0	110	451.0	
점심	잡곡밥	잡곡	12.1	5	60.5	5	60.5	
		쌀	3.4	55	187.0	40	136.0	
	황태무국	황태채	63.0	8	504.0	5	315.0	
		흠무	1.7	15	25.5	10	17.0	
	두부조림	흠대파	4.2	0.5	2.1	0.3	1.3	
		유정란	7.4	15	111.0	10	74.0	
		두부	5.4	30	162.0	20	108.0	
		흠무	1.7	10	17.0	5	8.5	
		감자채볶음	감자	2.7	25	67.5	20	54.0
			청피망	6.5	5	32.5	3	19.5
	흠당근		3.2	5	16.0	3	9.6	
	오후 간식	김치	양파	2.1	5	10.5	3	6.3
손질배추			3.0	20	60.0	15	45.0	
고구마			6.7	100	670.0	80	536.0	
맛탕		식용유	3.3	7	23.1	5	16.5	
		어린이우유	2.4	200	480.0	100	240.0	
			유아1인당 일일급식비	3,064.7	영아1인당 일일급식비	2,227.7		
총액					65,592.40	45,558.8		
월 평균 일일급식비					2,522.80	1,752.3		

부록 3. 어린이집 연령별 교재교구 목록

〈부록 표 2〉 만 0세 영아반 교재교구비

단위: 원

영역	품목	수량 (개)	단가	내구연한 (년)	연간소요비용 (1학년 기준)
수유· 기저귀 갈이영역	동물쿠션	1	7,200	5	1,440
	모빌	1	30,000	5	6,000
	그림이나 사진	4	12,000	3	4,000
	기저귀갈이대	1	35,000	5	7,000
언어 및 휴식영역	천이나 판지로 된 책	1	8,000	5	1,600
	동화카세트테이프	1	3,000	2	1,500
	카세트	1	30,000	5	6,000
	구연동화자료(가족6종)	1	17,200	5	3,440
	단순한 손인형(동물)	1	8,000	5	1,600
	영아용 숨기고 찾는 책	2	10,000	3	3,333
	동화자료(12박스)	1	650,000	3	216,667
	그림카드	1	8,000	3	2,667
	이야기만들기상자	1	15,000	2	7,500
	영아용 쿠션 매트	1	89,000	5	17,800
신체영역	부드러운 공	1	15,000	3	5,000
	움직여타는 놀이감	1	89,000	5	17,800
	패트를 덧댄 계단	1	230,000	1	230,000
	스폰지 블럭	1	20,490	3	6,830
	영아용 폼 블록세트	1	30,080	3	10,027
	투명 분류 바구니	1	12,000	9	1,333
	감각 컵 블럭	1	650	5	130
	사계절 플레이방	1	200,000	6	33,333
	볼풀용 공	1	1,000	4	250
	여러 가지 촉감 공	2	24,350	5	4,870
	공 보관대	1	120,000	9	13,333
	끌고 다닐 수 있는 자동차류	1	120,000	3	40,000
	영아용 끌기놀이 세트(3개)	2	200,000	3	66,667
	목재 창의력 기차	2	69,800	3	23,267
	일어나기 자기 관찰 거울	1	104,000	3	34,667
	여러종류의 탈 것	3	3,500	2	1,750
	낮은평균대	1	47,200	3	15,733
탐색영역	모빌	1	7,420	2	3,710
	음악소리가 나는 완구	1	35,000	1	35,000
	꼭 쫓아갈 수 있는 놀이감	1	3,500	1	3,500
	영아용 동물 손목팔랑이	3	8,500	2	4,250
	누르면 소리나는 장난감	3	9,580	1	9,580
	입으로 빠는 놀이감	3	15,000	1	15,000
	연결고리끼우기	1	16,000	2	8,000
	모형퍼즐	1	12,000	2	6,000
	스폰지퍼즐	1	8,000	1	8,000
	모양상자	1	13,500	2	6,750
	소리나는 장난감	1	28,000	2	14,000
	각종 악기류	2	35,000	2	17,500
	퍼즐류	1	8,000	2	4,000
	작은블럭	1	14,000	4	3,500
	여러촉감 벽걸이	1	28,000	3	9,333
창의영역	싱크대	1	89,000	4	22,250
	모형 전화기	3	10,400	3	5,200
	깨지지 않는 찻잔세트	2	12,000	4	4,000

(부록 표 2 계속)

영역	품목	수량 (개)	단가	내구연한 (년)	연간소요비용 (1학년 기준)
창의영역	인형류	3	5,000	2	1,250
	밀가루접토도구	1	1,300	3	1,300
	영아용 음식 탐구세트	1	35,000	4	17,500
	고무로 된 작은 인형	1	7,000	5	3,500
	아기인형캐리어	3	15,000	3	5,000
	물세탁영아용 다인종 인형	1	71,200	3	14,240
	동물인형	1	7,800	2	1,560
	우유병	3	3,800	1	1,900
	가방	5	8,900	2	2,967
	모형음식물	4	15,000	5	5,000
	모자(동물)	4	9,600	1	3,200
	큰손가락	5	1,200	1	400
	썸글라스	5	5,000	1	2,500
	변화장품통	2	900	1	450
	계				
월 평균					85,490

〈부록 표 3〉 만 1세 영아반 교재교구비

단위: 원

영역	품목	수량 (개)	단가	내구연한 (년)	연간소요비용 (1학년 기준)
수유·기저귀 갈이영역	동물쿠션	1	7,200	3	2,400
	모빌	1	30,000	3	10,000
	그림이나 사진	4	12,000	5	2,400
	기저귀갈이대	1	35,000	5	7,000
언어 및 휴식영역	천이나 판지로 된 책	1	8,000	3	2,667
	동화카세트테이프	1	3,000	5	600
	카세트	1	30,000	3	10,000
	구연동화자료(가족6종)	1	30,000	3	10,000
	단순한 손인형(동물)	1	12,000	3	4,000
	형질책 세트(4종)	2	35,000	3	11,667
	동화자료(12박스)	1	650,000	3	216,667
	그림카드	1	3,000	5	600
	이야기만들기상자	1	30,000	5	6,000
	웨스코 패딩 매트	1	17,200	3	5,733
신체영역	손 세탁 감각 볼 모음	1	8,000	3	2,667
	움직여타는 놀이감	1	10,000	5	2,000
	패트를 덧댄 계단	1	650,000	5	130,000
	스폰지 블럭	1	8,000	5	1,600
	영아용 폼 블럭세트	1	15,000	5	3,000
	사계절 플레이방	1	89,000	4	22,250
	손 세탁 감각 볼 모음	1	8,000	3	2,667
	움직여타는 놀이감	1	10,000	5	2,000
	패트를 덧댄 계단	1	650,000	5	130,000
	스폰지 블럭	1	8,000	5	1,600
	영아용 폼 블럭세트	1	15,000	5	3,000
	사계절 플레이방	1	89,000	4	22,250
	볼풀용 공	1	23,000	3	7,667
	여러 가지 촉감 공	2	24,350	3	8,117
	공 보관대	1	120,000	5	24,000
	끌고 다닐 수 있는 자동차류	1	120,000	3	40,000
	끝차	2	200,000	4	50,000
	목재 창의력 기차	2	69,800	5	13,960
	영아용 안전거울과 지지대	1	56,000	5	11,200
	영아용 동물 줄래기	3	23,000	3	7,667
영아용 낚시놀이	1	65,600	3	21,867	

(부록 표 3 계속)

영역	품목	수량 (개)	단가	내구연한 (년)	연간소요비용 (1학년 기준)
신체영역	연결고리끼우기	1	15,000	3	5,000
	영아용 분류 학습 구슬 쌓기	1	23,000	3	7,667
	감각 훈련 기차	1	24,000	3	8,000
	낮은평균대	1	47,200	7	6,743
탐색영역	자이언트 감각 비즈	1	14,000	3	4,667
	음악소리가 나는 완구	1	15,000	3	5,000
	감각인지블록세트	1	52,000	3	17,333
	작은블럭	1	14,000	5	2,800
	소프트 비밀상자	1	14,000	3	4,667
	누르면 소리나는 장난감	3	9,580	5	1,916
	모형퍼즐	1	12,000	3	4,000
	스폰지퍼즐	1	8,000	5	1,600
	모양상자	1	13,500	3	4,500
	소리나는 장난감	1	28,000	3	9,333
	각종 악기류	2	35,000	4	8,750
	영아용 학습 퍼즐	1	18,400	5	3,680
	영아용 페그보드 세트	1	12,000	3	4,000
	영아용 뮤직 메이커	2	16,000	3	5,333
여러촉감 벽걸이	1	28,000	3	9,333	
창의영역	싱크대	1	89,000	5	17,800
	모형 전화기	3	10,400	2	5,200
	깨지지 않는 찻잔세트	2	12,000	5	2,400
	밀가루점토도구	1	1,300	5	260
	스펀지미술활동세트	1	32,000	5	6,400
	밀방망이 페인터	1	5,200	5	1,040
	보드리블럭	1	25,000	5	5,000
	스폰지블럭	5	52,000	5	10,400
	여러종류의 탈 것	3	3,500	5	700
	고무로 된 작은 인형	1	7,000	5	1,400
	아기인형캐리어	3	15,000	3	5,000
	물세탁영아용 다인종 인형	1	71,200	3	23,733
	동물인형	1	7,800	4	1,950
	우유병	5	3,800	1	3,800
	가방	5	8,900	2	4,450
	모형음식물	4	15,000	5	3,000
	모자(동물)	4	9,600	1	9,600
	큰술가락	5	1,200	1	1,200
	썸글라스	5	5,000	1	5,000
	빈화장품통	2	900	1	900
계					859,284
월 평균					71,607

〈부록 표 4〉 만 2세 영아반 교재교구비

단위: 원

영역	품목	수량 (개)	단가	내구연한 (년)	연간소요비용 (1학년 기준)
언어 및 휴식영역	단순한내용의 그림책	1	68,000	3	22,667
	비닐로 만든 인형	1	13,500	5	2,700
	물세탁 영아용 다인종 인형	1	71,200	3	23,733
	느낌이나 태도에 관한 책	1	5,600	5	1,120
	자연에 관한 책	1	7,800	5	1,560
	작은 손인형	1	5,700	5	1,140
	부드러운 천이나 고무	1	3,200	5	640
	재미있는 그림이야기	1	23,000	4	5,750
	막대인형	1	16,000	3	5,333
	언어학습카드 자료 5종	1	35,000	5	7,000

(부록 표 4 계속)

영역	품목	수량 (개)	단가	내구연한 (년)	연간소요비용 (1학년 기준)
언어 및 휴식영역	작품게시판	1	55,000	5	11,000
	동화카세트테이프	1	3,000	5	600
	카세트	1	30,000	3	10,000
	쿠션 매트	1	89,000	3	29,667
작업영역	화판	1	10,000	5	2,000
	스펀지미술활동세트	1	32,000	5	6,400
	밀방망이 페인터	1	5,000	5	1,000
	동물 그림 스텐실	1	5,800	3	1,933
	넓은 쟁반	10	900	3	300
	안전가위 12개 세트	1	36,000	3	12,000
소꿉영역	주제에 따른 소품들	1	54,000	5	10,800
	인형류와 인형옷	1	45,000	5	9,000
	종합부엌놀이대	1	350,000	7	50,000
	실물크기 모형 그릇 세트	1	56,000	5	11,200
	영양 교육용 음식모형 세트	1	48,000	5	9,600
	소꿉놀이세트	1	23,000	5	4,600
	전화기, 시계, 드리아기, 머리빗	1	33,000	5	6,600
	모자	5	3,500	5	700
	화장품류(빈병)	1	900	5	180
	넥타이와 스카프	5	8,000	5	1,600
	가게놀이, 계산기	1	15,000	5	3,000
	여러 가지 직업의상 8종	1	113,500	5	22,700
	교통기관놀이	1	960,000	5	192,000
포대기	5	88,000	5	17,600	
쌓기영역	종이벽돌(소,대 2종)	1	32,000	5	6,400
	우레탄블럭	1	101,000	5	20,200
	스폰지블럭	1	8,000	5	1,600
	속이빈블럭	1	16,000	5	3,200
	외플블럭	1	25,000	5	5,000
	24인치의 플라스틱집짓기	1	32,000	5	6,400
	커다란 볼트와 너트	1	24,000	5	4,800
	여러 종류의 탈것	4	3,500	5	700
탐색조작 영역	숨박꼭질상자	1	45,000	5	9,000
	나무망치놀이	1	22,400	5	4,480
	모양분류상자	1	35,000	5	7,000
	조작이 큰 그림맞추기	1	14,000	5	2,800
	움직일 때 소리나는 놀이감	1	24,000	3	8,000
	구슬꿰기	1	12,000	5	2,400
	간단한 열쇠상자	1	13,000	5	2,600
	느낌주머니나 상자	1	54,000	5	10,800
	끈 끼우기	1	12,000	5	2,400
	도형학습 교구모음	1	35,000	5	7,000
음률영역	리듬악기 세트	1	33,000	5	6,600
	영아용 소프트 마라카스set	2	45,000	5	9,000
	여러 가지 악기사진, 그림	1	13,000	5	2,600
	스카프	10	16,000	5	3,200
대근육 영역	밀고당기는 놀이감	1	88,000	5	17,600
	다양한 크기의 공	1	73,000	3	24,333
	웨스코 짐 시스템	1	816,000	5	163,200
	낮은 계단과 미끄럼틀	1	1,130,000	5	226,000
	탈 것	1	88,000	5	17,600
	터널통과하기놀이	1	57,000	7	8,143
	영아용 볼링놀이	1	32,000	5	6,400
	컬러 유니바(10개 세트)	1	45,000	5	9,000
	촉감 발자국	1	57,000	5	11,400
	계				1,095,979
월 평균				91,332	

〈부록 표 5〉 만 3세 유아반 교재교구비

단위: 원

영역	품목	수량 (개)	단가	내구연한 (년)	연간소요비용 (1학년 기준)
언어 및 도서영역	이야기나누기자료 (주제별 12세트)	1	2,160,000	5	432,000
	음관	1	10,320	7	1,474
	장갑인형 세트	1	15,000	5	3,000
	손인형 세트	1	47,200	5	9,440
	그림자인형 세트	1	240,000	5	48,000
	그림동화책(주제별 1세트)	1	145,000	5	29,000
	카세트·CD 플레이어	1	100,000	5	20,000
	녹음자료 세트	1	26,400	5	5,280
휴식영역	사진자료 세트	1	43,200	5	8,640
	쿠션 매트	2 1	2,640 28,800	5 5	528 5,760
미술영역	이젤	1	156,400	5	31,280
	작품전시대	1	200,000	5	40,000
	접도판	1	2,400	3	800
	밀대	1	3,500	3	1,167
	찍기도구	1	6,500	3	2,167
	스탬프	5	3,700	3	1,233
	롤러(대, 중, 소) 모양찍기틀 세트	1 1	4,000 13,500	3 3	1,333 2,700
소꿉영역	주제에 따른 역할놀이세트	1	112,900	5	22,580
	각종 의상	5	63,300	5	12,660
	모자류	5	16,000	5	3,200
	신발류	5	16,000	5	3,200
	가발류	5	15,000	5	3,000
	각종장신구 세트	3	25,000	5	5,000
	포대기	3	13,500	5	2,700
	여러가지 인형류	3	35,000	5	7,000
	종합부엌놀이용 싱크대	1	560,000	5	112,000
	모형그릇 세트	2	45,000	5	9,000
음식모형 세트	2	56,000	5	11,200	
쌓기영역	스폰지블럭 세트	1	111,000	5	22,200
	우레탄블럭 세트	1	114,000	5	22,800
	종이벽돌블럭 세트 (대, 중, 소)	1	65,000	5	13,000
	소프트유닛블럭 세트	1	26,000	5	5,200
	커뮤니티유닛블럭 세트	1	152,000	5	30,400
	사각끼우기블럭 세트	1	13,000	5	2,600
	끈끼우기블럭 세트	1	12,000	5	2,400
	꽃끼우기블럭 세트	1	14,000	5	2,800
	모양끼우기블럭 세트	1	14,000	5	2,800
	소형탈것모형 세트	1	56,000	5	11,200
	사람모형 세트	1	23,000	5	4,600
관련 책 및 화보 세트	1	12,000	5	2,400	
음률영역	탬버린	3	2,400	5	480
	캐스터네츠	3	2,400	5	480
	우드블럭	3	8,000	5	1,600
	실로폰	2	23,000	5	4,600
	마라카스	3	12,300	5	2,460
	트라이앵글(교사용)	2	900	5	180
	방울	3	2,300	5	460
	작은 심볼즈	2	5,600	5	1,120
	큰 북	2	52,000	5	10,400
	작은 북	1	35,000	5	7,000
	장구	20	32,000	5	6,400
징	1	67,000	5	13,400	

(부록 표 5 계속)

영역	품목	수량 (개)	단가	내구연한 (년)	연간소요비용 (1학년 기준)
음률영역	팽과리	1	35,000	5	7,000
	신체활동자료용 스카프	5	12,000	5	2,400
	신체활동자료용 보자기	5	23,000	5	4,600
	신체활동자료용 리듬막대	5	5,600	5	1,120
	그림악보, 색갈악보, 노래책	2	25,000	5	5,000
	여러가지 악기사진, 그림자료 세트	1	13,000	5	2,600
	디지털 피아노	1	230,000	10	23,000
수영역	숫자그림퍼즐	3	10,000	5	2,000
	수막대	2	32,000	5	6,400
	크기와 모양이 다른 주사위	9	4,000	5	800
	십자고리던지기	2	35,000	5	7,000
	숫자도장	2	10,000	5	2,000
	숫자그림카드	2	10,000	5	2,000
	수세기 교구	5	34,000	5	6,800
	(사과나무 수세기, 카운팅 기차, 수 활동 낚시게임, 수 활동 게임세트 등)				
	색원기둥 세트	2	90,000	5	18,000
	색도형퍼즐	5	15,000	5	3,000
	도형분류교구	3	15,000	5	3,000
	(도형분류패그보드, 도형분류센터 등)				
	도형매치카드	2	13,000	5	2,600
	색갈도형끼우기	2	24,000	5	4,800
	도형맞추기·끼우기 교구	2	13,500	5	2,700
	구슬패기	2	27,000	5	5,400
	패턴블럭	2	12,000	5	2,400
	패턴블럭카드	2	15,000	5	3,000
	크기가 다른 상자	2	14,500	5	2,900
	각종 저울	2	66,000	5	13,200
	(수평저울, 몸무게저울)				
	계량컵과 계량스푼세트	2	5,300	5	1,060
	운도계	1	5,000	5	1,000
	길이, 무게 비교 교구	1	35,000	5	7,000
	이중서열자료	2	12,000	5	2,400
	다양한 크기의 단추도형 세트	1	13,600	5	2,720
	촉감판	2	15,000	5	3,000
크기와 모양이 다른 도형자료	6	15,000	5	3,000	
과학영역	오목, 블록 2종	1	16,000	5	3,200
	대형안전확대경	1	25,000	5	5,000
	요술경	3	5,000	5	1,000
	잠망경	3	14,400	5	2,880
	돋보기 (대, 중, 소)	6	20,000	5	4,000
	색관찰판	3	20,000	5	4,000
	다목적 저울	1	30,000	5	6,000
	모래시계	1	23,000	5	4,600
	후각병	2	32,000	5	6,400
	소리상자	2	12,000	5	2,400
	여러가지 자석류	6	11,400	5	2,280
	모형곤충 세트	1	52,000	5	10,400
	모형동물 세트	1	35,000	5	7,000
	치아 모형	1	12,000	5	2,400
	지구본	1	32,000	5	6,400
	과학활동 사진자료 세트	1	65,000	5	13,000
	동식물 관련 도서	2	11,000	5	2,200

(부록 표 5 계속)

영역	품목	수량 (개)	단가	내구연한 (년)	연간소요비용 (1학년 기준)
실외놀이 영역	물놀이 세트	2	213,000	5	42,600
	모래놀이 세트	2	213,000	5	42,600
	줄넘기	3	4,000	5	800
	매트	1	79,000	5	15,800
	공	3	8,000	5	1,600
	자전거	3	52,000	5	10,400
	홀라후프	3	12,000	5	2,400
	계				1,359,582
월 평균					113,299

〈부록 표 6〉 만 4·5세 유아반 교재교구비

단위: 원

영역	품목	수량 (개)	단가	내구연한 (년)	연간소요비용 (1학년 기준)
언어 및 도서영역	이야기나누기자료 (주제별 12세트)	1	2,160,000	5	432,000
	음판	1	10,320	5	2,064
	장갑인형 세트	1	15,000	5	3,000
	손인형 세트	1	47,200	5	9,440
	그림자인형 세트	1	240,000	5	48,000
	그림동화책(주제별 1세트)	1	120,000	5	24,000
	카세트·CD 플레이어	1	100,000	5	20,000
	공CD 세트	1	35,000	1	35,000
	공테이프 세트	1	3,500	1	3,500
	녹음자료 세트	1	100,000	5	20,000
	사진자료 세트	1	26,400	5	5,280
	인형극틀	1	79,000	5	15,800
	휴식영역	쿠션	1	2,640	5
매트		1	28,800	5	5,760
미술영역	이젤	1	156,400	5	31,280
	작품전시대	1	200,000	5	40,000
	점도판	1	2,400	3	800
	밀대	1	3,500	3	1,167
	찍기도구	1	6,500	3	2,167
	스탬프	7	3,700	3	1,233
	물러(대, 중, 소)	3	4,000	3	1,333
	모양찍기틀 세트	1	13,500	3	4,500
소꿉영역	주제에 따른 역할놀이세트	1	112,900	5	22,580
	각종 의상	7	63,300	5	12,660
	모자류	7	16,000	5	3,200
	신발류	7	16,000	5	3,200
	가발류	7	15,000	5	3,000
	각종 장신구 세트	5	25,000	5	5,000
	포대기	5	13,500	5	2,700
	여러가지 인형류	5	35,000	5	7,000
	종합부엌놀이용 싱크대	1	560,000	5	112,000
	모형그릇 세트	3	45,000	5	9,000
음식모형 세트	3	56,000	5	11,200	
쌓기영역	스폰지블럭 세트	1	111,000	5	22,200
	우레탄블럭 세트	1	114,000	5	22,800
	종이벽돌블럭 세트 (대, 중, 소)	1	23,000	5	4,600
	소프트유닛블럭 세트	1	26,000	5	5,200
	커뮤니티유닛블럭 세트	1	152,000	5	30,400
	사각까유기블럭 세트	1	13,000	5	2,600

(부록 표 6 계속)

영역	품목	수량 (개)	단가	내구연한 (년)	연간소요비용 (1학년 기준)	
쌓기영역	끈끼우기블럭 세트	1	12,000	5	2,400	
	꽃끼우기블럭 세트	1	14,000	5	2,800	
	모양끼우기블럭 세트	1	14,000	5	2,800	
	소형탈것모형 세트	1	56,000	5	11,200	
	사람모형 세트	1	23,000	5	4,600	
	관련 책 및 화보 세트	1	12,000	5	2,400	
음률영역	탬버린	3	2,400	5	480	
	캐스터네츠	3	2,400	5	480	
	우드블럭	3	8,000	5	1,600	
	실로폰	2	23,000	5	4,600	
	마라카스	3	12,300	5	2,460	
	트라이앵글(교사용)	2	900	5	180	
	방울	3	2,300	5	460	
	작은 심볼즈	2	5,600	5	1,120	
	오카리나 세트	1	56,000	5	11,200	
	피리	1	3,500	5	700	
	하모니카	1	25,000	5	5,000	
	큰 북	1	52,000	5	10,400	
	작은 북	1	35,000	5	7,000	
	장구	20	32,000	5	6,400	
	징	1	67,000	5	13,400	
	팽과리	1	35,000	5	7,000	
	신체활동자료용 스카프	7	12,000	5	2,400	
	신체활동자료용 보자기	7	23,000	5	4,600	
	신체활동자료용 리듬막대	7	5,600	5	1,120	
	그림악보, 색갈악보, 노래책 여러가지 악기사진, 그림자료 세트	1	13,000	5	2,600	
	디지털 피아노	1	230,000	10	23,000	
	수영역	숫자그림퍼즐	3	10,000	5	2,000
		수막대	2	32,000	5	6,400
크기와 모양이 다른 주사위		9	4,000	5	800	
십자고리던지기		2	35,000	5	7,000	
숫자도장		2	10,000	5	2,000	
숫자그림카드		2	10,000	5	2,000	
수세기 교구		5	34,000	5	6,800	
(사과나무 수세기, 카운팅 기차, 수 활동 낚시게임, 수 활동 게임세트 등)		2	90,000	5	18,000	
색기둥 세트						
색도형퍼즐		5	15,000	5	3,000	
도형분류교구		3	15,000	5	3,000	
(도형분류페그보드, 도형분류센터 등)		2	13,000	5	2,600	
도형매치카드						
색깔도형끼우기		2	24,000	5	4,800	
도형맞추기, 끼우기 교구		2	13,500	5	2,700	
구슬꿰기		2	27,000	5	5,400	
패턴블럭		2	12,000	5	2,400	
패턴블럭카드		2	15,000	5	3,000	
크기가 다른 상자		2	14,500	5	2,900	
각종 저울		2	66,000	5	13,200	
(수평저울, 몸무게저울)						
계량컵과 계량스푼세트		2	5,300	5	1,060	
온도계		1	5,000	5	1,000	
길이, 무게 비교 교구		1	35,000	5	7,000	
이중서열자료		2	12,000	5	2,400	
다양한 크기의 단추도형 세트		1	13,600	5	2,720	

(부록 표 6 계속)

영역	품목	수량 (개)	단가	내구연한 (년)	연간소요비용 (1학기 기준)
수영역	촉감판	2	15,000	5	3,000
	크기와 모양이 다른 도형자료	6	13,000	5	2,600
과학영역	오목, 블록 2종	1	16,000	5	3,200
	대형안전화대경	1	25,000	5	5,000
	요술경	3	5,000	5	1,000
	잠망경	3	14,400	5	2,880
	돋보기 (대, 중, 소)	6	30,000	5	6,000
	색관찰관	3	20,000	5	4,000
	다목적 저울	1	30,000	5	6,000
	모래시계	1	23,000	5	4,600
	후각병	2	32,000	5	6,400
	소리상자	2	12,000	5	2,400
	여러가지 자석류	9	11,400	5	2,240
	모형곤충 세트	1	52,000	5	10,400
	모형동물 세트	1	35,000	5	7,000
	치아 모형	1	12,000	5	2,400
	지구본	1	32,000	5	6,400
	과학활동 사진자료 세트	1	65,000	5	13,000
	동식물 관련 도서	2	11,000	5	2,200
컴퓨터 영역	컴퓨터 세트	1	695,000	5	139,000
	프린터기와 잉크	1	350,000	5	70,000
	스피커	1	15,000	5	3,000
	교육용 CD(교사용) 자료 세트	5	59,000	5	11,800
실외놀이 영역	물놀이 세트	2	213,000	5	42,600
	모래놀이 세트	2	213,000	5	42,600
	줄넘기	5	4,000	5	800
	매트	2	79,000	5	15,800
	공	5	8,000	5	1,600
	자전거	5	52,000	5	10,400
	홀라후프	5	12,000	5	2,400
계				1,359,582	
월 평균				113,299	

연구보고 2012-15

표준보육료 산출 연구

발행일 2012년 11월

발행인 이 영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6층, 7층, 10층, 11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대명기획 02) 2273-1292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8-89-97492-09-1 93330